

#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2009. 9





## • 발간사 •

\* \* \* \* \*

2009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7조 7천억원 많은 366조원으로 전망되어 2002년 GDP 대비 18.5%이던 국가채무는 2009년 GDP 대비 35.6%까지 급증하고 있고, 세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재정사업 추진 등 세출증가를 통한 재정확장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중기재정소요를 예측하고, 세입·세출 구조 및 규모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 인식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재정·예산 및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총 268조 9,390억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 138개를 분석·평가한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등에서 ‘사업심사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정책대안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사업의 문제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쟁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개선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138개 쟁점사업을 경제사업분야, 산업사업분야, 사회사업분야, 행정사업분야 등 총 4개 분야별로 대분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제하였으며,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5대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국민편익 및 국가재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대표적인 쟁점사업 30개를 선정하여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다가오는 제28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 보고서의 편제

- 경제사업분야, 산업사업분야, 사회사업분야, 행정사업분야 등 4개 분야별로 대분하고, 사업의 명확한 소관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총 138개의 주요 쟁점사업을 분석함.
- 주제명 및 문장내의 소제목 등은 문제점과 정책방향이 정확히 내포되도록 ‘개선조치 위주’의 함축적인 정책용어를 사용하여 가독성(可讀性) 및 활용성을 강화함.

#### ○ 분석의 대상

- 국가 재정·예산사업 중 국가재정·예산 및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주요 쟁점사업과 핵심적인 재정 및 예산정책을 대상으로 하였음.
- 138개 사업중 일부 사업을 제외한 개별사업의 3개년 예산을 모두 합한 총 사업규모 268조 9,390억원을 분석대상으로 함.
-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등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업과 새롭게 쟁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 ○ 분석의 관점

-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등에서 ‘사업심사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의 수요자 입장에서 쟁점사업을 선별하고,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이를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담보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준거적인 토대’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 분석의 유형화

- 4개 분야 주요 쟁점사업을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문제점 위주로 5개로 유형화 하였음.
- 138개 사업 중 특별히 국민편익증감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국가재정 및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대표적인 사업 30개를 별도로 요약·정리하였음.

※ 위원회 소관별 분석내용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 뒷면의 담당 평가관 등에게 연락주시기 바람.



## 1. 개 요

- 국가 주요 쟁점사업 분석은 경제사업분야, 산업사업분야, 사회사업분야, 행정사업분야 등 4개 분야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요한 쟁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별 사업분석에서는 문제점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쟁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행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138개 주요 쟁점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 30개를 선별하였는 바, 이는 특별히 국민편익 증감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국가재정 및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 국가 및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 사업, 국정감사 및 상임위 심사 등에서 계속해서 문제사업으로 중점 지적된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음.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5대 유형별로 개별 사업의 쟁점사항 및 정책방향을 정리하였음.
- 5대 유형별로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불분명한 사업은 전원개발용자사업, 글로벌취업지원사업 등 17개 사업,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광역철도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 23개 사업,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은 치수능력증대사업, 우주발사체개발사업 등 21개 사업, 사업추진 체계가 불합리한 사업은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산업융합기술개발사업 등 18개 사업, 재정·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업, 실업급여사업 등 21개 사업 등임.

## 2. 유형별 쟁점사업

### 가. 총괄분석

#### ■ 제1유형 : 사업효과의 미미 및 불분명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하거나 그 성과가 불분명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사 업 명                   | '07~'09 사업규모(억원) | 소 관               |
|-------------------------|------------------|-------------------|
| 1.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 5,016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 2. 상수도사업                | 1,369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 3. 하이패스사업               | 48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 4. 국민주택기금지원사업           | 145,746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 5. 전원개발융자사업             | 1,650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6. 농업생명자원연구사업           | 272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촌진흥청   |
| 7.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사업 | 158              | 환경노동위원회/노동부       |
| 8. 글로벌취업지원사업            | 41,818           | 환경노동위원회/노동부       |
| 9.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 375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10.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 17,070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11. 해외봉사단사업             | 1,432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교통상부   |
| 12. 예비군사업               | 10,215           | 국방위원회/국방부         |
| 13. 방위비분담금사업            | 22,270           | 국방위원회/국방부         |
| 14. 초중등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     | 8,628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15.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1,19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16. 연구소재지원사업            | 120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17. 국민건강보험사업            | 123,80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 ■ 제2유형 : 사업집행의 비효율성 초래

– 사업집행과정에서 투입 대비 효과성의 저하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

| 사 업 명                    | '07~'09 사업규모(억원) | 소 관                   |
|--------------------------|------------------|-----------------------|
| 1. 광역철도사업                | 19,359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 2.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3,240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6,976            | 지식경제위원회/중소기업청         |
| 4. 연근해어선감척사업             | 6,282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
| 5. 농업공학연구사업              | 168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촌진흥청       |
| 6. 원예작물로열티대응기술개발사업       | 113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촌진흥청       |
| 7. 숲가꾸기사업                | 7,604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산림청         |
| 8. 쓰레기소각시설사업             | 1,442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
| 9. 하수도시설확충사업             | 41,508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
| 10.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 449,776          | 환경노동위원회/노동부           |
| 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          | 392,462          | 환경노동위원회/노동부           |
| 1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500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13. 소화천 정비사업             | 2,837            | 행정안전위원회/소방방재청         |
| 1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5,998            | 행정안전위원회/소방방재청         |
| 15. 보훈병원의료장비현대화사업        | 220              | 정무위원회/국가보훈처           |
| 16. 어린이보호구역사업            | 2,654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17.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           | 275              |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
| 18. 운전면허시설취득사업           | 52               |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
| 19.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사업       | 101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20. 기초노령연금사업             | 40,645           |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 21. 보육료지원사업              | 42,179           |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 22. 프로그램제작비용자사업          | 65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 23.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 | 2,077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 ■ 제3유형 : 사업계획의 미비 및 치밀성 부족

- 사전계획의 미비 및 치밀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목적이 왜곡되거나 재정상 손실을 유발하는 사업

| 사 업 명                      | '07~'09 사업규모(억원) | 소 관                   |
|----------------------------|------------------|-----------------------|
| 1. 치수능력증대사업                | 3,138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 2. 민자유치활성화지원사업             | 5,016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 3.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21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
| 4. 농어촌활력증진사업               | 9,767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
| 5. 주민지원사업(4대강 수계관리기금)      | 3,912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
| 6.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 475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7. 차기대포병레이더사업              | 667              | 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           |
| 8.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 2,542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9. 도서종합개발사업                | 2,962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10. 전의경대체지원사업              | 894              |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
| 11.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             | 413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12. 우주발사체개발사업              | 1,666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13. 핵융합에너지사업               | 1,553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14. 뇌연구기관설립 및 지원사업         | 121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15. 나노기술개발사업               | 328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16.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개발사업        | 250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 17.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 3,591            |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 18. 체육진흥투표권위탁사업            | 7,496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 19.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사업 | 279,990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 20. 전통사찰보존지원사업             | 27,276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 2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 524,941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재청    |

## ■ 제4유형 : 사업추진 체계의 불합리

– 유사사업 간의 사업추진 주체 및 기능 등의 중복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거나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사업

| 사 업 명                 | '07~'09 사업규모(억원) | 소 관                   |
|-----------------------|------------------|-----------------------|
| 1. 국도건설사업             | 117,775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 2. 철도 BTL 사업          | 1,206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 2,017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4. 무연탄발전지원사업          | 4,500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5. 산업융합기술개발사업         | 1,867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6.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         | 1,042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7.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 754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8. 바다숲조성사업            | 100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
| 9.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사업      | 143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산림청         |
| 10. 생태하천복원사업          | 2,473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
| 11.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사업   | 424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
| 12. 국가정보보호정책          | 4,368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1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563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14. 재외동포지원사업          | 957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교통상부       |
| 15. 개도국정보격차지원해소사업     | 200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 16. 해외현지인 대상 한국어 보급사업 | 34,946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 17.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사업    | 900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 18.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사업    | 139              | 여성위원회/여성부             |

## ■ 제5유형 : 재정 · 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

- 국가채무 증가에 대비하고 국민 혈세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한 재정 · 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의 적절한 개선이 필요한 정책 · 사업

| 사 업 명                                      | '07~'09 사업규모(억원) | 소 관                |
|--------------------------------------------|------------------|--------------------|
| 1. 국가채무 급증 및 재정압박에 대한 대책                   |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 2. 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 및 지분 증권에 대한 관리 · 감독의 강화    |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 3. 성과중심 예산 · 결산 심사를 위한 성과계획 · 성과보고의 신뢰성 제고 |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 4. 2008년도 유가환급금 집행에 대한 사후점검                |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 5. 근로장려세제의 효율성 제고                          |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 6. 주택가격의 상승 대책 마련                          |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 7. 원자재비축사업의 적정재고 확보 노력                     | 19,276           | 기획재정위원회/조달청        |
| 8. KIC(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로 인한 손실 및 대응방안 마련   |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 9. 금융기관 지원효과를 가지는 예산사업의 위험부담 적정화 도모        | 81,623           | 정무위원회 등/금융위원회 등    |
| 10.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공적자금 회수 미흡 대책 마련            | -                |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
| 1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액 증가 관련 법제도 개선 모색        | -                |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 12. 신용보증 관련 기금사업의 구상 채권 회수실적 제고            | -                | 정무위원회 등/신용보증기금 등   |
| 13.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권한에 관한 논의 필요                | -                | 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       |
| 14.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 8,603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15. 전력수요관리사업                               | 4,156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16.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사업                         | 3,899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업                           | 4,513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 18. 친환경농업육성 프로그램                           | 5,072            | 농림수산물위원회/농림수산물부    |
| 19. 실업급여사업                                 | 102,986          | 환경노동위원회/노동부        |
| 20.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사업                         | 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 |
| 21. 가정폭력 · 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사업                   | 134              | 여성위원회/여성부          |

## 나. 유형별 대표적 사업

### ■ 제1유형 : 사업효과의 미미 및 불분명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하거나 그 성과가 불분명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 1. 전원개발용자사업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 소관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전원개발용자사업은 발전사업에 국고채 3년유통물 평균수익률 1.25%의 금리로 용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전원설비건설이나 특수지역의 전원개발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실제용자지원은 화력발전(50.1%), 원자력(8.4%) 등에 집중되었으며, 지원대상도 한 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발전자회사의 비중이 83%를 차지함에 따라 동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농업생명자원연구사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소관 : 농림수산물위원회/농촌진흥청

- 농업생명자원연구사업 중 GMO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가 부족한 바, GM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농업생명공학육성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해외취업률 등 성과 제고 | 소관 : 환경노동위원회/노동부

- 최근 5년간 알선취업률은 평균 4% 수준, 2007년 연수취업률은 52%에 불과하며, 2008년 중도탈락율은 17%인 바,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신규 해외 구인처 개척을 통한 알선 및 연수취업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의 적합성 재검토 | 소관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자전거이용 활성화 목적은 교통분담률 제고 및 녹색교통의 실현에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짐. 따라서 교통분담률 제고 및 녹색교통 구현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자전거 보험, 자전거 이용자 보호, 자전거 횡단도 설치와 같은 제도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5.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효과성 제고 | 소관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농번기에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초래함. 따라서 농사일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유형에 포함시키고 작업강도에 따른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희망근로 상품권 수령을 기피하고, 상품권 활용이 속칭 '깡'에 의한 현금교환 수단으로 변질되고,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행정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상품권 계속 지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6. 방위비분담금 사업의 합목적적 운영 | 소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 방위비분담금 사업 중 현금으로 지원되는 군사시설건설사업의 비율이 높아서 세부집행 내역을 한국측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바, 향후 현물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방위비분담금 사업 중 연합방위사업은 한미간의 군사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방위비분담금의 취지를 잘 대변해주는 사업이지만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바, 예산편성의 타당성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 제2유형 : 사업집행의 비효율성 초래

- 사업집행과정에서 투입 대비 효과성의 저하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

### 1. 광역철도사업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 소관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광역철도의 예산지원은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일률적인 사업예산 지원비율 적용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2. 터키 낙찰자 선정시 가격 경쟁 유도 | 소관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도로 보다 건설 난이도가 높은 호남고속철도의 낙찰자 선정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서울지하철 건설공사의 낙찰자 선정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 터키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기술비중을 높여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있음.

###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과제규모 적절성 모색 | 소관 : 지식경제위원회/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전략과제의 연구비(출연금)는 '04년 576개 과제의 평균 8천만원에서 '08년 726개 과제의 평균 1억 4천만원 수준으로 증가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나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제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질 경우, 향후 예산 집행률,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달성도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4.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의 효율성 제고 | 소관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하수도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 14조 등 법규의 개정과 물관리 체계의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 수요 추정에 따른 계획 수립,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하수도산업의 경쟁기반 확대,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함.

### 5. 공익사업 적립금 사용의 재정통제 방안 검토 | 소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로 구성되는 공익사업적립금을 국회 예산삭감사업 등에 지원한 바, 적립금 지원기준에 따라 재정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포함시켜 재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6.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소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자치단체의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차등보조율이 오히려 광역시 자치구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차등보조율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7. 보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소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현행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영유아를 가진 부모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종국적으로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인 바, 차등보육료의 확대와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개선노력이 필요함.

### ■ 제3유형 : 사업계획의 미비 및 치밀성 부족

- 사전계획의 미비 및 치밀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목적이 왜곡되거나 재정상 손실을 유발하는 사업

#### 1.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따른 하류지역 수해 대책 마련 | 소관 :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부

- 집중호우 등이 예보될 경우 사전 예비방류 등을 통해 댐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감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실패를 통한 기술능력 제고 방안 모색 | 소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나로호에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가 예정된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추락함. 발사 실패 경험을 통해 우리의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체적인 원인 규명 능력이 요구됨. 또한, 향후 해외기술협력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지연, 실패 위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3. 나노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의 예산 피드백 장치 마련 | 소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동 사업은 성과지표 부적절로 인해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예산이 증가함. R&D사업은 법률에 성과평가 결과를 R&D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의 내실화 | 소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각 대학에 채용된 입학사정관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직률이 높고 장기적인 경험 축적 및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바,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절차와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5.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수수료 요율의 재조정 | 소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예측하여 예상보다 많은 위탁운영비가 지급되었으며, 온라인의 경우 발매 건당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설 임대료 등이 오프라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음. 체육진흥투표권의 위탁사업자에 대한 위탁운영비 지원 비율을 현실화하여 기금으로의 전입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6. T-50 훈련기 수출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소관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UAE의 훈련기 도입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성능과 거래조건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업체는 적절한 상황대처를 하지 않아 최대 1조 5천억원의 수출기회를 놓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차후 수출협상시 적절한 계획수립과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 7.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소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노인요양시설 부족 문제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있는 바, 재가서비스 이용 촉진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지 선정 등을 비롯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홍보 및 공공시설 동시 제공 등 해결 노력이 필요함.

### ■ 제4유형 : 사업추진 체계의 불합리

- 유사사업 간의 사업추진 주체 및 기능 등의 중복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거나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사업

#### 1.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의 추진체계 일원화 도모 | 소관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농공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은 중진공에서, 농공단지클러스터 사업은 산단공에서 위탁 수행하는 바, 농공단지 지원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2.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의 정부지원 타당성 재검토 | 소관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디자인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 지원을 위한 동 사업이 기업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 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에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사업과 부문은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디자인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요구됨.

### 3. 산업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융합기술 투자방향 명확화 | 소관 :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 산업융합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업과의 중복이 우려되며, (구)정보통신부 등에서 추진하던 기존 계속과제 712.4억원과 신규과제 280억원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산업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에 한계가 있음. 기존 사업 중 융합기술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산업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함.

### 4.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소관 : 농림수산물위원회/농림수산물부

- 시군에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농수산물 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는 등 사업의 내용이 산지유통센터,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기존 산지유통조직과 추진목표 및 방식에서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유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역할분담을 통해 유통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5. 국가정보보호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소관 :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호체계 관련 규정이 서로 다른 바, 현 국가정보보호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구)KISA)의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실태 조사 결과 인적 보안과 기술적 보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취약분야에 대한 보안수준 강화가 필요함.

## ■ 제5유형 : 재정·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

- 국가채무 증가에 대비하고 국민 혈세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한 재정·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의 적정한 개선이 필요한 정책·사업

### 1. 국가채무 급증 및 재정압박에 대한 대책 |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2009년 현재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7.7조원 많은 366조원으로 전망됨. GDP와 대비하면 2002년에 18.5%이었지만, 2009년에는 35.6%까지 급증했음. 재정압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정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폭을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2008년 기준 29.6조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지출 총량을 설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2. 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 및 자본증권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24개 공기업 총자산은 2004년 약 193조원에서 2008년 약 310조원으로 60%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자본은 약 28조원이 늘어나 27% 증가하였고, 부채는 약 90조원 늘어나 약 100% 증가하였음. 따라서 공기업의 수익성이 저감되고 금융성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해야 하고, 공기업 지분투자 이후 발생한 손실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3. 2008년도 유가환급금 집행에 대한 사후점검 |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2008년 유가환급금 정책을 추진할 때 당초 환급대상 인원은 1,650만명, 환급대상 금액은 3조 4,150억원이었지만, 집행실적은 1,435만명 및 2조 6,520억원으로 밝혀져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또한 2008년 실직, 은퇴, 폐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에 유가환급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유가환급금 집행의 사후점검이 필요함.

## 4. 근로장려세제의 효율성 제고 |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 증가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됨. 따라서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신고비율을 제고하고, 농어민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의 세출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빈곤층 근로유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

## 5. 실업급여비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모색 | 소관 : 환경노동위원회/노동부

-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 그리고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에 비하여 급증함으로써, 실업급여비 지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당기 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는 재정 불안정의 문제가 있음.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급여비 지출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Contents



## 제 1장

## 경제사업 분야 (기획재정, 정부)

### I 기획재정위원회

1. 국가채무 급증 및 재정압박에 대한 대책 . . . . . 3
2. 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 및 지분증권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 . 5
3. 성과중심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성과계획·성과보고의 신뢰성 제고 . . 8
4. 2008년도 유가환급금 집행에 대한 사후점검 . . . . . 11
5. 근로장려세제의 효율성 제고 . . . . . 14
6. 부담금 급증에 따른 관련 대책 수립 필요 . . . . . 17
7. 주택가격의 상승 대책 마련 . . . . . 19
8. 원자재비축사업의 적정재고 확보 노력 . . . . . 21
9. KIC(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로 인한 손실 및 대응방안 마련 . . 24
10. 법인세 체납액 증가 문제 개선 . . . . . 26
11.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실적 제고 . . . . . 28
12. 인구사회통계의 대응성·정확성·효율성 제고 . . . . . 30

## Ⅱ 정무위원회

1. 금융기관 지원효과를 가지는 예산사업의 위험부담 적정화 도모 · 33
2.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공적자금 회수 미흡 대책 마련 · · · · 36
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액 증가 관련 법제도 개선 모색 · 38
4. 신용보증 관련 기금사업의 구상채권 회수실적 제고 · · · · · 40
5.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권한에 관한 논의 필요 · · · · · 43
6. 보훈병원 의료장비 현대화의 효과적 수행 · · · · · 45
7.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의 합리성 도모 · · · · · 47
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합목적적인 운영 도모 · · · · · 49
9. 한국소비자원 추진사업의 내실화 · · · · · 51

## 제 2장

## 산업사업 분야 (국토해양, 지식경제, 농림수산물식품)

## Ⅲ 국토해양위원회

1. 광역철도사업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 · · · · 55
2. 국도건설사업 예산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 강구 · · 58
3. 철도 BTL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대책 마련 · · · 60
4.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따른 하류지역 수해 대책 마련 · · · · · 62



|                                              |    |
|----------------------------------------------|----|
| 5. 4대강 사업 재원조달 계획 사전 수립 . . . . .            | 65 |
| 6.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집행활성화 방안 마련 . . . . .           | 67 |
| 7. 턴키 낙찰자 선정시 가격 경쟁 유도 . . . . .             | 69 |
| 8. 최저가 심사기준 임의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대책 강구 . . . . . | 72 |
| 9. 민자유치활성화지원 사업의 사전 대처 방안 모색 . . . . .       | 74 |
| 10.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 . . . .         | 76 |
| 11. 상수도 관련 사업의 이용률 제고 . . . . .              | 78 |
| 12. 합리적인 하이패스 요금 미납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 . . . .   | 81 |
| 13. 국민주택기금 수혜계층 선정방식 개선 강구 . . . . .         | 84 |

#### IV 지식경제위원회

|                                         |     |
|-----------------------------------------|-----|
| 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추진체계 합리화 . . . . .    | 87  |
| 2.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이용효율 제고 . . . . .        | 89  |
| 3.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성과개선 필요 . . . . .     | 91  |
| 4.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 . . . . .     | 93  |
| 5. 발전용 무연탄 공급축소 검토필요 . . . . .          | 95  |
| 6. 산업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융합기술 투자방향 명확화 . . . . .  | 97  |
| 7.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 . . . . | 99  |
| 8. 전원개발용자사업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 . . . .        | 101 |
| 9.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의 추진체계 일원화 도모 . . . . .    | 103 |

|                                          |     |
|------------------------------------------|-----|
| 10.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의 정부지원 타당성 재검토 . . . . .   | 105 |
| 11. 중소기업수출지원업무 일원화에 대한 보완방안 검토 . . . . . | 107 |
| 12. T-50 훈련기 수출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 . . . .   | 109 |
| 1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과제규모 적절성 모색 . . . . .  | 111 |

## V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     |
|----------------------------------------------|-----|
| 1.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 . . .        | 114 |
| 2.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강화 . . . . . | 117 |
| 3.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 . . . .               | 119 |
| 4.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 . . .    | 122 |
| 5. 바다숲조성사업의 유사사업과의 기능 조정 . . . . .           | 125 |
| 6. 친환경농업육성 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 . . . .            | 126 |
| 7. 농업생명자원연구사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 . . . . .           | 128 |
| 8. 농업공학연구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 . . .          | 130 |
| 9. 원예작물로열티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제고 . . . . .       | 132 |
| 10.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 . . .         | 134 |
| 11. 숲가꾸기사업의 실효성 제고 . . . . .                 | 136 |
| 12.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사업과 관련 사업 간의 연계 강화 . . . . .  | 139 |



## 제 3장

# 사회사업 분야(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보건복지가족, 환경노동, 여성)

## VI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의 내실화 . . . . . 143
2. 초중등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의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 145
3.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사업 집행의 적정성 제고 . . . . . 148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집행 점검의 강화 . . . . . 150
5.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 . . . 153
6. 학습보조인턴교사제의 내실화 방안 마련 . . . . . 155
7. 학업성취도평가지원사업의 신뢰성 제고 . . . . . 158
8.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실패를 통한 기술능력 제고 방안 모색 . . 161
9. 핵융합에너지사업의 치밀한 자원마련 계획수립 . . . . . 164
10. 연구소재지원사업의 특정분야 편중 해소대책 마련 . . . . . 166
11. 비용분석 없이 이루어진 뇌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사업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 168
12. 나노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의 예산 피드백 장치 마련 . . 170
13.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 필요 . 172

## VII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 프로그램제작비용자사업의 수요예측 노력 제고 . . . . . 174
2.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수수료 요율의 재조정 . . . . . 176
3. 공익사업 적립금 사용의 재정통제 방안 검토 . . . . . 178
4.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의 효율성 제고 . . . . 180
5. 해외 현지인 대상 한국어 보급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 . . . 182
6.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성과관리 실시 . . . 184
7. 전통사찰보존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 . . . . 186
8.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연구용역 수행방식의 개선 . . . . . 188
9.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사업 업무의 일원화 . . . . . 190
10.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집행 촉진 방안 마련 . . . . . 192

## VIII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 복지예산 집행의 효과성 제고 . . . . . 194
2.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를 통한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 . . 197
3.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 . . 199
4. 보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 . . . 202
5.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 . 205
6.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조직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 . . . 208
7.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비용에 대한 국고편성 . . . 212
8.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 복지사업 추진 지양 . . . 214
9.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 . . . . . 216



- 10.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부담완화 필요 . . . . . 219
- 11.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사업의 단속 강화 . . . . . 221
- 12.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 . . . . 223
- 13. 식품안전 관련 기준 및 규격의 조속한 제·개정 . . . . . 225

## IX 환경노동위원회

- 1. 쓰레기 소각시설사업의 효율성 제고 . . . . . 227
- 2.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부처간 연계성 강화 . . . . . 230
- 3.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 . . . . . 233
- 4. 주민지원사업(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실효성 제고 . . . . . 236
- 5.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의 효율성 제고 . . . . . 238
- 6. 실업급여비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모색 . . . . . 241
- 7.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의 성과 제고 . . . . . 244
- 8.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해외취업률 등 성과 제고 . . . . . 246
- 9. 사회적기업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 . . 249
- 1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증가대책 마련 . . . . . 251
- 1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합리화 . . . . . 253

## X 여성위원회

-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의 합리화 모색 . . . . . 256
- 2.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사업의 내실화 . . . . . 258

제 4장

행정사업 분야 (법제사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XI 법제사법위원회

1. 법률구조사업의 내실화 도모 . . . . . 263
2. 등기특별회계사업의 예산 체계 변경 . . . . . 265
3. 국선번호로지원사업의 활성화 대책 강구 . . . . . 267

XII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 재외동포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 강화 . . . . . 269
2. 여권선진화사업의 합리적 개선 . . . . . 272
3. 해외청년봉사단사업의 실효성 증대 . . . . . 274
4. 남북협력기금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 . . . . . 276

XIII 국방위원회

1. 예비군사업의 내실화 . . . . . 278
2. 전직지원사업의 효과성 도모 . . . . . 280
3. 병생활관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 . . . . 282
4. 방위비분담금 사업의 합목적적 운영 . . . . . 284
5. 차기 대포병레이더사업 추진의 합리성 확보 . . . . . 286



## XIV 행정안전위원회

1.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의 적합성 재검토 . . . . . 288
2.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효과성 제고 . . . . . 290
3. 국가정보보호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 . . . 293
4.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 . . . . . 296
5.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제고 . . . . . 298
6. 교통사고찾은곳개선사업의 선정기준 타당성 제고 . . . . . 301
7.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 . . . . 303
8.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 . . . 305
9.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운영 내실화 . . . . . 308
10. 개도국정보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 . . . . 310
11.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의 효과성 제고 . . . . . 312
12. 전의경대체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 . . . . 314
13. 운전면허시설취득사업의 합리적 추진 . . . . . 316
14. 소화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 . . . . 318
15.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 . . . . . 320
16. 지자체 소방인력 충원 인센티브 강구 . . . . . 322
17. 지자체 지역특화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분석 실시 . . . . . 326
18. 서울시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분양의 합목적성 제고 . . 328





2009년도 국가 주요 정책 사업

## 제 1 장



# 경제사업 분야

Ⅰ 기획재정위원회 • 3

Ⅱ 정무위원회 • 33







# I 기획재정위원회



## 1 국가채무 급증 및 재정압박에 대한 대책

### 가. 개요

#### □ 현황

- 2009년 국가채무<sup>1)</sup>는 전년 보다 57.7조원 많은 366.0조원으로 전망
- 2002년 GDP 대비 18.5%이던 국가채무는 2009년 GDP 대비 35.6%까지 상승
  - 2003~2006년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및 외평채의 꾸준한 증가로 2006년 GDP 대비 31.1%까지 상승하다가 2007, 2008년은 공적자금 국채전환 종료 및 세계잉여금의 영향으로 채무규모가 잠시 낮아짐
  - 2009년 정부의 감세기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다시 큰 폭 상승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현황

(단위 : 조원, %)

| 구 분         | 2002   | 2006   | 2007   | 2008   | 2009   |
|-------------|--------|--------|--------|--------|--------|
| • 국가채무      | 133,6  | 282,8  | 298,9  | 308,3  | 366,0  |
| (GDP 대비)    | (18,5) | (31,1) | (30,7) | (30,1) | (35,6) |
| - 총 증가규모    | 11,5   | 34,8   | 16,1   | 9,4    | 57,7   |
| - 공적자금국채상환  | -      | 10,9   | -0,6   | -3,5   | 0,4    |
| - 외평채권      | 6,6    | 11,5   | 11,2   | 4,3    | 16,2   |
| - 일반회계 적자보전 | 1,9    | 8,0    | 6,7    | 7,4    | 34,5   |

주: 1. 2002~2008년은 결산, 2009년은 추정예산 기준

2. 국가재정법은 국가채무를 중앙정부의 채무로 한정하지만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지방정부의 채무 포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I」, 2009.

1) 2009년 현재, 국가채무의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18개),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 25개를 제외한 기금(38개)의 확정채무임.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 필요

- 정부가 계획대로 감세를 추진하는 경우 2012년까지의 누적 감세규모가 98조원을 상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전망이다.
  - － 세입측면 : ① 감세의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효과는 길고 불확실함. ② 조세부담률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을 하락 및 세입기반 약화 가능성이 있음.
  - － 세출측면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및 통일비용 등 대규모 지출소요가 예상됨.

### □ 세입기반확대 방안

- 금번 경제위기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기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유보 검토가 필요함.
  - － 정책일관성, 감세의 경제적 효과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2008년 결산 기준 29.6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함.
  - － 비과세·감면의 획일적 시행을 지양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함.
  - － 궁극적으로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조세체계로 정비해야 함.

### □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경감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지출 효율화를 단행해야 함.
  -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출 시나리오별로 관리하고 확정된 계획에는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지출 총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 예비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야 함.
  - － 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지출구조조정에 반영해야 함.
-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하여 세출예산과 항목연계 및 정책연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세출예산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정비에 활용해야 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기획재정부 | 재정정책국 | 성과관리심의관 | 재정기획과 |

• 작성 : 경제분석실 경제분석관 나아정(788-4661)

## 2 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 및 지분증권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 가. 개요

#### □ 공기업 총자산 현황

- 24개 공기업 총자산은 2004년에 192조 9,356억원에서 2008년 309조 5,045억원으로 60.42%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자본은 28조 1,809억원(26.97%) 증가, 부채는 88조 3,880억원(99.94%) 증가

공기업 총자산 현황(2004~2008)

(단위: 억원)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자산 | 1,929,356 | 2,148,980 | 2,405,080 | 2,672,348 | 3,095,045 |
| 부채 | 884,380   | 990,266   | 1,187,309 | 1,381,114 | 1,768,260 |
| 자본 | 1,044,976 | 1,158,714 | 1,217,771 | 1,291,234 | 1,326,785 |

#### □ 공기업 지분증권 현황

- 2007년 말 현재 24개 공기업의 지분증권을 포함한 투자자산은 37조 2,944억원으로 이 가운데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은 6,533억원이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은 29조 8,982억원

공기업 투자자산 현황(2003~2007)

(단위: 억원)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투자자산      | 318,423 | 337,476 | 361,553 | 364,200 | 372,944 |
| 매도가능증권    | 1,870   | 2,115   | 3,409   | 4,752   | 6,533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242,170 | 258,646 | 274,226 | 283,176 | 298,982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수익성 저감 및 금융성부채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24개 공기업이 자산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현금성 수익인 EBITDA는 2008년에 6조 9,759억원으로 2004년 9조 9,187억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영업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최종 수익인 당기순이익도 2008년에 3,320억원으로 2004년 4조 9,046억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 반면, 24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4년 84.63%에서 2008년 133.27%로 확대되었고, 차입금의존도는 2004년 31.50%에서 2008년 40.71%로 증가하였음. 이자보상배율 역시 2005년도 2.79배에서 2008년 0.44배로 감소하고 있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
- 공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 건설, 임대사업, 택지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리하게 외부차입에 의존할 경우 늘어나는 부채의 원리금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공기업과 관계 부처의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 2009).

### □ 공기업 지분투자 이후 발생한 손실의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감독 체계 구축

-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4개 공기업 가운데 13개 공기업에서 지분투자와 후순위채권 인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7,099억 4,000만원에 이름.
-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주)는 인천공항에너지(주)에 180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순자산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42억 2,000만원에 머물렀고, 2008년 말 현재 자본이 완전 잠식됨에 따라 투자액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공기업 지분투자자로 인한 손실액의 규모,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이 시급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공기업을 중심으로」, 2009).

공기업별 지분증권 및 후순위채권 손실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
|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 △81,677  |
| 지분법손실        | △112,878 |
| 후순위채권 감액손실   | △475,576 |
| 지급보증의 확정부채금액 | △39,809  |
| 합 계          | △709,940 |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기획재정부 | 공공정책국 | 공공혁신기획관 | 정책총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이현정(788-4672)

### 3 성과중심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성과계획·성과보고의 신뢰성 제고

#### 가. 현황

##### □ 개념 및 법적 근거

- 성과관리개념 :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6호)
-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국가재정법」 제8조 등

##### □ 성과관리 제도의 기본체계

- 우리나라 성과관리 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으로 이원화
- 다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을 통합·운영하기로 합의
-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예산·결산과정과 연계되도록 규정(「국가재정법」)
  - 2009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2008.10)
  -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성과보고서 국회 제출 예정(2010.5)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성과계획서 관리과제 부문의 일원화 모색

-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는 주요정책부문과 재정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정책부문은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프로그램 예산 체계 내에서 확인하기 곤란함.

-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주요정책부문과 재정사업부문으로 분리하여 재정사업부문 관리과제만 예산서와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서와 성과계획서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따라서 모든 정부 업무를 재정사업(Program)으로 조속히 일원화하여 예산항목들이 성과계획서와 일대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주요정책과제 부문에서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제도·규제 등 정책관련 세부업무들도 예산은 비록 적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이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 혹은 관리과제의 세부 활동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부처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활동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성과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임(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2008).

#### □ 성과계획과 예산안과의 일치 정도 제고

-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관리과제와 단위사업간, 관리과제 사업비와 단위사업 예산안간 불일치의 비율이 50%를 넘는 기관이 15개 정부기관 중 7개 기관(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인 것으로 검토되었음(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2008).
- 2009년 5월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신설(제8조제9항)되었음. 향후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시 성과계획과 예산안과의 일치 정도를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결산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

- 2008회계연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결과 동 정보가 국회의 결산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신뢰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사례1〉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도 간의 차이가 과다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추진」: 2008년 예산현액의 실적행률은 4%인 반면, 성과달성도는 당초 목표 대비 100%로 실적행률과 성과달성도 간의 차이가 과다함.
- 〈사례2〉 연도별 예산액과 성과정보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 환경부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 23억원(2007년) → 61억원(2008년) → 81억원(2009년)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성과지표인 「완충녹지 주변지역 주민의 악취개선에 대한 만족도」의 목표치 및 달성실적이 3년 연속 80점으로 동일하여 연도별 예산액과 성과정보 간의 불균형이 발생함.
- 〈사례3〉 성과달성도를 부정확하게 측정한 경우
  - 통일부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지급」: 성과지표인 「취업증가율」의 성과달성도는 225%로 나타났으나, 측정산식인 「(금년수급증가율/전년입국증가율)×100」은 「취업증가율」 보다는 「고용지원금지급증가율」을 측정하는 식으로 성과달성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부적절함.
- 사업부서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대표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국회가 확정해 준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 또한 성과실적을 부풀리지 않는 측정산식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액 변동에 따라 설득력 있는 성과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성과평가부서에서는 성과달성도라는 수치보다는 이러한 성과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2009).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기획재정부 | 재정정책국 | 성과관리심의관 | 재정기획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이현정(788-4672)

## 4 2008년도 유가환급금 집행에 대한 사후점검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2008년도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6.8)」의 일환으로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
- 사업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100조의 34

#### □ 추진체계

- 기획재정부 : 정책(제도)입안
- 국세청 :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한 결정 및 환급 등 집행 업무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단위 : 만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     | 사업소득자       |     |
|-----------------|-----|-------------|-----|
| 총급여             | 환급금 | 종합소득금액      | 환급금 |
| 3,000만원 이하      | 24  | 2,000만원 이하  | 24  |
| 3,000~3,200     | 18  | 2,000~2,130 | 18  |
| 3,200~3,400     | 12  | 2,130~2,260 | 12  |
| 3,400~3,600     | 6   | 2,260~2,400 | 6   |
| 3,600만원 초과      | 0   | 2,400만원 초과  | 0   |

- 주: 1. 2007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2.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008년중 근로월수,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  
 3.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7.7~2008.6월간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할계산

## ○ 유가환급금 집행실적

유가환급금 계획 대비 집행실적(잠정)

(단위 : 만명, 억원, %)

| 구 분      | 근로소득자 |        | 자영업자 |        | 일용근로자 |       | 합 계   |        |
|----------|-------|--------|------|--------|-------|-------|-------|--------|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계 획(A)   | 843   | 19,200 | 443  | 10,550 | 364   | 4,400 | 1,650 | 34,150 |
| 실 적(B)   | 742   | 15,298 | 344  | 7,006  | 349   | 4,216 | 1,435 | 26,520 |
| 증감(B-A)  | △101  | △3,902 | △99  | △3,544 | △15   | △184  | △215  | △7,630 |
| 증감율(B/A) | 88.0  | 79.7   | 77.7 | 66.4   | 95.9  | 95.8  | 87.0  | 77.7   |

주: 1. 계획은 2008년 10월 국세청 추계 기준, 당초 기획재정부 추계는 3조 4,900억원

2. 실적은 2008년 12월 말 국세청 발표결과(잠정치) 기준

3. 계획 및 실적치에는 2009년 5월에 환급신청 및 환급금이 지급되는 신규취업·신규개업자(약 80만명 추정)의 인원 및 지급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정책목표의 명확화

- 2008년도 유가환급금 정책의 입안당시 명시적인 정책목표는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는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두었음. 그러나 작년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운용된 측면이 큼.
- 이와 같이 명시적인 정책목표와 실질적인 정책목표가 상충됨에 따라 정책대상의 선별(targeting)에 있어 정책결정과 집행상의 실효성이 다소 제약된 것으로 사료됨.

## □ 정책대상 선별의 문제점

- 즉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을 2007년도 소득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에 달하도록 선정하여(국세청, 보도자료, 10월 1일부터 유가환급금 제도시행, 2008.10.1)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

은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시적인 정책목표와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브리프, 「유가환급금 정책평가」, 2008.12).

- 반면 유가환급금 지원기준을 2008년도 경제활동참여자에 국한함에 따라 2007년도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지만 2008년도에 실직, 은퇴, 폐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들이 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와 같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지급기준에 대한 불만 등 집행과정에서의 일부 혼선이 야기되었고, 경기회복이라는 실질적 정책목표도 다소 제약된 것으로 보임.

#### □ 정책대상 인원 및 재정소요(환급액) 추계의 신뢰성 제고

- 2008년도 유가환급금 집행실적이 당초 추정 인원 및 금액(1,650만명, 3조4,150억원)보다 약 215만명과 7,630억원이 미달하는 집행실적을 보임.
- 국세청의 보도 자료(국세청, 보도자료, 유가환급금 지급결과(잠정치) 발표, 2008.12.29)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추계오차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08년도 12개월 모두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월수계산 감소분과 2007년도 기준 소득 자료에는 포함되었으나 2008년도에 실업, 은퇴, 폐업, 출국, 사망 등으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등의 지급금액 감소분이 당초 추계에서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임.
- 과도한 추계오차는 정책시행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등 정책결정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기획재정부 | 재정정책국 | 성과관리심의관 | 재정기획과 |

• 작성 : 경제분석실 경제분석관 정지은(788-4666)

## 5 근로장려세제의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 소득 증가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사전에 예방
- 사업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2~13

#### □ 추진체계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총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동거입양자가 1인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재산요건)
- 지급금액 :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한도액은 12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 연간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 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5%             |
|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 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소득파악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소득파악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서 부정수급자 문제, 근로장려금의 방만한 운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04년 개인사업자 436만명 중 기장에 의한 신고자는 114만명(소득파악률 26.1%)으로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비율이 낮으므로, 향후 제도 확대 계획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농어민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소득파악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국회예산정책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2008).

### □ 근로장려금 규모 추정 근거 제시

- 근로장려금 규모가 과다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국회예산정책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2008).

### □ 근로장려금의 세출예산 계상 모색

- 근로장려금의 경우 조세환급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총계주의’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참고로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경우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구분계리원칙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OECD의 경우 ‘Interpretative Guide §20 and §21 of the OECD Revenue Statistics’에서 non-wastable tax credit의 재정지출 성격에 의해 세입을 축소보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EITC 등 재정지출 성격의 환급을 조세지출로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의 축소보고를 경계하고 있음(정지은 외,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경제현안분석 제29호, 국회예산정책처, 2008. 9).

#### □ 과세단위 불일치 문제 교정

-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소득세체계 내에서 소득보장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현행 소득세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함.
- 현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가구 단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방안 마련

-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실질적으로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 유인 확보 방안이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무능력자에게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임병인, 「빈곤대책의 실효성 증대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용효과성 증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보고서, 2008. 11).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기획재정부 | 세제실 | 조세정책관 | 소득세제과 |

• 작성 : 경제분석실 경제분석관 전승훈(788-4664)

## 6 부담금 급증에 따른 관련 대책 수립 필요

### 가. 개요

#### □ 부담금제도 현황

- 제도 개요 :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하고 정부의 기금·특별회계 등의 수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부담금 수는 101개이고 징수규모는 15조 3,000억 원 수준
- 부담금 근거 :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 규모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연평균<br>(’01~’08) |
|-----------|------|------|-------|-------|-------|------|-------|-------|------------------|
| 국세수입(조원)  | 95.8 | 104  | 114.7 | 117.8 | 127.5 | 138  | 161.5 | 167.3 | -                |
| (증가율, %)  | 20.2 | 8.6  | 10.3  | 2.7   | 8.2   | 8.2  | 17.0  | 3.6   | 8.3%             |
| 부담금(조원)   | 7.2  | 7.9  | 9.3   | 10.2  | 11.6  | 12.1 | 14.5  | 15.3  | -                |
| (증가율, %)  | -    | 10.3 | 17.3  | 9.3   | 13.8  | 4.7  | 20.1  | 5.1   | 11.4%            |
| 부담금/국세(%) | 7.5  | 7.6  | 8.1   | 8.7   | 9.1   | 8.8  | 9.0   | 9.1   | -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6. 24

#### □ 부담금 추진체계

- 제도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 부담금 운용 및 지출 : 전체 부담금의 79%(2008년 12.0조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3.3조원)는 지자체·공단사업 등에 지출
-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기금(2008년 8.7조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특별회계(2008년 3.3조원)로 귀속되어 중앙정부 사업에 지출
- 학교용지부담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은 지자체 또는 공단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부담금 급증 대책 마련

- 부담금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징수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1년 7조 2,000억 원이던 부담금이 2008년 15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1.4% 증가율을 보임(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8.3%).
- 늘어난 부담금은 기업의 재정부담 증가로 성장기반이 침식되고 그에 따라 경제 활력 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정부는 지난 6월에 부담금 부과요율조정, 일몰제 확대, 부담금 통·폐합, 사전·사후 보호절차 강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제도개선에 따른 부담금 추정액의 변화 정도는 발표치 않고 있음.
  - －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요율조정을 추진함.
  - － 일몰제 확대 : 신설 부담금에 대해 존속기한 설정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함.
  - － 부담금 통·폐합 :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실익 없는 6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은 단일법 체계로 통합함.
  - － 사전·사후 보호절차 강화 : 부담금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별부담금 근거법률에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함.
-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부담금 증가 및 징수규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창출되는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기획재정부 | 재정정책국 | 성과관리심의관 | 재정기획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홍엽(788-4670)

## 7 주택가격의 상승 대책 마련

### 가. 주택가격 현황

- 서울 강남재건축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주택가격 큰 폭 상승
  - 2009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주택가격이 과천 10.3%, 서울 강남 1.4%, 강동구 3.0%로 큰 폭 상승했고, 특히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2/4분기에 6.2% 상승했으며 강남3구 아파트 거래건수는 2,334건으로 5월 1,464건보다 59.42% 급증
  -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말 현재 111조 2,477억 원으로서 작년 말 대비 4조 2,930억 원이 증가
- 주택관련 제도 현황
  - 이 같이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배경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커지게 된 가격상승 기대감(임대·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또는 완화,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 투자용 아파트 보유 부담 완화 등)
  -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연한 단축, 서울시 의회에서 재건축허용 연한을 준공 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하려는 내용의 조례 개정 움직임 등
-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
  -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단기부동자금 증가와 대체투자 부재, 부동산 관련 세제와 규제 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주택가격 확산 가능성 주의

- 강남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주택수요 심리에 영향을 주어 여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함.
- 저금리기조,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세제완화, 도심권역 개발호재 등 주택시장 상승요인이 2001-2003년 주택가격 급등의 초기상황과 유사함.

### □ 지역별 소득계층별 조정 정책 마련

- 현재와 같은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금리정책보다는 지역과 소득계층을 선별하여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함.
- 정부는 7월 17일에 수도권외의 주택담보인증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고려해야 함.

### □ 금융규제 이외 종합적인 대책 마련

- 중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관련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세제, 공급 확대, 부동산 관련 제도 정비의 조합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과       |
|-------|-------|---------|
| 기획재정부 | 정책조정국 | 정책조정총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흥엽(788-4670)

## 8 원자재비축사업의 적정재고 확보 노력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 구매·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원  
 활한 장·단기 물자수급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
- 사업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축물자의 범위 : 알루미늄류,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희소금속류, 임산물  
 류,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0호」)
- 재원 : 회전자금(정부 출연금과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전출금으로 자본금 증식)

#### □ 비축사업 실적

- 2009년 6월말 현재 비철금속 6종, 실리콘 등 희소금속 8종 등 총 16종의 국내수입  
 수요 39일분을 비축

(단위: 억원)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6월 |
|-------|-------|-------|-------|-------|----------|
| 비축    | 5,477 | 3,240 | 7,261 | 7,219 | 4,796    |
| 방출    | 4,438 | 6,650 | 5,742 | 6,206 | 2,613    |
| 선물·옵션 | 2,215 | 2,682 | 3,702 | -     | -        |

주: 2007년부터는 비축사업의 이중계상 문제 해소를 위해 선물·옵션 제외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원자재 적정재고 수준의 합리적 설정 및 재원조성방안 마련

- 2008년 말 현재 재고 규모는 연간 국내수입수요 기준 적정재고인 60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27일분만을 확보하고 있음. 연간 국내수입수요의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적정재고 수준이 중·장기 경제전망, 원자재 가격 전망, 국내·외 생산량 및 수요량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Ⅱ, 2009).
- 2012년까지 국내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비축재원인 회전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전출로 인해 조달청의 회전자금 조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바, 조달특별회계에서 비축자금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분간 일반회계 전출금은 유보하고, 적정 비축자금이 확보된 이후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8).

### □ 비축품목 선정 및 품목별 비축량 결정의 합리성 제고

- 아연은 중국 등 34개 나라에서 연간 1,000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 비독점 품목으로서 수입의존도가 14%에 불과하여 공급장애 가능성이 낮음. 알루미늄 역시 가격변동 폭이 가장 적어 비축의 시급성이 떨어짐. 펄프는 내용연수가 짧아 장기 비축물자로 적합하지 않음(감사원,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실태」, 2008).
-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 재고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품목을 비축품목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등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함.

## □ 민관공동비축사업 활성화 촉진

- 비축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 관리비용 등을 감면해주는 민관공동 비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09. 4.17)」이 국회에 계류중임.
- 예산제약으로 비축규모 확대가 곤란한 경우 조달청 비축시설 여유공간에 민간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비축규모 증대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민관공동비축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원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와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설사용료 감면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실제 비축량 확대가 필요한 고가의 희소금속 보다는 부피가 큰 저가의 재활용자원만이 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기획재정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9.4).

| 부처  | 실·국   | 과      |
|-----|-------|--------|
| 조달청 | 국제물자국 | 원자재총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이현정(788-4672)

## 9 KIC(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로 인한 손실 및 대응방안 마련

### 가. KIC의 메릴린치 투자 현황

#### □ 투자 및 손실 현황

- KIC는 2008년 1월 메릴린치에 20억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였으나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메릴린치가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합병되어 현재 BOA 주식 62,093,045주를 소유
- 2008년 1월 15일 의무전환우선주에 대해 전략적인 지분투자를 하였고, 2008년 7월 28일 가격재조정 조항(Price Reset Clause)을 활용해 보통주로의 조기 전환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 BOA의 메릴린치 합병이 완료
- 수익률이 2008년 말 기준 -50.90%이며 2009년 6월말 현재 -51.79%

KIC의 메릴린치(BOA에 합병)에 대한 전략적 투자 수익률

| 시기       | 수익률(%)  | BOA 종가  |
|----------|---------|---------|
| '08.12월말 | -50.90% | 11.64\$ |
| '09. 1월말 | -72.49% | 6.58\$  |
| '09. 2월말 | -80.64% | 3.95\$  |
| '09. 3월말 | -71.68% | 6.82\$  |
| '09. 4월말 | -65.12% | 8.93\$  |
| '09. 5월말 | -57.83% | 11.27\$ |
| '09. 6월말 | -51.79% | 13.20\$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투자의 적정성 검토 필요

- KIC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금액의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제시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진 후 1년도 안 되서 메릴린치가 BOA에 합병됐다는 점에서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투자 당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했던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KIC의 투자결정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당연직 3명과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금융위기상황하에서 해외투자의 계속여부 검토

- 2005년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할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처    | 실·국   | 과     |
|-------|-------|-------|
|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 | 국부운용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홍엽(788-4670)

## 10 법인세 체납액 증가 문제 개선

### 가. 법인세 체납 현황

#### □ 체납 발생총액 및 미정리체납액 증가

- 법인세체납 발생총액이 2006년 말 1조 1,340억 원, 2007년 말 1조 3,045억 원, 그리고 2008년 말 1조 4,851억 원으로 증가 추세
- 미정리체납액 또한 2007년 말 1,856억 원에서 2008년 말 2,320억 원으로 증가

법인세 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
| 체납발생총액 | 14,174 | 11,340 | 13,045 | 14,851 |
| 정리금액   | 11,563 | 9,503  | 11,189 | 12,531 |
| 미정리체납액 | 2,611  | 1,837  | 1,856  | 2,320  |

#### □ 미정리체납의 사유

-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나 공매진행 등으로 현금정리가 어려운 경우
- 불복청구(소송, 심판청구) 진행 등으로 체납처분에 제약이 있는 경우
- 일시적인 자금애로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압류유예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체납 신규발생 등으로 독촉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체납액 증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선행

- 법인세 체납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의 실적 부진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상황이 어려워 제대로 법인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별 경영상황을 점검해 개별 세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탄력적인 체납처분 등 기업 입장에서의 징세행정 확대 필요

- 체납된 법인세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신용정보 제공,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재산 검색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징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함.
- 또한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궁하는 것도 중요함.
-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확대해 기업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법인세 체납액 징수방안별 효과성 제고

- 다양한 징수방안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 장기적으로 기업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법인세체납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해 징수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국세청 | 납세지원국 | 징세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홍엽(788-4670)

## 11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실적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를 사후적으로 징수
  -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란 국유지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로부터 국가가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
- 사업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 사업예산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 13,801 | 16,687 | 20,308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 기획재정부 장관(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
- 총괄청과 관리청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다시 지자체에 위임·관리하거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위탁·관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실적 제고

- 2008년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징수결정액 1,012억원 중

251억원이 수납되어 24.8%의 낮은 수납률을 보였음.

– 미수납액은 733억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8억원임.

2008년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 예 산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수납률 (B/A)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16,687 | 101,196   | 25,085  | 24.8      | 73,285 | 2,826 |

#### □ 국유재산 관리의 민간위탁 확대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고,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민간위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 관리 인력이 부족하거나(1~2명 타업무 겸직)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담당 인력이 많고 관련 업무에 특화된 민간기관이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한국토지공사의 2008년 변상금 수납률이 93.8%를 보이는 등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민간위탁기관의 수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8년 기관별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 산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수납률 (B/A)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지방자치단체   | 16,687 | 67,646    | 9,347   | 13.8      | 55,473 | 2,826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33,242    | 15,449  | 46.5      | 17,793 | –     |
| 한국토지공사   |        | 308       | 289     | 93.8      | 19     | –     |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기획재정부 | 국고국 | 회계결산심의관 | 국유재산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황선호(788-4624)

## 12 인구사회통계의 대응성 · 정확성 ·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①취업시간, 구직활동, 이직사유 등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고(경제활동 인구조사), ②농·어가의 인구, 가구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의 경영실태와 농·축산물 생산량 등을 조사하며(농어업통계작성), ③인구 및 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택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 사업근거 : 「통계법」 17조
- 사업예산 : 2009년 기준 사회통계작성에 55억 2,900만원, 농어업통계작성에 17억 7,200만원, 인구주택총조사에 61억 6,800만원 계상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어업통계작성 · 인구주택총조사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8  | 2009  |
|--------------------|-------|-------|
| • 사회통계작성(경제활동인구조사) | 4,895 | 5,529 |
| • 농어업통계작성          | 9,706 | 1,772 |
| • 인구주택총조사          | 2,914 | 6,168 |

주 : 사회통계작성 내에 경제활동인구조사 포함

#### □ 추진체계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고용통계팀 직접 수행
- 농어업통계작성 :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 직접 수행
-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인구조사과 직접 수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체감실업률 공표를 통한 고용환경에 대한 대응성 제고

- 우리나라 노동구조 상 비경제활동인구 및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선 상에 존재하는 구직단념자 및 불완전 취업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취업준비자 등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따라서 공식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미국의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 가운데 하나인 U6<sup>1)</sup>로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U6는 7.45%로 공식실업률에 비하여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회예산정책처,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2008. 8).
- 통계청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와 같은 보조지표를 공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지표를 활용한 별도의 체감실업률은 생산하지 않고 있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고용정책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감실업률을 공식실업률과 함께 개발·공표할 필요가 있음.

### □ 충실한 현장조사를 통한 통계의 정확성 제고

- 통계청은 「가축동향조사」 및 「경지면적 통계조사」등 농어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현장조사 담당공무원 행동지침」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실제보다 과소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 가축사육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경영주를 면접하거나 확인하도록 하고, 경지면적조사를 할 때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지면적 증감 지역은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는 등 충실한 현장조사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감사원,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2009. 4).

###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대비 조사체계의 효율성 제고

-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주택의 특성을 5년 단위로 파악하여 노동력 수급계획, 보건·복지정책, 주택수급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규모

1) U6 :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한계 노동력 인구 가운데 전체 실업자, 전체 한계노동력 및 경제적 이유에 의한 파트타임 취업자(=불완전취업자)를 합한 인구의 비율 = (실업자+한계근로자+불완전취업자)/(경제활동인구+한계근로자)

조사로서 막대한 인력·예산이 소요되므로 조사방법 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조사실시가 요구됨.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별 조사비용 증가 추세

(단위:억원)

| 구 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10년(추정) |
|---------|-------|-------|-------|-----------|
| 실시년도 예산 | 539   | 834   | 1,290 | 2,089     |
| 총조사예산현액 | 584   | 962   | 1,462 | 2,322     |

자료 :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응답자 부담경감을 위해 전자조사방식의 적용을 확대하고, 조사항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유할 수 있는 행정정보자료를 적극 발굴하며, 농림어업총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조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인구주택총조사사업 평가」, 2006).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시험조사 및 평가를 통해 상기 개선방안들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통계청 | 사회통제국 | 고용통계팀 농어업생산통계과 인구조사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이현정(788-4672)



## Ⅱ 정무위원회



### 1 금융기관 지원효과를 가지는 예산사업의 위험부담 적정화 도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정부예산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기금에 출연·출자함으로써 동 법인 등이 시중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정부예산이 금융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등
- 사업예산

금융기관 지원효과를 가지는 예산

(단위: 억원)

| 소 관                      | 사업명             | 2007   | 2008   | 2009   |
|--------------------------|-----------------|--------|--------|--------|
| 중소기업청                    | 신용보증기금 출연       | 1,300  | 1,000  | 19,800 |
|                          |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 2,000  | 1,700  | 7,200  |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105    | 180    | 2,600  |
|                          | 지역신용보증지원        | 154    | -      | 3,700  |
| 지식경제부                    | 수출보험기금 출연       | 250    | 250    | 5,100  |
| 기획재정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200    | 180    | 800    |
|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br>구조개선특별회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 7,357  | 6,952  | 9,095  |
|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 1,100  | 70     | 30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 500    | -      | 4,000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 -      | -      | 6,000  |
| 합 계                      |                 | 12,966 | 10,332 | 58,325 |

주: 1. 추정예산 기준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출자(2008년 500억원) 미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 □ 추진체계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 농림수산업자 ·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지원이 목적이거나,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신용위험을 보증기관이 인수함으로써 정부 출연예산이 금융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발생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려는 것으로, 동 공사가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 신용위험을 양수함으로써 정부 출자예산이 금융기관의 재무비율(BIS자기자본비율 등)을 개선하는 효과 발생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출자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 · 정리하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정부 출자예산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 발생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적절한 위험분담 모색

-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연체율 증가 및 BIS비율 하락에 따라 대출에 소극적이므로, 정부가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촉진하려는 것임.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대출 확대 등 공공성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각종 시장위험을 정부나 공공부문이 인수하는 문제가 발생함.
-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공적 지원에 안주하지 말고 업무혁신, 시장개척 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금중개시장에 존재하는 신용위험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부문의 부담증가에 상응하여 금융기관도 출연·출자를 확대하는 등 부담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으로 각종 시장위험이 이전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09).

| 사업명             | 부처      | 실·국    | 과       |
|-----------------|---------|--------|---------|
| 신용보증기금 출연       | 중소기업청   | 경영지원국  | 기업금융과   |
|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         |        |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        |         |
| 지역신용보증지원        |         |        |         |
| 수출보험기금 출연       | 지식경제부   | 무역투자실  | 수출입과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기획재정부   | 예산실    | 민자사업관리과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정책국  | 농업금융정책과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 금융위원회   | 금융서비스국 | 은행과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         | 금융서비스국 | 은행과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         | 금융정책국  | 금융구조개선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유인규(788-4623)

## 2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공적자금 회수 미흡 대책 마련

### 가. 개요

#### □ 공적자금 회수 현황

- 주요내용 :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소하고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보증 채권발행과 공공자금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출자·출연, 예금대지급, 부실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였고, 2001년까지 공적자금 지원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 공적자금의 회수에 주력하는 한편,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손실에 대해 상환대책을 수립하여 회수와 상환 중심으로 공적자금 관리를 수행
- 관리기관 :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정리금융공사
-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 2008년 6월 말 기준 지원된 공적자금 중 총 91조여 원을 회수하여 지원금액 대비 54.4%의 회수실적 기록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조원)

| 기 관      | 지 원   | 회 수  |
|----------|-------|------|
| 예금보험공사   | 110.7 | 40.8 |
| 한국자산관리공사 | 38.6  | 42.0 |
| 정부       | 18.2  | 8.8  |
| 한국은행     | 0.9   | -    |
| 계        | 168.4 | 91.6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부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를 통하여 공적자금 회수실적 제고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대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채권보전조치와 재산조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 가능한 335억여 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남(매일경제, 2009. 7. 16).
  - 공적자금 관리기관은 부실 관련자 9,595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만 5,225건 중 1,184건에 대해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 246억원 상당의 자산을 회수하지 않았음. 또한 동 기관들은 부실 관련자 563명의 권리설정 내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62억원을 방치했고 재산조사 업무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사후조치 미비로 받지 못한 공적자금의 기관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파이낸셜뉴스, 2009. 7. 17).

후속조치 미비로 받지 못한 공적자금

(단위: 백만원)

| 기 관      | 회수가능금액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22,306 |
| 정리금융공사   | 6,267  |
| 서울보증보험   | 4,337  |
| 예금보험공사   | 685    |
| 계        | 33,595 |

| 부처    | 실·국   | 과       |
|-------|-------|---------|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 | 금융구조개선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보 남은정(788-4674)

### 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액 증가 관련 법제도 개선 모색

#### 가. 개요

##### □ 과징금 환급 현황

- 목적 : 과징금의 부과 · 징수는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나 담합 등 불법행위 제재
-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8
- 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내용 : 과징금의 환급 및 감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 과징금을 이의신청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부과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며,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
- 과징금 환급 및 감액 현황 : 과징금 환급액 및 감액은 2007년에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었고, 2008년도에도 1,201억원을 기록

과징금 환급 및 감액 발생규모

(단위: 백만원)

| 연 도  | 총부과액    | 환급액(A)  |        | 감액(B) | 소계(A+B) |
|------|---------|---------|--------|-------|---------|
|      |         | 환급과징금   | 환급가산금  |       |         |
| 2006 | 398,324 | 54,159  | 11,408 | 6,749 | 72,316  |
| 2007 | 520,143 | 100,484 | 29,794 | 233   | 130,511 |
| 2008 | 252,852 | 95,799  | 20,162 | 4,148 | 120,109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체납·환급가산금 비율의 적정성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체납가산금 비율은 연 10.59%, 환급가산금 비율은 연 5.52%임. 체납가산금의 경우 금전적 제재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의 채권인 체납가산금 채권만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음. 따라서 체납·환급가산금 비율을 개별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고시로서 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직접 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 내지 합리성을 갖춘 가산금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임(정무위원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08).

### □ 담합의 내용 및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실효성 제고

- 2008년 환급 및 감액된 과징금 중 94.3%인 1,132억원이 부당공동행위(담합)로 부과된 과징금임. 과징금 상한선을 담합기간 동안 매출액의 10%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부과한 과징금조차 지키지 못하고 다시 돌려주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 담합의 내용 및 유형에 대해 상세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판례 분석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 7. 9).

| 부처      | 과     |
|---------|-------|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보 남은정(788-4674)

## 4 신용보증 관련 기금사업의 구상채권 회수실적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소송·경매 등), 채무자면담 등 채권회수활동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
- 사업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9조 등

구상채권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6월 |
|--------------|------|-------|-------|-------|-------|---------|
| 신용보증기금       | 구상채권 | 9,140 | 8,119 | 5,127 | 4,499 | 2,358   |
|              | 특수채권 | 715   | 790   | 955   | 1,048 | 515     |
|              | 합계   | 9,855 | 8,909 | 6,082 | 5,547 | 2,873   |
| 기술신용보증기금     | 구상채권 | 3,706 | 3,345 | 2,980 | 2,205 | 1,180   |
|              | 특수채권 | 337   | 405   | 434   | 435   | 237     |
|              | 합계   | 4,043 | 3,750 | 3,414 | 2,640 | 1,417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구상채권 | 1,148 | 1,246 | 1,496 | 1,498 | 624     |
|              | 특수채권 | 93    | 114   | 135   | 150   | 95      |
|              | 합계   | 1,241 | 1,360 | 1,631 | 1,648 | 719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구상채권 | 1,363 | 1,670 | 1,044 | 886   | 371     |
|              | 특수채권 | 82    | 87    | 99    | 128   | 58      |
|              | 합계   | 1,445 | 1,757 | 1,143 | 1,014 | 429     |

주: 1. 총보증, 원금 기준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기준(주택담보노후연금계정 제외)

자료: 각 기금관리주체

### 구상채권 연말잔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6월 |
|---------------|------|---------|---------|---------|---------|---------|
| 신용보증기금        | 구상채권 | 50,072  | 43,117  | 36,083  | 32,482  | 32,914  |
|               | 특수채권 | 90,659  | 102,651 | 115,428 | 126,856 | 132,808 |
|               | 합계   | 140,731 | 145,768 | 151,511 | 159,338 | 165,722 |
| 기술신용보증기금      | 구상채권 | 29,019  | 21,929  | 19,127  | 19,442  | 23,482  |
|               | 특수채권 | 54,405  | 65,891  | 72,926  | 77,054  | 76,844  |
|               | 합계   | 83,424  | 87,820  | 92,053  | 96,496  | 100,326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구상채권 | 18,515  | 23,238  | 25,698  | 21,596  | 22,640  |
|               | 특수채권 | 11,664  | 15,875  | 20,763  | 29,119  | 29,024  |
|               | 합계   | 30,179  | 39,113  | 46,461  | 50,715  | 51,664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구상채권 | 18,554  | 19,867  | 20,465  | 18,697  | 18,958  |
|               | 특수채권 | 5,825   | 7,431   | 8,929   | 10,152  | 9,913   |
|               | 합계   | 24,379  | 27,298  | 29,394  | 29,849  | 28,871  |

주: 1. 총보증, 원금 기준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제정 기준(주택담보노후연금제정 제외)

자료: 각 기금관리주체

### □ 추진체계

- 구상채권 회수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한 채무자(중소기업, 주택수요·공급자, 농림수산업자 등)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구상채권은 면담 및 상환촉구, 소송제기, 담보권 실행 등의 활동을 통해 회수
- 특수채권 회수 :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상각처리하고,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특수채권 관리 강화

-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하여 상각처리한 특수채권이 규모 및 비중 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특수채권의 회수위탁, 매각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구상채권 회수실적 제고

- 최근 특수채권을 포함한 전체 구상채권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상채권 회수규모는 정체되고 있음.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부실가능성을 상시 스크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적극 활용하여 회수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구상채권 회수방법의 다양화 모색

- 「기술신용보증기금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는 구상채권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특수채권의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하여 이미 상각처리한 채권이란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외부 전문기관에 구상채권 일부에 대한 회수업무를 위탁하거나, 자체 채무감면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구상채권 회수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금명          | 기금관리주체    | 부서            |
|--------------|-----------|---------------|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영업본부 채권관리팀    |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금융부문 채권관리부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용보증기획부 법규승무팀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기금운영본부 기금채권실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유인규(788-4623)

## 5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권한에 관한 논의 필요

### 가. 개요

#### □ 현황

- 한국은행 설립 목적 :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한국은행법」 제1조)
- 한국은행 설립 근거 : 「한국은행법」
-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 한국은행법 개정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도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즉 금융안정 권한을 부여 하자는 것으로, 현재 동 사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계류 중

#### □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 안정 추가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금융안정 운영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
-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편
-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 삭제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의 추가적 명시 검토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려는 것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금융안정”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령 제·개정권과 감독권한이 동 기관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능 중복과 감독권 중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 금융안정은 한국은행 고유의 전유물이 아니며, 금융시스템 내에서 각 기관에게 주어진 역할의 충실한 수행과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그 의미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금융안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정무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 한국은행법 개정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임.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인 한국은행의 권한이 강화되므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없이 한국은행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면 정무위원회는 부정적임(조인스, 2009. 3. 31).

| 부처   | 실·국 | 과     |
|------|-----|-------|
| 한국은행 | 조사국 | 금융산업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보 남은정(788-4674)

## 6 보훈병원 의료장비 현대화의 효과적 수행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보훈병원의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국가유공자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정확성·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사업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 사업예산

보훈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07   | 2008  | 2009  |
|--------------|--------|-------|-------|
| 보훈병원 의료장비현대화 | 16,744 | 4,339 | 1,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훈병원
- 수혜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부상자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의료장비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장비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마련된 장비의 44%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후, 장비구매에 있어서 타당성심의를 강화하였고,

주기적으로 장비활용률에 대한 조사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의 장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하였음.

- 그러나 2007년 이후 도입된 장비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100%의 활용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장비의 비율이 아직도 30%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자재 구입시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 요구됨.

#### □ 재원확보 및 운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

- 2004~2007년까지 복권기금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복권기금 재원의 감소로 인해서 2008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함.
- 사업이 목표로 하는 노후장비의 교체 및 신장비의 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재지원을 받는 등의 조치를 모색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임.
- 병원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소요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허용된 예산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병원에 대한 위탁·진료협약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 요구됨.

| 부처    | 실·국   | 과     |
|-------|-------|-------|
| 국가보훈처 | 복지증진국 | 보건의료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7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의 합리성 도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 사업목적

- 공공기관별 부패수준의 측정과 반부패정책 성과 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의 수립·추진 도모
- 일반 국민, 외국인, 공직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부패인식수준 조사를 통한 반부패 정책의 방향 제시
- CPI 등 부패관련 국제지표의 변화 추이 분석과 체계적 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 사업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사업예산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07까지 | 2008  | 2009  | 2010이후 |
|----------|--------|-------|-------|--------|
| 부패방지조사평가 | 3,711  | 1,705 | 1,545 | 5,428  |

주: 2007까지 예산은 2005~2007 결산액 합계

2010이후 예산은 2010~2012 중기계획 예산액 합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최근 4개년의 집행실적이 80% 수준에 머물고 있음. 집행 실적 부진은 청렴정책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의문을 갖게 함.

### □ 부패방지 조사의 평가 시기와 방법 조정 필요

- 부패방지 조사평가 사업은 청렴도 측정, 부패인식도 조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부패인식도 사업의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사업의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 기업인, 청소년 등 5개 집단임. 이 중 공무원 집단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나 조사방법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왜냐하면 2008년 공무원 집단의 부패인식도(3.1%)가 다른 집단의 부패인식도(40.9%~75.8%)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공무원 집단에 대한 조사를 제외시키는 방안과 계속 추진할 경우, 다른 집단과 차별성 있는 설문문항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청렴도 측정사업 역시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 사업의 경우 2002년 71개이던 대상기관이 333개로 대폭 확대됨. 매년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가 필요한가는 의문임. 따라서 조사대상을 나누어 격년제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1)</sup>

| 부처      | 실·국   | 과       |
|---------|-------|---------|
| 국민권익위원회 | 정책협력단 | 청렴조사평가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1)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을 1년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합목적적인 운영 도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 사업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사업예산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07    | 2008    | 2009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br>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 268,138 | 293,788 | 340,132 |

#### □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사업추진방식 : 정부출연금 및 자체수입
  - － 정부출연금은 기본사업비와 특수사업비로 구성되며, 기본사업비는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를 포함하고, 특수사업비는 일반사업비, 시설비, 차입금 상환 등을 포함
  - － 자체수입은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의 수탁연구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자체수입의 초과발생의 시정

- 결산 결과 당초세입예산을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2005년 836억원이 초과되었으며 초과율은 61.4%, 2006년 830억원이 초과되었으며 초과율은 58.4%), 이는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자체수입 과소계상은 기관평가시 활용하는 자체수입의 목표대비 달성정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관평가의 기준을 합리화·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 수탁과제 비율의 과다문제 해결노력

- 연구과제는 정부출연에 의한 과제 및 수탁과제로 구성되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전체 연구기관의 기본과제와 수탁과제의 비율이 최근 3년간 35:65 정도로 수탁과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가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보다 수탁과제에 더 몰두하는 것은 기관고유의 정체성에 위배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영향력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왜곡되거나 포획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과     |
|-------|-------|-------|-------|
| 국무총리실 | 국정운영실 | 총괄정책관 | 연구지원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9 한국소비자원 추진사업의 내실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소비자 권익보호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소비자시책 추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출연
-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41조(출연금), 제32조(보조금)
- 사업예산

한국소비자원 출연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8   | 2009   | 2010(안) |
|-------------|--------|--------|---------|
| • 한국소비자원 출연 | 22,771 | 22,998 | 22,998  |
| - 인건비       | 13,333 | 13,559 | 13,441  |
| - 운영비       | 1,186  | 1,128  | 1,128   |
| - 사업비       | 8,252  | 8,311  | 8,429   |

#### □ 추진체계

- 사업기간 : 1986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한국소비자원
- 지원조건 : 공공기관 출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이버감시단 운영사업 예산의 과다편성 지양

- 불량사이트 근절을 위한 사이버감시단 운영사업은 2009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5,100만원임. 동 사업의 목적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의 허위 신원·가격 정보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전한 인터넷쇼핑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의 모니터감시단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는 활동이므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예산 낭비의 소지를 제거하여야 할 것임(정무위원회, 「200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

### □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사업의 내실화

- 동 사업은 아시아지역 소비자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아시아지역 소비자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격년제로 개최하며, 2007년에 이어 2009년에도 우리나라가 참가국의 비용을 부담하여 포럼을 개최하였음(개최비용: 약 5천만 원).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출 모니터링 및 포럼비용의 합리적 분담 등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과      |
|---------|--------|--------|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국 | 소비자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보 남은정(788-4674)

2009년도 국가 주요 정책 사업

## 제 2장



# 산업사업 분야

Ⅲ 국토해양위원회 • 55

Ⅳ 지식경제위원회 • 87

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114





### Ⅲ 국토해양위원회

## 1 광역철도사업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광역전철망 구축으로 수도권 도심 인구분산 및 교통수요의 효율적 감당
- 사업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사업예산

광역철도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광역철도사업 | 472,769 | 634,350 | 828,782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지원조건 : 매칭펀드(국비 75%, 지방비 25%)
  - － 광역철도도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국고 지원을 했으나<sup>1)</sup> 2000년 4월 이후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75%, 지방정부가 25%를 각각 분담

1) 1997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설계비 및 용지비의 전액과 공사비의 50%, 지자체가 공사비의 50%를 부과하고, 지자체는 시·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전철 구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분담토록 함.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광역철도의 정량적 분류 기준 마련

-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경우 도시교통권역과 대도시권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도시철도 지정 또는 광역철도 지정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년도 결산분석 II」, 2009).
- 광역철도는 일반철도와도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지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 철도 BTL 사업인 ‘소사-원시 철도 BTL사업’ 및 ‘소사-대곡 철도 BTL사업’은 같은 노선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사-원시 철도 BTL사업’은 일반철도로 추진되고, ‘소사-대곡 철도 BTL사업’은 광역철도로 추진되고 있음.
- 광역교통 여객수요 규정 등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국토해양부, 「광역철도 지정 및 차량시스템 선정 기준 등 마련 연구」, 2008).
  - － 광역철도의 정의를 대도시권내에서 2개 시·도간 경계를 통과하는 일상여객수요가 전체 통행수요의 50%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일반철도로 정량화할 필요가 있음.
  - － 광역철도의 표정속도(表定速度)<sup>2)</sup>를 50km/hr 이상으로 규정하여 광역철도의 급행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광역철도의 예산지원 기준 개선

- 정부가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갖춘 노선에 대해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경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년도 결산분석 II」, 2009).

2) 도로와 버스의 기종점 사이나 주요 버스정류장 사이의 주행 거리를 주행시간, 교차로에서의 정지시간, 승객의 승하차시간 따위의 합계인 실제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임.

- 사업비 지원조건을 보면, 도시철도의 경우 사업비의 40%(서울시의 경우 60%)를, 광역철도의 경우 사업비의 2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부담 <개정 2007.4.20>)에서 국가가 그 사업비의 75%를 부담한다는 조항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에서는 광역철도의 예산지원은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한 국고 보조는 간선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기준으로 시도간 교통량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철도건설의 국고보조비율은 시도간 통행의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의 도시철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적용하고, 시도간 통행의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간선철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시도간 통행의 비율이 50%~100%일 경우에는 현재의 도시철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과 간선철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사이에서 선형관계를 적용하여 국고보조비율을 산정할 수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교통정책실 | 철도정책관 | 광역도시철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2 국도건설사업 예산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 강구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국가 간선망인 국도의 교통혼잡구간을 조기에 해소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 사업근거 : 「도로법」 제23조
- 사업예산

국도건설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07까지     | '08예산     | '09예산     | '10이후      |
|--------------|------------|-----------|-----------|-----------|------------|
| 일반국도         | 14,888,267 | 1,787,123 | 583,058   | 1,014,368 | 11,563,218 |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 5,656,825  | 2,179,003 | 441,702   | 558,251   | 2,477,869  |
| 계속비 국도       | 20,262,084 | 4,990,685 | 2,260,259 | 3,042,700 | 9,968,440  |
| 합계           | 40,807,176 | 8,956,811 | 3,285,019 | 4,615,319 | 24,009,527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
- 추진경위 : 산업화에 따른 경제도약으로 발생한 간선도로 교통체증을 조기에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89년 「도로사업특별회계」, '96년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시행
- 국도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로 추진
  - － 일반국도 건설 : 교통혼잡구간을 조기에 해소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 － 시관내 국대도 건설 : 시관내 교통혼잡구간을 조기에 해소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 － 계속비 국도건설 : 적기 완공을 위해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국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강구

- 정부는 국도건설예산이 2008년 대비 32.0% 증액되어 사업별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08년 36,642억원 → '09년 48,368억원, 11,726억원 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대한민국정부,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국토해양부 소관)」, 2009).
- 국도건설 사업에 대해 연간 부족 예산은 2조 6천억원이므로, 실질적으로 연간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국회예산정책처, 「교통시설 SOC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필요성 고찰」, 2006).
- 국토해양부는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는 공사비 부족으로 일부 국도건설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 「민간선투자」 대상 확대 방안 강구

-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계속비사업(지역간선1-5차)에 「민간선투자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08년 16,636억원→ '09년 30,437억원, 13,801억원 증).
-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장기계속계약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선투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교통시설 SOC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필요성 고찰」, 2006).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교통정책실 | 도로정책관 | 간선도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3 철도 BTL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대책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고유가, 환경오염심화 등에 대비하여, 고효율·친환경적이며 미래형 교통수단인 철도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자금을 투입하여 철도 건설 추진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 사업예산

철도 BTL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총 재정사업비      | 2007  | 2008   | 2009   |
|-------|--------------|-------|--------|--------|
| 함안~진주 | 53,258(용지비)  | -     | 11,381 | 6,921  |
| 익산~신리 | 60,007(용지비)  | 500   | 46,417 | 6,811  |
| 소사~원시 | 238,675(용지비) | 5,407 | 90     | 1,000  |
| 부전~마산 | 민자적격성 조사중    | 1,761 | -      | 9,300  |
| 원주~강릉 | 민자적격성 조사중    | 518   | -      | 20,000 |
| 대곡~소사 | 민자적격성 조사중    | 1,444 | 1,000  | 8,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민간사업자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BTL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대책 마련

- 국토해양부는 최근 1,000억원 이상 철도공사 최저가 낙찰률은 77% 수준이며, 이를 감안하면 철도 BTL 사업은 매우 낮은 공사비로 제안(낙찰)됨에 따라 오히려 정부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함.
  - 민간사업비 한도액(417,111백만원)은 설계금액에 준거사업 낙찰률(92.8%)을 적용하여 고시함.
  - 실제 수주금액(314,705백만원)은 고시금액의 75.45%로 제안(낙찰)함.

- 최종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낙찰률은 69.09% 수준임( $0.928 \times 0.7545 = 0.6909$ ).
- 최저가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낙찰률은 77% 수준이지만, 경전선 최저가 공사 발주시기인 2005년 당시 낙찰률은 평균 59.34%임.
- 최저가 발주 대상인 일반철도를 BTL로 추진할 경우, 낙찰률은 일괄 혹은 대안발주 낙찰률 수준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됨(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평가(II)」, 2009).
  - 경전선 BTL사업 구간은 최저가발주 구간이었는데, BTL로 변경됨에 따라 낙찰률이 1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사업비 추가지출이 586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됨.

#### □ SOC 자금조달 공공기관 설치의 타당성 검토 실시

- 공사채와 BTL 모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금융비용이 낮은 자금 조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평가(II)」, 2009).
  - 철도건설예산이 부족하다면, 각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함.
  - 시급한 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연간 약 2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과도한 공사채 발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공사채 발행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BTL방식에 의한 일반철도 건설자금 조달은 투자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임(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평가(II)」, 2009).
- 재정이 부족하여 필요한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SOC 자금 조달만을 위한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예산준추 제15호, 2009).
  -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보다 자금조달 주체의 신용등급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임.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교통정책실 | 철도정책관 | 간선철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4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따른 하류지역 수해 대책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홍수 등에 대비한 댐의 안전을 위하여 기존댐의 치수능력 증대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
- 사업근거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규정에 의거 전액 국고지원
  - －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03.4,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세부개선과제로 “댐 및 저수지의 안정성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등을 선정하여 추진

#### ○ 사업예산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2006년까지 | 2007   | 2008   | 2009    |
|----------|-----------|---------|--------|--------|---------|
| 치수능력증대사업 | 1,295,827 | 228,520 | 99,950 | 89,176 | 124,638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토해양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 위탁시행)
- 개별댐의 「정밀안전진단<sup>1)</sup>」 과정에서 수문학적 안정성이 미흡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6개댐(소양강, 수어, 영천, 광동, 달방, 섬진강)은 '01년부터 개별 사업별로 조사·설계를 착수하였고, 나머지 20개 댐은 범 정부적 수해방지대책 수립에 따라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대방안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사업 착수

1)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준공 10년 경과후 5년에 1회 시행.

## □ 추진경위

- '98 ~ '02 : 소양강 · 수어 · 영천 · 섬진강 · 광동 · 달방댐 정밀안전진단 시행
- '01. 7. 4 : 가능최대강수량(PMP) 재산정
- '03. 4. 4 : 감사원의 자연재해대비 실태감사 결과
- '03. 4. 8 : 범 정부적 수해방지대책 수립((구)국무조정실)
- '03. 4. 22 : 국무회의 보고((구)건교부)
- '03. 6. 24 : 대통령 지시사항 점검회의 개최((구)국무조정실)
- '03. 4. 24 ~ '04. 9. 23 : 댐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기본조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추진 방향 개선

- 소양강댐의 최대방류량에 도달한 홍수는 1984년, 1990년에 발생하였음.
- 1984년도 홍수시 초기 저수위가 EL.183.30m이었으므로, 최대저수위를 계획홍수위 EL.198m이하인 EL.197.79m에서 조절할 수 있었음.
  - 1984년 홍수시, 소양강댐 저수위를 홍수시 제한수위 EL.190.3m로 유지하였다면, 계획홍수위 EL.198m를 넘어서거나 방류량을 증가시켜 하류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임.
- 1990년도 홍수시 초기 저수위가 EL.191.6m이었으므로, 강우량은 1984년의 50% 미만이었지만, 최대저수위가 계획홍수위 EL.198m까지 도달하였음.
  - 1990년 홍수 시, 저수위를 홍수시 제한수위 EL.190.3m를 유지하였다면, 최대 방류량까지 방류량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었음.
- 치수능력증대사업을 통하여 극한홍수에 대한 댐의 안전성 확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한정된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운영수위로 환원이 필요하나, 홍수시 운영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류지역 홍수 피해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치수능력증대사업은 댐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하류 홍수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 홍수기 제한수위 등 댐운영 개선 필요

-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홍수 등에 대비하는 것은 댐의 안전 뿐 아니라 하류지역의 안전성도 확보하는 것임.
- 소양강댐은 '84년, '90년 발생한 대홍수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시 댐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구적인 치수능력 증대사업 완료시까지 잠정조치로, 지난 '97년 3월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를 EL.190.3m에서 EL.185.5m로 잠정 하향조정 운영중임.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양강댐의 저수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6년 두차례만 잠정운영 제한수위 이상으로 수위가 상승하였음.

소양강댐 잠정 제한수위 초과 현황(2003년~2008년)

(단위: EL,m)

| 구 분   | 최고수위   | 잠정 제한수위 초과 기간  |
|-------|--------|----------------|
| 2003년 | 191.05 | 8.25~11.3(70일) |
| 2006년 | 189.85 | 7.16~8.7(22일)  |

- 홍수기 제한수위를 EL.190.3m로 환원하여 운영할 경우, 가뭄시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물론 수질개선 등 하천환경개선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홍수시 댐 방류량 증가로 하류홍수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홍수기 제한수위 환원시는 집중호우 등이 예보될 경우 사전 예비방류 등을 통해 댐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하류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홍수기 댐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건설수자원정책실 | 수자원정책관 | 수자원개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5 4대강 사업 자원조달 계획 사전 수립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

#### ○ 사업근거

- － 국토해양부 : 하천정비사업, 댐건설사업
-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용저수지 증고, 농어촌개발사업
- － 환경부 : 수질개선사업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 ○ 사업예산

본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
| 국토해양부   | 13.6 | 0.8  | 6.2  | 6.1  | 0.5  |
| 농림수산식품부 | 2.8  | 0.1  | 0.5  | 1.0  | 1.2  |
| 환경부     | 0.5  | －    | 0.25 | 0.25 | －    |
| 합 계     | 16.9 | 0.9  | 6.95 | 7.35 | 1.7  |

#### □ 추진체계

- (본 사업) 물확보 ·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 농림수산식품부 · 환경부가 시행
- (직접연계사업)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재원조달계획 수립 필요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발주방식)을 결정하였음.
-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주방식(공사수행 방식)을 결정하기 이전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볼 때, 대형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8에 따라 동 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 | -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6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집행활성화 방안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 및 주민부담을 덜어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 조기화 기대
- 사업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 사업예산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       |       | 본 예산   | 추경     |
|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 5,000 | 4,000 | 12,000 | 38,8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추진내용
  -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50% 범위로 시, 군, 구별 일정금액 한도로 지원
  - 현재 71개 촉진지구 및 추가 지정 고려 시 약 2조~3조5천억원 규모(연간 2천5백억원 수준)의 국고 지원이 필요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방안 마련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에 따르면, 국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50% 범위로 시, 군, 구별 일정금액 한도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
- 동 사업의 예산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동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09년 6월까지 0%임.
- 정부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우선 공급 방안 마련

-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50% 범위로 시, 군, 구별 일정 금액 한도로 재정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촉진을 위해 설치비용 100%까지 선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기반시설을 선공급하므로써, 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편익을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공영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회수할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회수할 수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정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7 턴키 낙찰자 선정시 가격 경쟁 유도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턴키발주방식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발주청을 대신하여 민간에서 기본 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일괄시행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체의 건설사업 종합관리 능력을 증진시켜 건설산업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발주방식
- 사업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사업예산: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턴키 발주 사업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 2006   | 2007   | 2008   |
|-----|--------|--------|--------|
| 예정가 | 52,390 | 48,154 | 52,262 |
| 낙찰가 | 49,377 | 44,873 | 47,553 |
| 낙찰률 | 94.2%  | 93.2%  | 91.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각 발주청
- 1975년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근거 획득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턴키 낙찰자 선정시 가격 점수 비중 확대

○ 턴키 입찰자간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마련 하여야 하고,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저가입찰과 부실시공이 우려되면 가격경쟁 을 제한하는 것보다 저가심의제도 등 지나친 저가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타당함(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 태」, 2007).

－ 고속도로 보다 건설 난이도가 높은 호남고속철도의 턴키는 가격경쟁 방식인 ‘설 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공사의 턴키 낙찰자 선정을 위한 기술 가중치는 56~57%, 낙찰률은 88.08~99.10%였으나, 2단계 공사의 기술 가중치가 45%로 조정됨에 따라 낙찰률은 60.00~85.99%로 낮아졌음.

－ 서울시는 대형업체간 기술·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찰안내서에 설계점 수 평가시 토목분야 시공능력 16위 이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7 점의 가점을 부여하였음.<sup>1)</sup>

○ 한국도로공사는 일괄·대안입찰공사 낙찰자 선정방식의 기술 가중치를 60~70% 로 높게 책정하여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있음.

### □ 턴키의 가격경쟁 유도 방안 강구

○ 턴키발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채택하면, 최저가 낙찰제 방식과 동일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태」, 2007).

－ 낙찰자 선정방식에는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중치기준방식, 설계점수조정방 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이 있음.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공사 일괄입찰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결정 방법 검토」, 2007.

- 턱기의 문제점은 발주처가 낙찰자 선정방식을 가격경쟁을 피할 수 있는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 턱기발주공사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기준방식’ 도입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 입찰조건을 완화하여 3~5개사 이상이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탈락자의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하고 턱기 입찰도서 작성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중견건설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음.

#### □ 턱기 낙찰자 선정에 대한 발주청 책임 강화

- 턱기 평가위원의 40% 범위내에서 발주청 소속 기술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발주청이 턱기 낙찰자를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턱기 설계 평가를 실시하고, 발주청이 평가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발주청이 턱기 설계 평가를 한다면, 국회, 감사원 및 발주청 상위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턱기 설계 평가 결과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 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이 책임소재가 모호한 ‘위원회’를 통한 턱기 평가를 시행한다면,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
- 추가로 턱기 평가는 시설물을 어떻게 만드는데 대한 기술에 관한 평가가 아니라, 발주청이 원하는 시설물의 품질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함.
  -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는 탈락 여부만을 평가하는 Pass or Fail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건설수자원정책실 | 기술안전정책관 | 기술기준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8 최저가 심사기준 임의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대책 강구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최저가 낙찰제도는 국내 입찰제도의 국제표준화(Global Standard)와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자 도입
- 사업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사업예산 :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최저가 발주 사업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 2006   | 2007    | 2008    |
|-----|--------|---------|---------|
| 예정가 | 85,302 | 189,882 | 180,435 |
| 낙찰가 | 55,431 | 126,969 | 127,642 |
| 낙찰률 | 65.0%  | 66.9%   | 70.7%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각 발주청
-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 1월 1,000억원 이상 PQ<sup>1)</sup> 대상공사에 도입된 후, 지나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회계예규)을 제정하여 운영
  - 2004년에 500억 이상 PQ 대상공사로 확대된 후, 2006년 5월부터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최저가 심사 기준 상향 조정의 신중한 검토

- 한국도로공사가 2008년도에 발주한 공사의 예정가는 3조 871억원이며, 낙찰가는 2조 2,097억원으로 평균 낙찰률은 71.58%임.
-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0.03%이며, 고속국도 제10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69.68%임.
- 그러나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의 낙찰률은 74.30%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낙찰률 상승은 한국도로공사가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의 저가심사 기준을 상향하였기 때문에 발생함.
- 한국도로공사는 최저가 심사를 위한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발주기관 작성금액 반영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적정공종기준을 기존의 공종기준금액의 80%에서 85%로 상향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저가심사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 □ 운찰제로 운영되는 최저가 낙찰제의 시급한 개선 필요

- 입찰사들의 투찰률이 거의 유사함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도 적격심사 낙찰제도와 마찬가지로 운에 의해 낙찰되는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음.
- 최저가 낙찰제도가 운찰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저가심사기준이 부적정하고, 2차 저가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임.
- 한국도로공사는 2차 저가심사에서 1차 심사 1순위 업체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함.
- 2차 저가심사의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 검토가 필요함.
- 지나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건설수자원정책실 | 기술안전정책관 | 기술기준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9 민자유치활성화지원 사업의 사전 대처 방안 모색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급증하는 SOC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하여 지원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 및 사업별 실시협약에 의거
- 사업예산

민자유치활성화지원 예산(고속도로)

(단위: 억원)

|       |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금 지급현황 |        |       |       |       |       |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인천공항  | △953                | △1,009 | △660  | △710  | △763  | △900  |
| 천안-논산 | △404                | △386   | △390  | △404  | △390  | △472  |
| 대구-부산 | -                   | -      | -     | △337  | △331  | △478  |
| 서울외곽  | -                   | -      | -     | 48    | 168   | △66   |
| 합 계   | 1,357               | 1,395  | 1,050 | 1,403 | 1,316 | 1,916 |

자료 : 국토해양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민자사업자
- 지원필요성 : 운영수입보장은 실제통행수입이 추정운영수입의 일정부분에 미달될 경우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급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부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금재조달을 포함하여 운영수입보장금 축소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사전 대처

-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 민자사업 중, 향후 개통예정인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재 실시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발생액을 예측하여 사전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20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운영권 환수조건은 환수시기가 공사기간인지, 운영기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영이전에 운영권 환수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민자사업 인수 방안 검토

- 정부는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국가가 인수할 경우, 일시에 막대한 해지시 지급금의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국가가 민자도로 사업 운영권을 인수 시, 유사한 조건의 공항철도, 경전철 등 다른 민자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매수 요구가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민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향후 민자사업 추진이 곤란해질 수도 있음.
- 민자사업의 틀을 유지할 경우, 높은 타인자본 대출금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부는 민자사업 인수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교통정책실 | 도로정책관 | 광역도시도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10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건설비를 보조하는 사업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 사업예산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민자유치건설보조금 | 880,510 | 1,026,149 | 709,5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민자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체결:서울-춘천(04.3), 서수원-평택(05.1), 거가대교(03.2), 인천대교건설(03.6), 부산-울산(06.5), 평택-시흥(07.7), 인천-김포(07.7), 안양-성남(07.7), 광주-원주(08.5)
- 사업경비
  - 총사업비 : 12조 215억원
  - 건설보조금 : 서울-춘천 등 5개사업 3,638억원
  - 토지매입비 : 평택-시흥 등 6개사업 5,798억원 등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운영수입보장’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 정부는 ‘운영수입보장’ 제도의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에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 자체를 폐지하였으나, 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에 차질이 발생함(국회예산정책처,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 2009).
- 정부는 민자유치를 위해 ‘건설보조금지원’과 ‘운영수입보장’을 통한 재정지원을 하였는데, 2006년에 이루어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는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한 것이므로, 민자고속도로 추진을 어렵게 만듦(국회예산정책처,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 2009).

### □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의 재수립

-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는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므로, 민간투자의 정의(定意)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국회예산정책처,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 2009).
- 재정고속도로 추진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도에 완공된 부산-울산간 민자고속도로의 지분을 51% 갖고 있음.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민자가 아닌 재정고속도로로 건설할 경우, 정부는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아닌 고속도로 건설비로 건설예산을 지원하여, 한국도로공사에게 운영수입을 보장할 필요가 없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교통정책실 | 도로정책관 | 광역도시도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788-4678)

## 11 상수도 관련 사업의 이용률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안정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업용수도, 광역상수도 및 지방광역상수도를 건설하고 광역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근거 : 「수도법」 및 「수도정비기본계획」(2004.6) 등
- 사업예산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소관 상수도 관련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07    | 2008    | 2009    |
|-------|---------------|---------|---------|---------|
| 국토해양부 | • 용수공급 및 개발   | 87,100  | 30,740  | 19,071  |
|       | – 광역상수도건설     | 66,900  | 19,720  | 12,071  |
| 환경부   | • 지방상수도 관련 사업 | 211,304 | 334,579 | 357,976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토해양부(광역상수도 감독), 환경부(지방상수도 감독), 한국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지방상수도 설치 및 운영)
- 광역상수도건설사업 :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및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비 30%를 국고에서 지원
- 지방상수도 관련 사업 :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광역상수도 가동률 및 이용률 제고

- 광역상수도의 경우 가동률(시설용량 대비 일최대 생산량)이 2008년 말 현재 64.3%로 저조하고, 이용률(시설용량 대비 일평균 생산량)의 경우 2008년 말 현재 전년에 비해 오히려 1.7%p 감소한 49.6%에 불과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Ⅱ)」, 2009.7).
- 광역상수도의 저조한 가동률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이용기피와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상수도 개발 및 운영 실태 평가」, 2008.11).

### □ 지역별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노력

- 2008년 현재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가 중복시설 되어 있는 지역은 전국 165개 지자체 중 서울시 등 84개 지자체임.
-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가 중복시설 되어 있는 지자체 중 57개 지자체에서 추정 적정시설용량보다 큰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있음.
- 2008년 현재 광역상수도 시설의 추정과잉시설용량은 전국적으로 약 139만 $\text{m}^3$ /일에 이르고 있으며,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가 중복시설 되어 있는 지자체 중 서울(42만 $\text{m}^3$ /일), 파주(25만 $\text{m}^3$ /일), 당진(18만 $\text{m}^3$ /일), 성남(10만 $\text{m}^3$ /일) 등 4개 지역의 경우 시설투자 과잉이 타지역에 비해 심하게 나타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Ⅱ)」, 2009.7).

주요 광역상수도 시설 과잉투자 현황

(단위: m<sup>3</sup>/일, %)

| 지역  | 시설용량       | 실제시설용량<br>(A) | 일평균생산량    | 이용률  | 추정적정<br>시설용량(B) | 과잉시설<br>용량(A-B) |
|-----|------------|---------------|-----------|------|-----------------|-----------------|
| 전 국 | 17,199,900 | 12,899,925    | 8,529,500 | 49.6 | 11,514,825      | 1,385,100       |
| 서울시 | 970,000    | 727,500       | 226,961   | 23.4 | 306,397         | 421,103         |
| 파주시 | 449,500    | 337,125       | 63,445    | 14.1 | 85,651          | 251,474         |
| 당진군 | 324,300    | 243,225       | 43,383    | 13.4 | 58,567          | 184,658         |
| 성남시 | 305,000    | 228,750       | 94,241    | 30.9 | 127,226         | 101,524         |
| 청원군 | 179,500    | 134,625       | 35,302    | 19.7 | 47,658          | 86,967          |
| 평택시 | 314,000    | 235,500       | 112,574   | 35.9 | 151,974         | 83,526          |
| 군산시 | 382,500    | 286,875       | 159,017   | 41.6 | 214,673         | 72,202          |
| 청주시 | 342,000    | 256,500       | 142,970   | 41.8 | 193,010         | 63,490          |

주: 1. 실제시설용량=시설용량-시설용량×25%

2.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2004)에 따르면 상수도 정수장 시설의 예비능력을 계획정수량의 25%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시설용량은 이를 제외한 수치임.

3. 추정 적정시설용량은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사용한 일평균생산량에 인구규모별 침투부하율 1.2~1.35 중 최대치인 1.35를 곱하여 산출함.

4.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가 함께 시설되어 있는 지역 중 일부 과잉시설용량이 큰 지자체의 자료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Ⅱ)」, 2009.7.

## □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조 모색

- 제도개선을 통한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관할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수도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기능의 실질화가 요구됨.
- 광역상수도 시설의 과잉투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개발계획에 의한 신규용수수요처에 적극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된 지방상수도의 시설 대체 및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공급 등 보다 적극적인 새로운 수요처 발굴이 필요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Ⅱ)」, 2009.7).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건설수자원실 | 수자원정책관 | 수자원개발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보 한정수 (788-4632)

## 12 합리적인 하이패스 요금 미납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고속국도 요금소에서 수작업에 의해 통행료를 징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를 해소
- 사업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 사업예산

하이패스 차단기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     | 2007  | 2008  | 2009 |
|------------|-------|-------|-------|------|
| • 하이패스 차단기 | 4,815 | 2,722 | 1,400 | 693  |
| – 시설비      | 4,195 | 2,697 | 1,127 | 371  |
| – 운영비      | 620   | 25    | 273   | 322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도로공사
- 향후 추진계획
  - 2009년 상반기 중 하이패스차로 속도제한(30km/h) 고시를 위한 경찰청과의 지속적 협의 추진
  - 하이패스차로 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시인성 향상(2009년 하반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하이패스 요금 미납 원인별 대책 수립

- 하이패스 요금 미납원인은 단말기 미부착 및 잔액부족 등이며, 잔액부족 및 기타로 분류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기타로 분류된 미납유형은 2007년 23%, 2008년 40%, 2009년 46%로 증가함.
  - 기타 분류사항은 단말기 기본정보이상, 단말기 입구정보 이상, 전자카드 오류 등 30여가지의 원인이 있으며, 하이패스 이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 하이패스 차단기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차단기 설치 후에도 요금 미납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국회 예산정책처, 「하이패스 사업평가」, 2008).
  - 하이패스 차단기 설치 이후, 미납발생률 및 미징수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징수건수는 2007년 18만건, 2008년 21만건, 2009년 48만건으로 증가함.

### □ 하이패스 차단기 운영 재검토

-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단기 설치 주목적이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 감속 유도에 따른 치명적 대형사고의 예방이므로, 경고등, 과속방지턱 등 운영으로 대체가 곤란하며,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차단기는 운영하고 있다고 밝힘.
- 하이패스 차단기가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 감속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요금미징수에 대해 차단기가 작동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하이패스 요금소의 치명적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은 요금미납에 따른 차단기 작동에 있었음.
- 하이패스는 속도 160km/hr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장치로서 외국에서도 차단기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차단기 설치 이후 하이패스 통과속도를 30km/h까지 낮추고 있음.
  - 하이패스 시스템은 미국 Express E-Zpass와 같은 성능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

으며, Express E-Zpass는 본선에서 45~60마일(70~100km/h)의 속도로 통과하는 Multi-lane 요금처리시스템임.

- 따라서 고속도로 본선에 요금소가 설치된 개방식 요금소의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차단기를 제거하고, 주행속도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차단기는 요금소 통과속도를 늦추고,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차단기를 경고등 운영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하이패스 사업평가」, 2008).

#### □ 하이패스 차단기 설치에 따른 비효율성 저감 모색

-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차로수는 부족해 하이패스 차량의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아시아경제, 2009.7.16).
- 하이패스 차단기는 하이패스 통과속도를 30km/h로 낮추므로, 배기가스 및 통행시간을 증가시키고, 요금소 처리용량을 시간당 1,800대에서 1,200대로 감소시킴.
  - 차단기가 없는 하이패스 차량은 시간당 1,800대를 처리하지만, 차단기가 있는 하이패스 차량은 시간당 1,200대를 처리함(한국도로공사).
- 하이패스 차단기 설치에 따라, 하이패스 차로를 최대 50%까지 추가 설치해야 하므로, 차단기 설치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교통정책실 | 도로정책관 | 도로운영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13 국민주택기금 수혜계층 선정방식 개선 강구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도심인근에 소득·선호도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09~'18)를 공공이 직접 신속·공급
- 사업근거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사업예산

보금자리주택관련 국민주택기금 예산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    | '07    | '08    | '09    |
|-----------------|----|--------|--------|--------|
| 계               |    | 44,980 | 42,321 | 58,445 |
| 공공분양            |    | —      | —      | 14,400 |
| 공공임대(10년, 장기전세) |    | —      | —      | 11,000 |
| 영구임대출자          |    | —      | —      | 708    |
| 국민임대            | 출자 | 10,658 | 11,887 | 10,550 |
|                 | 융자 | 34,322 | 30,434 | 21,787 |

#### ○ 사업현황

| 유 형  |                  | 호 수 | 프로그램 내용                                                                                                                 |
|------|------------------|-----|-------------------------------------------------------------------------------------------------------------------------|
| 분양주택 |                  | 70만 |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국민주택규모이하)                                                                                                   |
| 임대주택 | 공공임대<br>(10년임대)  | 20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분납형 임대주택)</li> <li>* 초기에 소액으로 지분취득후 단계적 상향</li> </ul>          |
|      | 장기전세<br>(10~20년) | 10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도심위주로 공급)</li> </ul>                        |
|      | 장기임대<br>(30년이상)  | 50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li> <li>•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 지원(시중가의 30%)</li> </ul>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 수혜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지원조건 : 정부재정에서 규모별 사업비의 10~40% 지원
- 지원형태 : 대한주택공사 출자, 지자체 보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기금 지원 범위 파악 필요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임대주택 외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주택도 포함되어 건설된 주택임.
- 보금자리주택 지원대상이 소득 5분위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가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보금자리 주택 체계내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1분위,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4분위 이하, 공공임대(분납형, 전세형)은 소득 3~5분위, 중소형 분양주택은 소득 5분위 이하로 주택유형별 기금 지원 범위 및 확대방안 재검토 필요
- 2009~2018년간 추진예정인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의 실효성 및 지원의 효과성 제고 필요
- 보금자리주택(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공공임대주택 80만호)에 대한 지역별·연도별 주택필요량 및 유효수요 등 산출 필요

### □ 기금수혜계층 선정 방식 개선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저소득층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장성수, 국민주택기금, 국회도서관 입법지식 DB, 2008).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대체로 40%, 분양주택의 경우는 60% 정도가 부적격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부적격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소득추정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주택을 국민주택지원의 기본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음.

○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정책대상자와 수혜자간의 불일치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장성수, 국민주택기금, 국회도서관 입법지식 DB, 2008).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토해양부 | 주택토지실 | 공공주택건설추진단 | 기획총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태훈 (788-4678)



## IV 지식경제위원회

### 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추진체계 합리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광역 단위의 사업 추진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지역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선도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
- 사업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사업예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9    |
|-----------------------|---------|
|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 201,669 |
|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R&D)  | 141,168 |
|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비R&D) | 60,501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지원단”이 총괄주관기관이 되어 프로젝트를 기획·선정하고, 세부주관기관을 평가·관리하며, 사업비 집행, 회계정산 및 사업비 조정을 수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선도산업 지원단의 유사 기관과의 중복 우려

- 현재 사업추진체계는 신설되는 “선도산업 지원단”이 사업비 조정 권한을 가지는 등 사업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선도산업 지원단”은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 사업을 위하여 한시적인 재단법인으로 설치되는데, 각 권역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테크노파크(TP) 등 유사 조직과의 중복이 우려됨.

### □ 집행가능성 검증

-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이 2009년 5월에 확정되었으며,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지원단이 7월말부터 8월말 사이의 기간에 출범할 계획임.
- 광역경제권별로 세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 2,000억원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움.
- 광역경제권별로 세부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관련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성과 창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산업경제실 | 지역경제정책관 | 지역경제총괄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전용수(788-4628)

## 2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이용효율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기술개발 및 국내 실증을 거친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범보급과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지원하여 설비시장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
-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사업예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신재생에너지일반보급보조사업 | 27,960 | 41,000 | 86,052 |
| •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 56,340 | 56,340 | 56,34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재생에너지일반보급보조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된 일반보급설비나 시범보급설비의 설치비의 30~80%를 보조
-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일투자지당 70억원 이내에서 90%이내의 비중으로 지원
- 융자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조건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효율 제고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설용량은 지속증가 하였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설비는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함. 하지만 태양열과 태양광 설비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량( $m^3$ ) 및 발전량(kW)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이용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가 보급실적만 집중할 뿐 실질적인 이용효율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효율 제고가 필요함.

|      | 태양열( $m^3$ ) |           |       | 태양광(kW) |        |      | 풍력(kW)  |         |      |
|------|--------------|-----------|-------|---------|--------|------|---------|---------|------|
|      | 생산량          | 누적용량      | 효율    | 발전량     | 누적용량   | 효율   | 발전량     | 누적용량    | 효율   |
| 1998 | 43,957       | 1,045,703 | 0.042 | 3,796   | 3,402  | 1.12 | 1,475   | 1,501   | 0.98 |
| 1999 | 42,105       | 1,077,880 | 0.039 | 4,572   | 3,920  | 1.17 | 5,839   | 4,396   | 1.33 |
| 2000 | 41,689       | 1,121,637 | 0.037 | 5,284   | 4,451  | 1.19 | 16,685  | 5,897   | 2.83 |
| 2001 | 37,174       | 1,132,680 | 0.033 | 6,184   | 5,243  | 1.18 | 12,590  | 7,933   | 1.59 |
| 2002 | 34,777       | 1,143,895 | 0.030 | 7,044   | 5,718  | 1.23 | 14,881  | 12,690  | 1.17 |
| 2003 | 32,914       | 1,159,030 | 0.028 | 7,752   | 6,281  | 1.23 | 24,865  | 18,159  | 1.37 |
| 2004 | 36,143       | 1,174,064 | 0.031 | 9,872   | 8,534  | 1.16 | 47,442  | 68,062  | 0.70 |
| 2005 | 34,729       | 1,202,374 | 0.029 | 14,399  | 13,524 | 1.06 | 129,888 | 98,726  | 1.32 |
| 2006 | 33,018       | 1,226,688 | 0.027 | 31,022  | 35,846 | 0.87 | 238,911 | 177,667 | 1.34 |
| 2007 | 29,375       | 1,241,213 | 0.024 | 71,279  | 81,193 | 0.88 | 375,641 | 196,087 | 1.92 |

자료: 신재생에너지통계(200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지표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량’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입지표에 해당함. 신재생에너지보급의 궁극적인 목표가 설비보급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의 제시가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에너지자원실 |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 신재생에너지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허가형(788-4679)

### 3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성과개선 필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
- 사업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사업예산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 263,630 | 278,000 | 318,737 |
| – 부품·소재 기술개발    | 184,130 | 179,400 | 189,337 |
| –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 27,000  | 47,000  | 67,000  |
| – 부품·소재 기반구축    | 45,000  | 42,100  | 45,400  |
| – 부품·소재 국제협력    | 5,000   | 6,000   | 12,000  |
| – 부품·소재 사업화 지원  | 2,500   | 3,500   | 5,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식경제부(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위탁)
-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 단독 또는 공동주관, 전문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부품·소재 고부가가치화 전략기술 지원
-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 50대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과제 및 소재정보은행구축 사업
- 부품·소재 기반구축 :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및 산업체 확산, 통계분석 강화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기반 강화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의 성과 달성도 제고

- 동 사업의 성과지표 중 국내외 특허출원/등록건수는 '08년 계획 1,400개 대비 879개로 62.8%의 달성도를 보임. '08년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국내 0.8 및 국외 1.0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측정한 것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실적은 총 1,060건으로 75.7%의 달성도를 보임.
- 동 사업은 '07년에 동일 지표에 대해 1,100개의 목표 대비 1,146개의 실적을 올려 104.2%의 달성도를 보인 바 있기에 '08년도 성과달성도는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08년도 성과지표 및 실적

| 사업                | '08년 성과         |       |      |      |
|-------------------|-----------------|-------|------|------|
|                   | 성과지표            | 계획    | 실적   | 달성도  |
| 부품소재산업<br>경쟁력향상사업 | 수출액중 부품소재 비중(%) | 46.5  | 43.5 | 93.5 |
|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건수  | 1,400 | 879  | 62.8 |
|                   | 사업화/제품화 건수      | 240   | 213  | 88.8 |

- 향후 예산 증가가 동 사업의 성과목표 및 실적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성과실적의 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성장동력실 | 주력사업정책관 | 부품소재총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4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부하를 평준화시킴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전원설비의 효율성을 제고
- 사업근거 :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용규정」
- 사업예산

전력수요관리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전력수요관리사업 | 137,564 | 149,003 | 128,980 |
| • 전력부하관리 | 79,000  | 69,169  | 72,500  |
| • 전력효율향상 | 54,946  | 76,452  | 53,980  |
| • 수요관리홍보 | 3,015   | 2,779   | 2,000   |
| • 수요관리평가 | 603     | 603     | 5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식경제부(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전력수요관리설비 및 전기대체냉방시설 지원을 통한 수요전력 피크저감 및 에너지절약형전기사용설비 지원을 통한 전력사용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며 전력수급안정을 도모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약 1,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가 관리되지 않았고 20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음.
-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나 방향성에 대한 관리를 위함이며,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9%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정량적인 성과목표의 설정·관리가 필요함. 성과지표로는 ‘최대수요전력억제량’이나 ‘전력소비절감량’을 이용할 수 있음.

### □ 전력부하관리사업의 계속지원여부 검토

- 전력수요관리사업 중 전력효율향상사업과 수요관리홍보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있으나 전력부하관리는 궁극적으로 피크부하를 조정하여 대규모 설비투자를 회피할 수 있어 공익적 성격뿐 아니라 한전의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화와 연계됨.
- 한국가스공사와의 형평성,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조성 사정, 동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계속 지원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하관리사업은 전력수요부하의 조정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시설투자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한국가스공사가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수요관리 사업과 비교됨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결산분석).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에너지자원실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전력산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허가형(788-4679)

## 5 발전용 무연탄 공급축소 검토필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하는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국내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국내산 무연탄의 소비촉진과 석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연탄발전지원사업과 열제약발전으로 인해 전력시장에 보전받지 못한 수도권 열병합발전사업자의 변동비 손실을 보전하는 열병합발전지원사업으로 구성됨.
- 사업근거 : 「전기사업법」
- 사업예산

타에너지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타에너지지원사업  | 246,416 | 177,368 | 147,796 |
| • 무연탄발전지원 | 188,404 | 143,826 | 117,796 |
| • 열병합발전지원 | 58,012  | 33,542  | 30,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식경제부(전력거래소)
- 무연탄발전지원사업 : 국내 무연탄을 이용하여 발전·공급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거래가격 및 국내 무연탄 사용량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한 손실금액 지원
- 열병합발전지원사업 :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하여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보전받지 못한 변동비를 지원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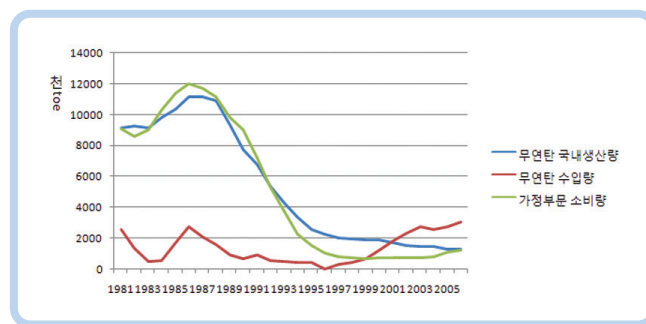
### □ 발전용 무연탄 공급축소 필요

- 국내 비축용 무연탄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발전용 무연탄 공급을 줄여야함 (20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국내 비축용 무연탄 재고의 감소는 지난 몇 년간의 높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내수용 무연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단기적으로 발전용 무연탄 수요를 조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감안할 때 연탄용 무연탄 수요도 감소시켜야함.

### □ 해외 무연탄 수입시 관세 도입 고려

- 유류에 대한 중과세 정책과 달리 무연탄은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량이 확대될 계획이므로(2008 국정감사 시정결과 보고서) 무연탄에 대한 관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무연탄 수입액이 4억4,750만\$였으므로 3% 관세를 적용한다면 1,342만\$(약14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에 해당함<sup>1)</sup>.

무연탄 생산량과 수입량 비교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에너지지원실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전력산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허가형(788-4679)

1) 국회예산정책처, 「난방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사업평가」, 2009.

## 6

## 산업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융합기술 투자방향 명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산업융합기술 분야의 핵심 · 원천기술개발 집중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
- 사업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 사업예산

산업융합기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산업융합기술개발사업       | —    | 87,532 | 99,256 |
| — 계속과제 사업비         | —    | 59,624 | 71,234 |
| — 신규과제 및 기획, 평가관리비 | —    | 27,908 | 28,022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동 사업은 (구)산업자원부의 차세대융합전략기술개발사업 일부, (구)정보통신부의 IT원천 및 IT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일부가 통폐합된 사업으로 계속과제의 안정적인 지원 및 신성장동력, 국가플랫폼 등 신규과제 지원 방식으로 추진
- 신규과제는 산업간 · 서비스간 융합을 유발하여 경제 ·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융합기술 기반 과제 중심으로 추진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융합기술에 부합하는 과제 중심으로 사업 추진 필요

- 동 사업은 산업융합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내용은 (구)정보통신부, (구)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던 기존 계속과제 712.4억원과 신규과제 280억원으로 사업으로 구성됨.
- 전체 사업 중 기존 계속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산업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융합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 후 사업 추진 필요

- 산업융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동 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검토(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별 사업설명회, '08.7.27)에서는 융합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른 사업과의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향후 산업융합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설정하여 융합기술 관련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기존 사업 중 융합기술과 무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산업융합기술개발 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산업경제실 | 산업기술정책관 | 산업기술개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7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 및 연계지역의 도로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 및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
- 사업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사업예산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사업 예산 및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8    |        | 2009예산액 |
|-------------------|---------|--------|---------|
|                   | 예산액     | 실집행액   |         |
|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사업    | 120,677 | 65,540 | 203,643 |
| •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 8,150   | —      | 2,000   |
| • 소사-녹산간 도로       | 13,000  | 3,165  | 25,285  |
| • 송도 해안도로 확장      | 32,600  | 17,824 | 25,723  |
| • 석동-소사간 도로       | 100     | —      | 3,000   |
| • 영종 예단포-운남동간 도로  | 2,562   | 2,562  | —       |
| • 영종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 | 6,000   | 1,510  | 6,000   |
| • 의곡-부산과학산단간 도로   | 8,000   | 6,796  | 17,000  |
| • 기타 기반시설 지원      | 47,265  | 33,683 | 106,635 |
| • 송도 5·7공구 진입도로   | 3,000   | —      | 28,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지자체와 50:50의 비율로 지원되며 총 1조 1,688억원의 규모로 2004년부터 도로 사업 20건과 공동구 사업 1건을 시행함.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경제자유구역 지원 증가로 인한 향후 성과평가 필요성 증가

-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2009.7.28)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설비용의 10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이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비의 차별지원이 있는 경우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과평가와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산업·연구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의 공급비용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입지시설에 대한 타당한 검토가 필요함.

### □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

-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06년도 42.2%, 2007년도 49.6%, 2008년도 72.3%로 부진함. 낮은 집행행률은 환경영향평가 지연, 보상협의 지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에 기일 소요, 환경분쟁, 문화재 발굴 등으로 세부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임(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결산분석).
- 세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은 기반시설지원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타 사업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반시설사업의 사업기간 계획시 사업추진지연 가능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부처    | 실·국·단     | 과     |
|-------|-----------|-------|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지원총괄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허가형(788-4679)

## 8 전원개발용자사업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발전사업자에게 장기 저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여 전원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전원개발촉진 및 전력공급능력 확보를 통한 전력수급안정도모
- 사업근거 : 「전기사업법」
- 사업예산

전원개발용자사업의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전원개발용자사업 | 91,350 | 63,666 | 10,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식경제부(한국전력거래소)
- 전원개발용자사업은 전력공급능력확보를 통한 전력수급안정과 전원개발 활성화를 통한 발전설비 확충을 위하여 발전사업에게 국고채 3년유통물 평균수익률, 1.25%p의 금리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용자해주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
- 대상사업 : 정책적(부존자원을 이용한 전원설비나 분산형 전원) 전원설비건설 및 제주 등 특수지역 전원개발, 공급력 확보관련 사업, 기타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발·송·배전 등 전력관련 사업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용자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 전원개발지원용자사업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전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실제 용자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500억원/8.4%)이나 기존화력발전(2,977억원/50.1%)에 집중되었음.
- 지원대상기업도 한수원을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들이 대부분의 용자 지원을 받았음. 2002년 이후 총 용자금액 5,944억원 중 민간발전사업자가 지원받은 금액은 1,000억원으로 17%임.

전원개발용자사업의 지원내역

(단위: 억원)

|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대상 | 한수원  | 남부발전<br>동서발전 | 남부발전<br>동서발전<br>서부발전 | 남동발전<br>남부발전<br>LG에너지 | 서부발전<br>남부발전 | 포스코파워<br>남부발전 | 남부발전<br>중부발전<br>서부발전 |
| 금액 | 500  | 679          | 700                  | 1,500                 | 1015         | 913           | 637                  |

- 전원개발 및 전원설비건설은 발전사업자의 기업활동에 속하는 영역으로 발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며 기금의 지원은 사업목적에 맞도록 분산형 전원이나 특수지역 전원공급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 □ 성과관리에 의한 사업추진

- 지식경제부는 동사업이 용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과 같은 타용자사업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해 사업관리를 함을 감안할 때 타당치 않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전력산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허가형(788-4679)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지역내 주요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이와 연계된 인근 산업집적지와 산학 연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 사업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사업예산

농공단지와 관련된 예산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지식경제부)               | -      | 5,600  | 5,600  |
|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중진공) <sup>1)</sup> | 50,000 | 23,000 | 20,000 |

주1) 2008년까지의 재원은 공적자금관리기금이었고 2009년부터는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신성장기반 지원(중소기업청)의 세부사업에 포함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식경제부(산업단지공단)
- 농공단지클러스터조성사업은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R&D)의 세부사업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R&D 역량강화 등 클러스터화 사업으로 산업단지공단(클러스터 추진단)에서 위탁수행
- 중진공의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은 단지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농공단지 지원업무의 일원화 필요

- 농공단지는 전국에 약 360개가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84년 이후 농공단지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었으나, 산업단지공단이 '08년부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체계가 이원화됨(20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농공단지지원과 관련하여 농림부는 입지조성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sup>1)</sup>을 융자지원함.<sup>2)</sup> 지식경제부는 농공단지운영지침을 총괄하며 산업단지공단은 지식경제부의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을 위탁수행함.
-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은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이긴 하나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sup>3)</sup>이며 농촌지역경제와 연계된 소규모 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특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산업경제실 | 지역경제정책관 | 지역산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허가형(788-4679)

1)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공단지 신규입주기업의 공장건축, 증축, 공장인수 및 기계설치자금, 직원용 기숙사, 연구소, 원부자재 구입비용등을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0.33%p로 자금지원함.

2) 농공단지지원과 관련하여 증진공은 자금지원의 공동단지입주기업 종합진단, 농공단지 발전전략 포럼, 전국 지자체 농공단지 담당관 교육, 농공단지 혁신대회 등을 수행함.

3) 「농공단지현황」2006에 따르면 중기업(15%)과 소기업(84%)가 전체의 99%를 차지하며,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 자금, 판로부족, 편의시설부족이라고 답변함.

## 10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의 정부지원 타당성 재검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의 Total Design 서비스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사업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및 제11조
- 사업예산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 21,500 | 27,000 | 26,995 |
| – 디자인기술개발    | 13,500 | 18,500 | 15,400 |
| – 디자인기반구축    | 8,000  | 8,500  | 11,595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식경제부(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위탁)
-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 공공영역의 디자인개발, 글로벌경쟁력 육성을 위한 디자인·브랜드 개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디자인 관련 기초·응용분야인 공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 등
- 디자인기반구축사업 : 지역디자인 인프라 확충,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디자인 수출 지원, 패키징 엔지니어링 디자인 인프라 구축 등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민간사업과 차별화된 영역에 투자 필요

-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은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 지원을 위해 '94년부터 '08년까지 총 2,347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2008.9)에서는 정부 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상기 평가에서는 동 사업이 이미 기업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과 정부 공공영역을 구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됨(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 향후 사업화 부문은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디자인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요구됨.

### □ 국가 R&D 사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 개선 필요

- 특정 제품의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포장 디자인 등 사업의 내용이 특정 제품에 대한 일회성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R&D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은 국가 R&D 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R&D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성장동력실 | 신산업정책관 | 디자인브랜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11 중소기업수출지원업무 일원화에 대한 보완방안 검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업은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 및 해외전문인력유치 지원 등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사업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 사업예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업의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273 | 1,328 | 1,912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시장 마케팅과 해외무역정보 제공 등 무역 인프라 지원을 통한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진출지원 및 산업협력,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전문인력 유치, 교육연수, 정보조사 활동을 수행함.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KOTRA와 중진공의 해외마케팅업무 일원화 보완방안 필요

- 정부는 2008년 정부업무일원화에 따라 중진공의 해외사무소 4곳과 수출인큐베이터 17곳을 KOTRA로 통합하고 KOTRA의 국내무역관은 폐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업무를 국내에서의 수출지원은 중진공으로 해외는 KOTRA로 일원화함  
(2008.6.1)

- 하지만 국내무역관을 폐쇄하고 국내수출지원창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된 것에 대하여 지방의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자체 지원대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2008년 국정감사)
- 지방의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지원전문기관이 아닌 중진공에 문의해야 하지만 국내외 해외수출지원 담당기관이 다름으로 인한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두 기관간 원활한 인적교류가 필수적임.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전략적 해외투자 유치와 지방 전문전시회 육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 성과지표의 개선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KOTRA는 3개의 성과지표 ‘중소기업 수출창출액’과 ‘지원액 대비 중소기업수출창출액’, ‘글로벌화기업수’를 제시하였지만, 앞서 두개의 지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KOTRA의 지원내용이 직접적인 수출창출뿐 아니라 수출지원을 위한 간접적인 시장조사나 조사대행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KOTRA의 서비스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기업수’나 ‘서비스지원횟수’와 같은 결과지표의 제시도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무역투자실 | 무역정책관 | 무역진흥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허가형(788-4679)

## 12 T-50 훈련기 수출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T-50 훈련기의 개발목적 : 향후 첨단 전투기 독자개발기반 구축을 통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 항공기 독자개발단계로의 시발점을 이룩하며, 초음속 항공기 국내 개발로 항공 선진국 대열에 합류 기반을 구축
- 개발비 : 2조 8백억원
- 개발경과
  - － 1997년 10월 개발착수
  - － 2001년 10월 시제기를 출고하고 “검독수리, Golden Eagle”이라 명명
  - － 2002년 8월에 초도비행에 성공
  - － 2003년 2월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
  - － 2005년 8월 양산 1호기 출고 이후 현재까지 10호기가 인도 완료
  - － 2006년 제224차 합동참모회의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교체 기종으로 T-50항공기가 선정
- 수출전망
  - － 국제 훈련기 시장전문기관인 미국 Teal그룹 조사결과 2005~2030년까지의 시장전망은 약 3,300대로 경쟁기종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T-50은 약 1,000대, 금액으로는 250억~300억불의 수출전망이 있는 것으로 조사

#### □ 추진체계

- 개발담당기관 :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조달본부, 한국항공우주산업, 미국 록히드-마틴사
- 양산담당기관 : 한국우주항공산업
- 수출담당부처 : 지식경제부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수출추진시 치밀한 계획과 대처 필요

- T-50의 수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UAE(아랍에미리트연방)가 T-50의 도입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및 업체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렸지만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음.
  - UAE에 대한 수출실패로 최대 1조 5천억원의 수출기회를 놓친 것으로 파악됨 (대당가격 250억원 최대 60대까지 주문예상).
- 경쟁국인 이탈리아의 경우 훈련기 수주를 위해서 UAE의 F1(Formula 1 자동차 경기)경기장건설의 지원과 군사기지운영 등 UAE의 실정에 맞춘 산업·경제·군사적인 협력방안을 내놓았음.
- 최초 개발시 전세계 공군의 중고등 훈련기 시장의 석권이라는 야심 찬 목표로 2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어 진행된 사업인 만큼 정부부처와 개발·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상호협력하여 향후 예정된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협상 시에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수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식경제부 | 성장동력실 | 주력산업정책관 | 기계항공시스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1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과제규모 적절성 모색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사업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 사업예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199,500 | 236,100 | 262,000 |
| – 실용(일반)과제 지원   | 90,590  | 70,339  | 65,000  |
| – 선도(전략)과제 지원   | 105,101 | 161,566 | 197,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청
- 실용과제와 선도과제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총사업비의 75%이내, 3년 이내, 7.5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개발을 출연방식으로 지원
- 실용과제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로서, 일반 중소기업의 R&D 입문 유도
- 선도과제 지원사업 : 기술개발 역량이 검증된 Inno-Biz기업,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 체질을 강화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기술능력이 입증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사업 추진

-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된 이후, 중소기업청의 R&D 사업에서는 기술능력이 입증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강화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대표적인 R&D 사업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대해 기술능력이 입증된 중소기업과 R&D 입문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각각 75%와 25%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강구

-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입증된 소수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R&D 입문 단계에 있거나, R&D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향후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존 사업 중 실용(일반)과제와 같은 R&D 입문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성과지표 및 사업추진체계를 갖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됨.

### □ 중소기업 대상 기술혁신 지원과제 규모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과제당 규모를 매년 증대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과제 규모를 높여 실질적인 기술혁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04년 1,305억원에서 '09년 2,62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과제수는 '04년 1,883개 과제에서 '09년 1,700개 과제로 줄어 과제당 연구비가 증가함.

- '04년부터 '08년 기간 중 과제당 연구비(출연금) 한도와 실제 연구비(출연금) 투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략과제의 연구비 한도가 '04년 1억원에서 '08년 3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실제 지급된 연구비는 '04년 576개 과제의 평균 8천만원 수준에서 '08년 726개 과제의 평균 1억 4천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과제당 연구비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과제규모 설정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나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제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은 향후 예산 집행률,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달성도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향후 중소기업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과제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제당 지원규모를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관련 기술혁신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과제규모 설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과     |
|-------|-------|-------|
| 중소기업청 | 기술혁신국 | 기술개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1 시군유통회사 설립 · 운영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시군에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농수산물 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 사업근거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 사업예산

시군유통회사 설립 · 운영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시군유통회사 설립 운영지원 | -    | -    | 3,96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절차 : ①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②사업공고(농수산물유통공사) → ③신청서 접수(농식품부) → ④선정평가 및 대상자추천(농수산물유통공사) → ⑤사업대상자 확정(농식품부) → ⑥사업추진현황 확인(농식품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⑦자금배정(농식품부)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기존 유통조직과의 기능 중복 해소 방안 마련

- 산지유통센터,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기존의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의 목표 및 추진 방식의 유사성 및 기능 중복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기존의 산지유통조직을 내실화 하고, 기타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산물유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 점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산지유통조직 현황

| 구분       | 산지유통일반조직                                                                                                                                       | 산지유통전문조직                                                                                                                                   | 공동마케팅조직                                                                                                                       |
|----------|------------------------------------------------------------------------------------------------------------------------------------------------|--------------------------------------------------------------------------------------------------------------------------------------------|-------------------------------------------------------------------------------------------------------------------------------|
| 기본<br>요건 | 매출액 10억원 이상                                                                                                                                    | 매출액 3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 지원<br>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금 : 30억원 이내</li> <li>- 지원조건 : 1년 3%</li> <li>- 자금용도 :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 보수 자금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금 : 70억원 이내(상 위 10%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 지원)</li> <li>- 지원조건 : 3년 1~3%</li> <li>- 자금용도 : 좌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금 : 150억원 이내(무 이자 인센티브자금)</li> <li>- 지원조건 : 3년 1%</li> <li>- 자금용도 : 좌동</li> </ul> |

- 시군유통회사와 같이 유통조직의 사업범위를 시군단위가 아닌 광역화된 품목별 조직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규모화 개념이나 농산물의 수출촉진 등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음(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시군유통회사 설립은 중복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농협 등 기존조직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2008).

### □ 사업선정 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 선행

- 지자체장이 재임기간 중의 실적으로 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군유통회사가 사업정보다는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공약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됨(농민신문, 2008. 10. 15).

## □ 농업 CEO의 전문성 제고

- 전문가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임(농림수산물위원회 유통개선 간담회, 2008).

## □ 농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합리적 책임 분담

- 시군유통회사의 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일부를 농민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따라 출하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농수축산신문, 2009. 3. 9).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농민이 최대 25%의 출자금을 내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경영악화로 도산할 경우, 농민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음(농림수산물위원회 유통개선 간담회, 2008).

2009년 시군 유통회사 설립 현황

(단위: 억원)

| 시 군 | 주요품목        | 자본금  |      |      |      |     | 법인설립 | 형 태         |
|-----|-------------|------|------|------|------|-----|------|-------------|
|     |             | 계    | 농업어인 | 농축수협 | 군    | 기타  |      |             |
| 고흥  | 쌀, 한우, 유자   | 34.2 | 8.9  | 13.0 | 10.0 | 2.3 | 3.6  | 농업회사<br>법인  |
| 보은  | 한우, 쌀, 생대추  | 30.0 | 17.2 | 3.5  | 7.5  | 1.8 | 4.15 | 농업회사<br>법인  |
| 의령  | 쌀, 수박, 버섯   | 50.0 | 14.0 | 18.0 | 18.0 | -   | 3.30 | 농업회사<br>법인  |
| 완도  | 전복          | 34.5 | 19.0 | 2.0  | 12.5 | 1.0 | 3.31 | 상법상<br>주식회사 |
| 합천  | 쌀, 딸기, 수박   | 75.0 | 23.3 | 27.6 | 20.0 | 4.1 | 3.31 | 농업회사<br>법인  |
| 화순  | 한우, 쌀, 파프리카 | 30.0 | 18.2 | -    | 11.8 | -   | 4.1  | 농업회사<br>법인  |

자료 : 농림수산물부.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농림수산물부 | 식품산업정책실 | 식품유통정책관 | 유통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2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단지 조성
- 사업근거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제3절(농업인력의 육성), 「농어촌정비법」 제4장(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및 제108조(자금의 지원)
- 사업예산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농어촌 뉴타운 조성 | -    | -    | 2,085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군(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시·군) → 사업대상지 공모 → 사업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수립(시·군) → 시행계획수립(시·군) → 사업시행(시·군) → 준공(시·도)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도시민의 농어촌이주 정책수요 반영 및 실효성 확보

- 농어촌 뉴타운 사업의 경우, 도시 거주 30~40대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수요를 보면, 은퇴 후 여가생활을 보내기 위해 이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도시 거주 젊은 세대를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산업

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려는 사업계획이 농어촌 이주의향이 있는 도시민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국회에 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도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농촌 정주수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은퇴 후 여가 생활 등을 이유로 농촌에 이주하려는 의향은 있으나, 복지·교육 등 농촌생활환경이 열악하여 농촌 이주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남(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 － 농촌 이주 사유: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34.1%), ‘농촌이 살기에 더 좋기 때문에’(29.8),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12.9%)
  - － 농촌생활시 불편한 사항: ‘의료시설 부족’(34.5%), ‘교육환경 부족’(24.3%)
  - － 농촌 이주 후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안 할 것’(30.8%), ‘농사 이외의 자영업’(24%), ‘전문직 종사’(17.6%), ‘농림어업에 종사’(14.6%)
  - － 정부 등의 지원 내용: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농촌 생활여건 개선’(40.9%), ‘정착에 필요한 지원금 제공’(17.3%), ‘일거리 제공’(16.9%)

#### □ 교육, 복지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통한 사업의 지속적인 타당성 확보

-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과 복지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경우 뉴타운 부지를 제공할 정도로 재정여력이 있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일부 지자체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농민신문, 2008. 10. 15).
- 농어촌 뉴타운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등 농촌 주거환경의 종합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 부처      | 실·국   | 과     |
|---------|-------|-------|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정책국 | 지역개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3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지역이 주체가 되어 혁신 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상품화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추구
- 사업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 사업예산

농촌활력증진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농촌활력증진사업  | 300,750            | 347,410             | 328,556            |
| – 신활력지역지원사업 | 188,219            | 188,219             | 188,219            |
| – 향토산업육성사업  | 4,308<br>(1,250)   | 8,960<br>(493)      | 13,076             |
| – 특화품목육성사업  | 108,223<br>(2,522) | 150,231<br>(10,731) | 127,261<br>(7,547) |

\* ( )는 제주계정임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추진절차 :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시·군) → 농촌활력증진계획 심의 및 승인(농식품부) → 사업비 지원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계획 기능 및 집행역량 강화 방안 마련

- 농촌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미비, 잦은 계획변경, 담당공무원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하여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농촌활력증진사업 연도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연도   | 보조사업자   |         |          |         |         |           |
|-------------|------|---------|---------|----------|---------|---------|-----------|
|             |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A) | 지출액 (B) | 이월, 불용액 | 집행률 (B/A) |
| 신활력 지원 사업   | 2005 | 200,000 | -       | 200,000  | 99,092  | 100,584 | 50.0      |
|             | 2006 | 185,250 | 100,584 | 285,834  | 175,529 | 115,055 | 61.4      |
|             | 2007 | 188,219 | 102,343 | 290,562  | 186,400 | 104,162 | 64.2      |
|             | 2008 | 188,219 | 98,137  | 286,356  | 177,616 | 108,740 | 62.0      |
| 향토 산업 육성 사업 | 2005 | -       | -       | -        | -       | -       | -         |
|             | 2006 | -       | -       | -        | -       | -       | -         |
|             | 2007 | 4,058   | -       | 4,058    | 1,877   | 2,181   | 46.3      |
|             | 2008 | 8,960   | 2,150   | 11,110   | 8,641   | 2,469   | 77.8      |
| 특화 품목 육성 사업 | 2005 | 61,210  | 12,535  | 73,746   | 53,680  | 19,928  | 72.8      |
|             | 2006 | 87,890  | 18,600  | 106,090  | 73,816  | 32,636  | 70.0      |
|             | 2007 | 108,473 | 30,715  | 139,188  | 84,688  | 54,499  | 60.8      |
|             | 2008 | 150,231 | 52,626  | 202,857  | 124,726 | 78,129  | 61.5      |

- 이는 동 사업이 3년 단위의 중기 ‘농촌활력증진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실천가능한 집행계획으로서의 내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의 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기인하는바, 사업계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 중장기적으로는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시군농업농촌발전계획(「농업농촌발전기본법」)’이나 ‘농업인의삶의질향상계획(「삶의질향상법」)’, 또는 ‘시군기본계획(「국토

계획법)’이나 ‘시군지역혁신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법」)’ 등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계획과 연계함으로써, ‘농촌활력증진계획’이 해당 농촌지역의 2·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2007. 12).

#### □ 사업평가체계의 개선 모색

- 현행 우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업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고 체계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 □ 소프트웨어 중심의 성과관리 구축

- 농촌활력증진사업은 브랜드이미지, 인적자원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이 보다 중요한 사업인바,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 부처      | 실·국   | 과     |
|---------|-------|-------|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정책국 | 지역개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4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사업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
- 사업예산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 129,417 | 368,900<br>(235,000) | 129,900 |
| •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 129,417 | 368,800<br>(235,000) | 129,800 |
| - 연안어선 감척       | 100,000 | 175,000<br>(75,000)  | -       |
| - 근해어선 감척       | 29,417  | 193,500<br>(160,000) | 129,500 |
| - 연근해어업조업실태조사   | -       | 300                  | 300     |
| • 연근해어선 감척      | -       | 100                  | 100     |
| - 연구용역          | -       | 100                  | 100     |

\* ( )는 추경으로 2008년 예산에 포함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 · 도
- 근해어선 감척 : 어선 · 어구 잔존가치평가액(100%) + 폐업지원금(연 평균수익액의 3년분을 정액으로 50% 지원)에 대하여 지자체 경상보조(보조율 : 국고 100%)

- 연근해어업조업실태조사 : 국고 100%(지자체 경상보조)
- 연안어선 감척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 : 국고 100%(국가수행)
- 사업추진절차 :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예산 확보, 집행지침 시달, 사업추진 사항 점검·확인 → (시도지사) 사업 세부집행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대상자별 지원금 산출, 사업자 확정, 사업자별 지원금 결정 통보, 지원금 지급, 폐선처리 등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추진체계 정비 통한 집행실적 제고

- 감척사업은 사업자모집, 감정평가, 계약체결, 폐선처리 등 최소 8개월 이상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업이고, 대규모 어선감척이 일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감정평가나 폐선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연도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 교부액     | 전년도<br>이월액 | 예산현액<br>(A) | 지출액<br>(B) |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br>(B/A) |
|------|---------|------------|-------------|------------|---------|-------|--------------|
| 2005 | 33,300  | 702        | 34,002      | 22,429     | 9,235   | 2,338 | 66.0         |
| 2006 | 53,200  | 9,235      | 62,435      | 54,820     | 4,655   | 2,960 | 87.8         |
| 2007 | 129,417 | 4,655      | 134,072     | 93,508     | 38,661  | 1,903 | 69.7         |
| 2008 | 354,509 | 38,661     | 393,170     | 125,289    | 265,518 | 2,363 | 31.9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 어업구조조정과 연계한 실업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 강화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상의 지원 규정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어선 감축에 따른 실직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확보

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농림수산물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2008 및 농림수산물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이와 관련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sup>1)</sup> 제39조에 실직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는바(2009. 5. 27),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할 것임.

○ 어선감척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만큼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적인 실업대책보다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등 중장기적인 실업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 실업대책 수립 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직종 전환이 가능한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척대상 선주들이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농림수산물부 | 수산정책실 | 어업자원관 | 어업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 바다숲조성사업의 유사사업과의 기능 조정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조장을 대단위로 시설함으로써 갯녹음(바다사막화) 피해 예방과 수산생태계를 회복하고 CO<sub>2</sub> 저감으로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목적 해조류 산업 육성
- 사업근거 :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6조 및 제9조
- 사업예산

바다 숲 조성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바다 숲 조성 사업 | -    | -    | 10,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물과학원
- 사업추진절차 : (농림수산물식품부) 방침 시달 및 예산지원 / 총괄 관리 → (국립수산물과학원) 바다 숲 조성사업 수행 → (시·도) 바다 숲 유지 관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유사사업과의 중복 해소 방안 마련

- 바다생태계 복원, 수산자원 증대, 기후변화 대응, 해조산업 육성 등의 사업목적 측면에서 동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농식품부의 기존 바다목장사업, 인공어초사업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의 유사·중복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농림수산물식품부 | 수산정책실 | 어업자원관 | 자원환경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6 친환경농업육성 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하여 농업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사업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 사업예산

친환경농업육성 프로그램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친환경농업육성                 | 118,534 | 157,170 | 231,512 |
| – 친환경비료지원 (일반, 군특)        | 87,323  | 173,545 | 185,200 |
|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 (신규, 농특) | –       | –       | 843     |
| – 폐비닐수거비지원(농특, 군특)        | 2,961   | 2,946   | 2,030   |
| – 녹비작물종자대지원(신규, 농특)       | –       | –       | 13,471  |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농특)          | 24,500  | 33,000  | 14,650  |
| – 생물학적병해충 방제(농특)          | 3,750   | 4,480   | 4,490   |
| –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농특)         | –       | 960     | 1,440   |
| – 농작물병해충방제(농특)            | –       | 3,000   | 3,000   |
| –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개선 (신규, 군특)  | –       | –       | 4,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내실화 도모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할 수 있음. 인증종류에 따른 비중을 보면, 농가수·면적·인증량 각각의 기준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여 연도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저농약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8).

### □ 성과지표의 개선 모색

- 친환경농업육성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친환경 농산물 1인당 평균소비량(kg)으로 측정되고 있는바, 이는 친환경농업의 공급 및 수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친환경농업지원프로그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약사용량 감소는 미비한바, 동 프로그램의 전략목표가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점, 친환경농업정책 시행 시 환경오염부하경감 측면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볼 때, 농약사용량 감소를 성과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등 소비자 신뢰 확보방안 마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단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통대책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국회 예산정책처,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8).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실 | 소비안전정책관 | 친환경농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7 농업생명자원연구사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국가 농업생명자원 연구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농업생명자원 실용화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향상하며, GMO 안전성 관련 국가 정책 지원 기반을 확보
- 사업근거 : 「농촌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사업예산

농업생명자원연구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농업생명자원연구 | 10,237 | 9,777 | 7,215 |
| – 시험연구비    | 8,942  | 7,906 | 5,871 |
| – 연구시설비    | 450    | 300   | 244   |
| – 시험장비비    | 840    | 731   | 395   |
| – 기타연구비    | 5      | 840   | 705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국고 10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성과지표 개선 모색

- 농업생명자원연구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특정평가(2008) 결과, 사업 계획 수립, 집행 및 성과지표 설정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성과지표설정에 있어 단순히 성과의 양적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 목표 기준에 근거한 목표설정 근거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한바, 사업 수행 시 중장기 사업 목표에 근거하여 사업 내용별 투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사업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개발이 요구됨(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 GMO 안전성 등 현안 대처 및 중장기 계획 마련

- GMO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등 시급한 현안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투자 확대 등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GM작물의 안전성 확보방안 및 농업생명공학육성 투자확대방안과 2010년 이후의 후속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년도 국정감사)

### □ 바이오그린21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 방지 대책 마련

- 농업생명공학연구사업 및 바이오그린21사업 모두 농업생명공학분야의 기반기술 또는 실용화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세부내용이나 사업의 성과가 일부 중복되는 사례도 있는바, 농업생명공학 기초 및 실용화기술 개발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농촌진흥청 |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생명자원부 | 유전자분석개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8 농업공학연구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농업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첨단공학기술이용 자동화·로봇화 및 식물생산 공장 연구, 농축산물안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후처리기술 개발, 농업재해예방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농업기계 시험 및 안전성·환경위해성 평가와 국제규범 운영
- 사업근거 : 「농촌진흥법」 제6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제24조 및 제25조
- 사업예산

농업공학연구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농업공학연구 | 5,087 | 5,399 | 6,300 |
| – 시험연구비  | 4,138 | 3,784 | 4,918 |
| – 연구시설비  | 200   | 400   | 250   |
| – 시험장비비  | 678   | 1,084 | 976   |
| – 기타연구비  | 71    | 131   | 156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국고 10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개발농기계 농가보급 확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특정평가(2008) 결과 사업계획 미비 및 농가 수요 파악 미흡으로 인한 개발농기계 보급 실적의 저조 문제가 지적되었음.
- 농촌진흥청이 수요가 적은 농기계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바, 사전에 영농현장의 요구 및 기술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 개발농기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 강구

- 영농현장에 필요한 장비 개발을 위해 농업 현장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농가에서 이미 개발한 농기계를 개발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연구기관에서 이를 보완하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농촌진흥청 |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 | 에너지환경공학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9 원예작물로열티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국내 원예 품종의 국산화 및 민간육종 기반 확립, 종묘생산 전업농 기반 구축 및 국산품종 보급 확대, 고품질 상품생산을 통한 원예작물 수출산업 지원
- 사업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공동연구개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공동연구대상 사업), 「농업과학기술개발공동연구사업관리규정및지침」
- 사업예산

원예작물 로열티대응 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원예작물 로열티대응 기술개발    | 2,000 | 3,000 | 6,300 |
| – 장미 신품종육성 및 보급 체계화  | 1,000 | 1,000 | 1,200 |
| – 딸기 로열티 문제해결 기술개발   | 1,000 | 1,000 | 1,200 |
| – 국화 신품종육성 및 보급 체계화  | –     | 1,000 | 1,200 |
| – 참다래 신품종육성 및 보급 체계화 | –     | –     | 900   |
| – 난 신품종육성 및 보급 체계화   | –     | –     | 900   |
| – 버섯산업 활성화 대응기술 개발   | –     | –     | 9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산·학·연 공동연구)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국고 10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연구성과 제고 방안 마련

- 파프리카 등 원예작물에 대한 로열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나, 투자액 대비 로열티 절감액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연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농림수산물위원회, 「200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08).
- 로열티 부담 완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로열티 대응연구사업 성과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농림수산물위원회, 「200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2008).

### □ 원예작물의 로열티 문제 해소를 위한 품종개발 보급 확대

- 장미나 국화 등 기존 작물의 국산품종개발을 통한 로열티 부담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화훼작물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농림수산물위원회, 「200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및 2007년도 국정감사).

| 부처    | 실·국   | 과     |
|-------|-------|-------|
| 농촌진흥청 | 연구정책국 | 연구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10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훈련원·산림조합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독립가 및 산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기계·장비를 대여함으로써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숲가꾸기 관련 장비 지원으로 산림경영의 과학화 및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
- 사업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재정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임업의 기계화)
- 사업예산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임업기계·장비보급 | 2,190 | 2,155 | 1,211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산림청 소속기관
- 지원대상 : 지방산림청(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
- 지원조건 : 직접시행, 민간경상보조(10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임업기계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 홍보부족과 수수료 부담 등으로 가동률이 저조한 문제가 연례적으로 지적됨. 대여 실적이 저조한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기계장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임업기계장비 대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임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2007).

| 부처  | 실·국   | 과     |
|-----|-------|-------|
| 산림청 | 산림자원국 | 목재생산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11 숲가꾸기사업의 실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70년대 이후 녹화된 산림을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경제·환경·공익적 가치와 편익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농산촌의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사업근거 :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및 제64조(자금지원)
- 사업예산

숲가꾸기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숲가꾸기    | 198,566 | 248,180 | 313,629 |
| – 정책숲가꾸기  | 155,058 | 193,990 | 206,760 |
| – 공공산림가꾸기 | 43,508  | 54,190  | 106,869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유림관리소(직접), 시·군·구청(보조)
- 지원대상 : 산주 및 일반국민
- 정책숲가꾸기(직접) : 국고 100%, (보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공산림가꾸기(보조) : 국고 60%, 지방비 40%

### 공공산림가꾸기 및 정책숲가꾸기 비교

| 구 분           | 공공산림가꾸기                                          | 정책숲가꾸기                                                      |
|---------------|--------------------------------------------------|-------------------------------------------------------------|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창출<br>(전문기술 없어도 사업 참여 가능)        | 전통적인 육림(育林)사업으로<br>숲의 경제적 · 환경적 가치제고                        |
| 사업개시          | '05년 ~<br>**98~'02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br>추진(국고 100%)    | '73년 ~                                                      |
| 지원조건<br>(보조율) | 60%(국고) : 40%(지방비)<br>**08년까지 70%(국고) : 30%(지방비) | 50%(국고) : 40%(지방비) : 10%(자부담)                               |
| 활용노동력         | 농산촌 고령 및 유휴인력, 취약계층<br>(덩굴제거, 풀베기 등 단순 작업)       | 임업기능인(간벌 등 숙련 작업)                                           |
| 대상지           | 생활권 주변 숲, 도로변                                    | 경제림 등 오지 위주                                                 |
| 사업형태          | 지자체 직접고용<br>(1일 임금 : 부대비 포함 4만5천원~5만원)           | 지자체 도급 사업<br>(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과 면적단위로<br>계약, 1인 일당 환산시 약 7만5천원)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실적 제고 방안 강구

- 숲가꾸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농·산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로 구분됨.
- 우리나라 산림면적(639만ha) 대비 숲가꾸기 사업실적(157만 8,000ha)이나 연간 사업물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 □ 세부사업간 예산배분 조정 검토

-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예산이 2009년에 급격히 증액되었음.
- 공공산림가꾸기 예산안은 일일 직접고용형태로 운용되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면에서 산물수집을 활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收集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의 전환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공공산림가꾸기는 일자리 창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사업대상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숲가꾸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상 산림지역 선정 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2009).

#### □ 환경적 측면 고려한 사업 추진

- 숲가꾸기사업 실행 시 야생동물의 먹이 및 서식지 파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함(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년도 국정감사).

#### □ 사업의 실효성 제고 위한 기타 제도 개선

- 숲가꾸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 관리 방안과 품셈 조정이 필요함(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년도 국정감사).
-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가계운영 도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바, 단가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산림청, 「2007 재정사업 성과평가 조사보고서」).
- 다수의 고령 및 여성인력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의 참여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율(2.7%)이 전문임업기능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숲가꾸기의 안전사고율(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향후 사업추진시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됨(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2009).

| 부처  | 실·국   | 과     |
|-----|-------|-------|
| 산림청 | 산림자원국 | 산림자원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 12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사업과 관련 사업 간의 연계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 협약 발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기여, 버려지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예방, 유가상승에 따른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 사업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제15호
- 사업예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업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산림바이오매스활용 | 700  | 2,365 | 11,25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직접수행), 지자체, 산림조합중앙회, 민간단체
- 지원대상 : 농·산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불우이웃 또는 산촌개발마을에 거주하는 농가
- 지원조건 : 펠릿제조시설 조성(국고 50%, 지방비 50%), 보일러 보급사업(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유관 부처와의 조정 및 협의 강화

- 목재 펠릿(화목)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 시 지식경제부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중 바이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과의 중복 또는 낭비요소 제거를 위한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숲가꾸기 산물 수집 확대방안 마련

- 펠릿보일러 보급과 펠릿제조시설 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펠릿의 주원자재인 숲가꾸기 산물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나 산물 수집율은 낮은 수준에 있음.
- 산물 수집율이 낮은 이유는 수집할 산물이 넓은 면적에 분산되어 있고, 임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산림사업의 기계화작업이 곤란하며, 산림안의 임목 축적 증가로 인력을 통한 산물 수집에 한계가 있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펠릿보일러 및 펠릿제조 설비지원사업의 추진과 함께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일러설치 이후에 필요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함(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2009).

| 부처  | 실·국   | 과     |
|-----|-------|-------|
| 산림청 | 산림자원국 | 목재생산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제민(788-4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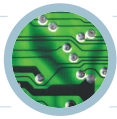
제 3장



## 사회사업 분야

- Ⅵ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143
- Ⅶ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174
- Ⅷ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194
- Ⅸ 환경노동위원회 • 227
- X 여성위원회 • 256





## VI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1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의 내실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대입전형의 다양화 · 특성화를 도모하고,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을 선정하여 입학사정 전문가의 채용 및 입학전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 사업근거 :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2008. 1. 22)
- 사업예산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 2,000 | 15,700 | 23,6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회계연도 주요사업 결산 설명자료, 2009. 5.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위탁)
- 교육과학기술부 :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사업 및 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및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관리 등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지원대학 선정(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평가단

구성 및 선정평가 실시), 지원대학 관리(선정대학에 보조금 재교부, 선정대학 컨설팅 및 현장점검, 연차평가 및 사업 결과 분석·보고)

- 선정 대학 : 입학사정관 채용, 입학사정관제 관련 연구 수행 및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 선정된 대학은 선정된 해부터 5년간 지원하되, 법령 위반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 중단 여부를 교과부·대교협·대학·고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입학사정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신분 안정화 방안 강구

- 2008년도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의 경우, 입학사정관은 정규직 26명, 비정규직 225명으로 총 251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험 축적 및 우수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입학사정관제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입학사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8).

### □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통권 156호).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 부처      | 실·국   | 관        | 팀      |
|---------|-------|----------|--------|
| 교육과학기술부 | 인재정책실 | 교육선진화정책관 | 대학자율화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 2 초·중·고등학교 시설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의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내용 : 신·증축이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 및 운영·관리하고, 정부가 20년간 일정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된 정부지급금을 통해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민간에 상환하는 방식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항
- 사업예산 : 시도교육청별로 2009년 5월 현재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2007년부터 2031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총 정부지급금액은 12조 8,019억 6,000만원<sup>1)</sup>

교육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정부<br>지급금 | 2007<br>~2010년 | 2011<br>~2015년 | 2016<br>~2020년 | 2020<br>~2025년 | 2026<br>~2031년 | 합계         |
|-----------|----------------|----------------|----------------|----------------|----------------|------------|
| 임대료       | 1,188,087      | 2,539,848      | 2,538,218      | 2,536,178      | 1,325,206      | 10,127,537 |
| 운영비       | 275,126        | 606,600        | 658,367        | 717,590        | 416,740        | 2,674,423  |
| 합 계       | 1,463,213      | 3,146,447      | 3,196,585      | 3,253,768      | 1,741,946      | 12,801,960 |

주: 시도교육청별 2009년 5월 현재 협약체결된 사업의 정부지급금 연도별 흐름의 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II」, 2009.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민간사업자
- 교육과학기술부 : 연도별 BTL사업 한도액 및 BTL사업으로 추진할 대상 학교 선정, 사업관리 및 지침 제공 업무 수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교육청 교부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계상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함.

- 시도교육청 : BTL사업 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 실시협약 체결, 건설·운영관리 및 성과평가의 모든 단계를 주도적으로 추진, 정부 지급금 지급
- 민간사업자 :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운영·관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학교시설 현장의 하자 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 운영단계에 들어선 BTL 학교시설 현장에서 성과평가 위원회의 유명무실화, 민간 사업자 내부 간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에서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도 하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교사, 교장이 문제를 확인하고, 처리 과정을 상호간에 공개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정부지급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II」, 2009).

### □ 입찰과정에서 적절한 경쟁 유도

- 교육시설 BTL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제안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2008년 75%가 단독제안). 분석결과, 적절한 입찰경쟁률이 유지되고 경쟁이 활발할수록 정부지급금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시설 BTL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절한 경쟁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II」, 2009).

### 교육시설 BTL사업 단독제안 현황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계    |
|------------|------|------|------|------|------|
| 사업 수(A)    | 38   | 55   | 43   | 19   | 155  |
| 단독제안(B)    | 12   | 12   | 18   | 14   | 56   |
| 비중(B/A, %) | (32) | (22) | (42) | (74) | (36) |

자료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함.

#### □ 교육시설 BTL사업 정보관리시스템 내실화

- 2008년부터 교육시설 BTL사업 관련 자료를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입력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보다 체계적인 정보입력 시스템(에듀파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음.
- 교육시설 BTL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매우 크고, 전국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약 20년간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는 바, 정보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II」, 2009).

| 부처      | 실·국   | 관     | 팀       |
|---------|-------|-------|---------|
| 교육과학기술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교육시설지원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 3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사업 집행의 적정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전문대학생에게 해외 경험과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해외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현지 취업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글로벌 산업인력 양성
- 사업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예산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예산 및 인원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예산 현황 | 2,000 | 2,000 | 2,000 | 3,000 | 5,106 |
| 파견 인원 | 368   | 282   | 463   | 692   | 80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탁)
- 교육과학기술부 : 연도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사업 공고, 지원대학 선정,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집행 관리
- 선정 대학 : 인턴프로그램 계획(외국 현지업체 협약), 학생 선발 및 파견, 해외 현지 학생 관리, 학생 인턴십 비용 대응투자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선

- 동 사업은 2005년 사업추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그러나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학점

및 어학 성적만으로 구성되어, 신청자의 가구소득 및 생활 수준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사업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자비로는 해외인턴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해외인턴사업 평가」, 2009. 4).

#### □ 지역간 형평성 제고

-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지역 전문대학의 재학생이 사업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2008년 동 사업 지원실적을 보면, 강원·충북·충남·전남 지역의 경우 전문대학 수 대비 지원대학 수 비중은 20%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상은 해외인턴십 신청을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학생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따라서 신청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해외 인턴십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타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Ⅲ」, 2009).

#### □ 사업 관리감독의 강화

- 설문조사 결과<sup>1)</sup> 일본에서 인턴십을 수행했다고 응답한 참여자 45명 중 무비자로 다녀온 경우가 10명(22.2%)으로 조사되었고 이로 인해 중도에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한 사례 등이 나타났는바, 사업집행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해외인턴사업 평가」, 2009. 4.).

| 부처      | 실·국   | 관       | 팀       |
|---------|-------|---------|---------|
| 교육과학기술부 | 인재정책실 | 평생직업교육국 | 전문대학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1) 국회예산정책처, 「해외인턴사업 평가」, 2009. 4.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집행 점검의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및 유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첫째,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둘째,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셋째, 보통교부금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시도교육청에 교부
- 사업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사업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2008년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본예산       | 세계잉여금 선정산 | 재정규모      |
|---------|-----------|-----------|-----------|
| • 특별교부금 | 1,071,722 | 98,169    | 1,169,891 |
| - 시책사업  | 643,033   | 58,902    | 701,934   |
| - 현안사업  | 321,516   | 29,451    | 350,967   |
| - 재해대책  | 107,172   | 9,817     | 116,98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 추진체계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시도교육청에 교부
- 교부절차 :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부하고,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교부

### 특별교부금 교부절차

| 특교 유형  | 교부절차                                           |
|--------|------------------------------------------------|
| • 시책사업 | 교과부 사업부서 신청 → 시책사업심의회 심의 → 장관결재 · 교부           |
| • 현안사업 | 시도교육청 신청 → 교과부 신청내용 검토 → 장관결재 · 교부             |
| • 재해대책 | 소방방재청 피해조사, 시도교육청 신청 → 교과부 신청내용 검토 → 장관결재 · 교부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목적외 교부의 개선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부되어야 하는데, 2008년도 결산분석 결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추진하는 사업 등에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과 같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일반회계 예산에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사례, 학교정보공시시스템 안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추진사업 등과 같이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교부금을 지원한 경우 등이 나타남.

### □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목적외 교부 및 교부 시기 개선

-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에 따르면 장관 등이 학교 방문 시 격려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총 9회로 나타났음(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연도 결산분석」, 200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회계연도 교육과학기술부 결산 검토보고, 2009).

- 교부 시기의 측면에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교육 현안이 발생한 때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2008년 11월 10일에 전체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금의 99.5%인 3,500억원이 교부되었는바, 이러한 연말 집중 교부 관행도 개선하여야 할 것임(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연도 결산분석」, 2008).

| 부처      | 실·국   | 국     | 팀       |
|---------|-------|-------|---------|
| 교육과학기술부 | 인재정책실 | 교육복지국 | 지방교육재정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 5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대학 발전의 핵심지표(학생충원율, 취업률 등)가 반영된 공식(포물리) 의한 성과중심 재정지원으로 대학간 성과창출 경쟁을 확대하고, 대학(4년제)에 총액으로 지원금을 교부하여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의 자율적·전략적 투자를 촉진
-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고등교육법」 제7조, 「사립학교법」제43조
- 사업예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8   | 2009   | 증감     |
|------------|--------|--------|--------|
| • 대학교육역량강화 | 50,000 | 69,900 | 19,900 |

주 :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30개교에 대한 지원금 및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운영비로 구성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학술진흥재단 출연)
- 교육과학기술부 : 각 대학의 일정한 지표로 구성된 포물리에 의해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지원금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
- 지원대학 : 각 대학은 지원금을 장학금 및 취업지원사업 등 사전에 정해진 의무지출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유도

-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2008년도 비목별 결산현황을 보면 대학 학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비중은 27%이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교육환경 개선 및 기자재 구입 등에 예산의 39.7%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2009).
- 향후 사전 컨설팅 기능 및 사업성과 평가 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사업 수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체계적인 사전 컨설팅 및 이행점검 강화

- 동 사업이 ‘교육역량 강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이행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컨설팅은 대학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교육역량 강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이행점검은 사업 중반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잔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09).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교육과학기술부 | 인재정책실 | 교육선진화정책관 | 대학선진화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 6 학습보조인턴교사제의 내실화 방안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하여 청년층,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예비교원, 청년층, 경제위기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학교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 16,250개 제공
- 사업근거 : 법적근거 없음('09년 하반기 사업 수행 후 지속여부 결정)
- 사업예산 : 총 780억원(국고 390억원, 특별교부금 390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명, 개교,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인원     | 학교 수  | 2009년도 예산 |
|-----------------------|--------|-------|-----------|
| •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 4,793  | 1,440 | 23,006    |
| •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보조 인턴교사 | 2,091  | 695   | 10,037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인턴교사  | 1,080  | 187   | 5,184     |
| • 위기자녀 지원 전문상담 인턴교사   | 1,614  | 1,614 | 7,747     |
| •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  | 1,872  | 1,316 | 8,986     |
| • 과학실험 보조 인턴교사        | 3,000  | 3,000 | 14,400    |
|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보조 인턴교사 | 1,800  | 457   | 8,640     |
| 합 계                   | 16,250 | 8,709 | 78,0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실행계획, 2009. 7. 15.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 기본계획 · 실행계획 수립 및 시도별 인턴교사 수요 파악, 인턴교사 예산 교부 및 추진과정 모니터링, 학교별 운영성과 평가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 인턴교사 수요조사, 자체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학교별 인턴교사 및 예산 배정, 인턴교사 임용 및 학교현장 모니터링
- 단위학교 : 단위학교 인턴교사 채용(채용권자 : 교장) 및 운영성과 평가자료 시도교육청에 제출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교원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관련 사전교육 강화

- 동 사업은 학습보조 인턴교사 선발 시 교원자격증 소지자(「교원자격검정령」상 자격증)를 우대하나, 7개 세부사업 모두 자격증을 지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소지자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주요 역할

| 세부사업명                    | 인턴교사 역할                                                                       | 교원자격증*<br>미소지자<br>채용 여부 |
|--------------------------|-------------------------------------------------------------------------------|-------------------------|
| • 학력향상 중점학교<br>학습보조 인턴교사 |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수업 등을 활용하여 학습부진학생 학습 지도 중점 지원                                   | ○                       |
| • 전문계고 산업현장<br>실습보조 인턴교사 | 관련 분야 전공자·경력 소지자가 산업 현장과 밀접한 실습 교육을 지원(산학겸임교사), 학교 실습실 관리 보조 및 실습 준비·정리(실습조교) | ○                       |
| • 특수교육지원센터<br>운영지원 인턴교사  | 학생 지도, 지도 보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진단·평가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상담 등) 지원                       | ○                       |
| • 위기자녀 지원<br>전문상담 인턴교사   | 학교부적응 학생, 실직자 가정의 위기 자녀 등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 수행(휴식시간, 방과후 시간 등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 ○                       |
| • 수준별 이동수업<br>학습보조 인턴교사  | 「기존학급+1」형태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을 담당                                 | ○                       |
| • 과학실험 보조<br>인턴교사        | 정규교육과정의 과학 탐구·실험 수업 보조, 이공계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한 심화수업 및 진로지도 보조                       | ○                       |
| • 사교육 없는 학교<br>운영보조 인턴교사 |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수업 등 지원                                      | ○                       |

\*교원자격증 또는 각 사업별 관련 분야 자격증을 말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실행계획, 2009. 7. 15.

- 세부사업별 인턴교사의 역할을 보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 지도 및 상담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인턴교사 선발자에 대한 사전교육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기간도 1~2일 정도로 짧음. 학교현장에서 인턴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학기 개학 전 계획된 ‘배치 전 소양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학교현장·학생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사전적인 학습이나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므로 교육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및 효과적인 수업·학습 지원을 위해서 인턴교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연수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사업은 2009년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기간이 2009년 2학기(9월~12월)로 한정되었음.<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는 전문성 축적, 일자리 확보,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학교와 교육청은 인턴교사에게 책임감 있는 업무를 부여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을 중단시키기보다는 성과평가가 결과 성과가 좋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도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 성과가 탁월한 학습보조 인턴교사에 대해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보조교사 등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교육과학기술부 | 인재정책실 | 학교자율화추진관 | 교직발전기획과(총괄)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1) 교육과학기술부는 추경으로 편성된 국고지원 사업은 2009년도 2학기로 사업을 종료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은 2009년 12월말에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미달 등)에는 2010년 1학기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예정이라고 함.

## 7 학업성취도평가지원사업의 신뢰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국가 수준의 평가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 교육과정 개정,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사업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사업예산

학업성취도평가 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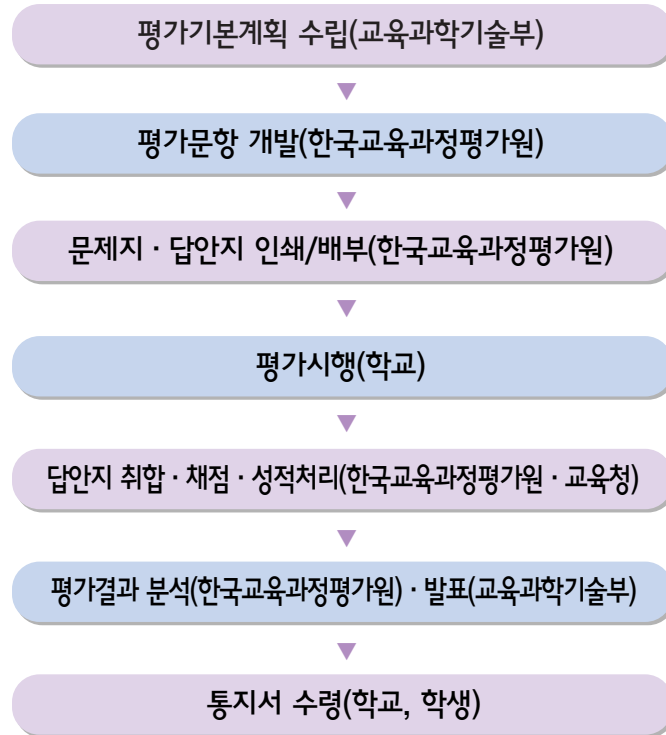
| 구 분              | 2008  | 2009  | 증감  |
|------------------|-------|-------|-----|
| •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 1,235 | 1,397 | 162 |
| - 출제 관련          | 240   | 240   | 0   |
| - 인쇄·운송·시행·채점    | 875   | 1,037 | 162 |
| - 결과분석·보고서 인쇄·배부 | 120   | 120   | 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2009. 1.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시도교육청· 개별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개 수준에 따라 분석하여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체계 및 절차〉



주 : 2009년 4월 마련된 개선안에 따른 절차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 2008년도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채점결과 취합 과정에서 답안지 유실·누락, 채점 오류 등 집계 오류 사례가 발생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음.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 T/F팀을 구성('09.2.25)하여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재공개하였음.

- 2009년 4월 평가시스템 개선안이 마련되어 2009년 10월 수행될 평가부터는 표준화된 OMR카드 활용, 시험감독 강화, 단위학교 개별채점에서 교육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집계하여 보고될 예정인 바,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결과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학교의 비중’으로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008년부터는 모든 학생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성과지표는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의 활용 성과를 보여주기에 대표성이 부족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2009).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사업 2009년도 성과지표 현황

| 사업명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목표치 |
|----------|-------------------|------------------------|-----|
| 학업성취도 평가 | 학업성취도<br>평가 전수 시행 | 평가시행 학교/전체<br>학교 × 100 | 9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기본 취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미달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업성취 수준을 끌어올리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음.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바, 성과지표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학업성취 수준 향상도’ 등의 결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교육과학기술부 | 인재정책실 | 인재기획분석관 | 학교정책분석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 8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실패를 통한 기술능력 제고 방안 모색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국내의 위성자력발사 능력 확보를 위한 우주발사체 개발. 소형위성발사체('02~'09)와 한국형발사체('10~) 개발을 통하여 우주발사체 핵심기술 및 국내 독자개발 능력 확보
- 사업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07.6)
- 사업예산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우주발사체개발사업     | 95,810 | 60,864 | 10,000 |
| – 소형위성발사체개발     | 95,810 | 60,864 | –      |
| – 한국형발사체 선행기반개발 | –      | –      | 10,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내 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를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KSLV-I) 개발
- 한국형발사체(KSLV-II) 개발 사업 착수에 앞서 '09년 한국형발사체 선행기반 개발 사업 수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실패를 통한 기술학습 효과에 대한 점검 필요

- '09.8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나로호(KSLV-I)에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가 예정된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추락함.
- 우주개발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는 임무 자체의 달성 여부와 함께 실패를 통한 기술학습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연구진이 실패의 원인을 독자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데이터 등을 러시아로부터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패를 통한 기술학습 등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 실패의 원인 규명 능력은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우리의 기술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금번 발사실패의 원인 규명 과정에 나타날 우리 연구진의 역량을 점검하는 것이 요구됨.

### □ 해외기술 의존으로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문제 발생

- 나로호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사업은 사업 착수 이후 러시아와의 기술협력과정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의 문제가 발생함.
  - 우주발사체개발사업은 해외기술협력 범위 확대를 이유로 총사업비가 최초 3,594억원에서 5,025억원으로 증가하고, 한·러간 우주기술보호협정의 러시아 의회 비준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해외기술협력에 따른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내용

(단위 : 억원)

| 구 분  | 변경<br>년도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 변경사유 및 내역                     |
|------|----------|-------|-------|------|-----|-------------------------------|
|      |          | 당초    | 변경    | 착수   | 완료  |                               |
| 최 초  | '02      | 3,594 |       | '02  | '05 |                               |
| 1차변경 | '05      | 3,594 | 5,025 | '02  | '07 | 해외 기술협력 범위 확대                 |
| 2차변경 | '07      | -     | -     | '02  | '08 | 한러간 우주기술보호협정 지연<br>으로 개발기간 연장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12)

## □ 해외기술협력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 강구

- 러시아와의 해외 기술협력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 사업계획 대비 사업일정과 사업비 변경의 결과를 초래함.
- 1차 발사체 개발사업(KSLV-I) 이후 자력 기술을 통한 2차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KSLV-II)을 추진하고 있음. 2차 발사체 개발사업은 2009~2017년 기간 중 중량 1,500kg 규모의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여 2017년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현재 미정이며, 2013년까지 총 3,58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하지만 인공위성 등 우주개발사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임무 중심적 사업으로 추진된 결과 핵심기초원천기술 자립화 능력이 취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2008년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 또한 러시아 현지 제작 나로호 1단 로켓이 러시아에서 실험 중인 최신 로켓이 아니며, 국내 연구진의 러시아 1단 로켓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우주개발 발사체사업의 해외기술협력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
- 자력기술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해외기술협력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변경의 문제를 방지하고, 핵심기술 자립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정책실 | 거대과학정책관 | 우주개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9 핵융합에너지사업의 치밀한 자원마련 계획수립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EU, 미국 등 6개국과 공동으로 국제핵융합로(ITER) 건설에 참여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 사업근거 :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06.12) 제8조 및 ITER 공동이행협정('07.4 국회비준 동의)
- 사업예산

국제핵융합로건설사업 지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 '04~'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소계    |
|--------|---------|-----|-----|-------|-------|-------|-------|-----|-----|-------|
| 합 계    | 317     | 590 | 798 | 1,544 | 1,315 | 1,528 | 1,279 | 782 | 614 | 8,767 |
| 일반회계   | 317     | —   | 414 | 500   | 600   | 1,428 | 1,179 | 682 | 514 |       |
| 원자력 기금 | —       | 300 | 150 | 15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전력기금   | —       | 290 | 234 | 894   | 615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 ITER 공동이행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할당된 10개 조달품목의 적기 납품과 전문 인력 인건비분담금 및 현금분담금 납부
- 국제핵융합로건설사업 분담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과 지식경제부의 전력기금을 통해 분담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2012년 이후 자원마련 계획 미확정

- 2008년 이후 ITER 건설 본격추진에 따라 소요재원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함. 2008년도에는 국가재정법의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부족한 예산 290억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으로 해결함(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지만 2012년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동 사업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 동 사업은 국제조약에 의한 사업으로 연도별 분담금의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마련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 □ 자원 마련 계획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ITER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사전에 확정하고, 향후 설계 및 조달품목 변경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분담금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한정된 국가 R&D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R&D 자원 배분계획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 필요함. 동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나 자원 배분 조정 요구가 발생할 경우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정책실 | 거대과학정책관 | 거대과학기반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10 연구소재지원사업의 특정분야 편중 해소대책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기초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소재의 확보·관리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연구소재 제공
- 사업근거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
- 사업예산

연구소재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연구소재지원사업 | 3,750 | 4,069 | 4,200 |
| – 중앙센터     |       | 600   | 600   |
| – 거점센터     |       |       | 500   |
| – 개별 소재은행  | 3,750 | 3,469 | 3,1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 연구소재은행 운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며, 연구소재은행은 전체 중앙센터, 분야별 거점센터, 개별 소재은행으로 구성
- 중앙센터는 전체 소재은행의 총괄·관리, 거점센터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소재은행의 관리, 개별 소재은행은 세부 과제 단위의 관리 역할을 수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특정분야에 집중 지양

- 연구소재지원사업은 국가 연구 사업을 포함한 모든 연구로부터 수집되거나 발생되는 다양한 연구 원천 소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동 사업이 생물분야에 집중하여 기초연구 기반구축 사업으로서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의견이 제시됨(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2008).

### □ 사업관리체계 개선 성과 제고 필요

- 동 사업은 거점은행을 통해 유사분야별 소재은행을 종합 관리하도록 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관된 소재내역이 없으며 관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의견도 제시됨(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2008).

### □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요하는 기초연구 기반구축사업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동 사업은 생물 분야 뿐만 아니라 광물 등 비생물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의 연구 소재들을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비생물 영역에서의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교육과학기술부 | 학술연구정책실 | 기초연구정책관 | 기초연구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11 비용분석 없이 이루어진 뇌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사업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뇌기능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연구 지원, 뇌융합 연구중심 기관 구축
- 사업근거 : 「뇌연구촉진법」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 사업예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뇌과학원천기술개발  | 3,410 | 3,410 | 5,300 |
| - 뇌과학원천기술연구  | 1,910 | 1,910 | 2,900 |
| - 뇌혈관한의학기반조성 | 1,500 | 1,500 | -     |
| - 뇌연구원설립운영   | -     | -     | 2,4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 동 사업은 '08년 '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서 이관된 '뇌과학원천기술사업'과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뇌연구원설립운영사업'으로 구성
- 뇌연구원설립운영사업은 2012년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09년부터 '20년까지 총 3,297억원이 소요될 예정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타당성조사에서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엄격한 검증 필요

- 동 사업은 2009~2020년까지 총 3,297억원이 투자될 대형연구개발사업으로 2007년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음.
- 하지만 동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요될 연도별 공사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음(국회예산정책처,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메타 평가, 2008.10).
- 비록 구)과기부와 구)기예처는 타당성 조사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분담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이후 2009~2020년까지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제시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비용 분석에 근거한 타당성 분석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정 소요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 비용 분석에 근거한 중장기 재정소요를 엄격히 검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 예산 배분시 중장기 재정소요 반영

- 뇌연구원 설립운영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향후 사업 추진에 소요될 재정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교육과학기술부 | 학술연구정책실 | 기초연구정책관 | 융합기술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12 나노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의 예산 피드백 장치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기술 융·복합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유망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을 위한 신기술융합 신성장연구 추진
- 사업근거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 사업예산

나노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 68,908 | 70,817 | 117,000 |
| – 미래기반기술개발(나노분야)    | –      | –      | 15,000  |
| – 미래기반기술개발(나노분야 제외) | –      | –      | 102,000 |
| – 바이오기술개발사업         | 60,308 | 61,617 | –       |
| – 나노기술개발사업          | 8,600  | 9,200  | –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 위탁)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은 기존의 2개 사업(바이오기술개발사업, 나노기술개발사업)을 통합·개편을 통해 추진
- 나노기술분야는 이전 나노기술개발사업을 나노소재·환경·에너지, 나노소자, 나노바이오, 나노공정·장비·측정, 나노기술종합정보 및 정책지원, 나노팹시설 활용 지원으로 확대 구성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성과지표 부적절로 인한 미흡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가

- 동 사업은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에서 성과지표의 핵심지표 가중치가 일반지표 보다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미흡 평가를 받았음.
- 나노기술개발사업은 2009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미흡평가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분야사업 예산은 2008년 99억원에서 2009년 150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 R&D 사업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미흡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함. 이러한 문제는 재정사업의 경우 미흡등급 사업에 대해 10%이상 예산안 삭감이라는 구체적인 삭감기준이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는 반면, R&D사업의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성과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 문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8.11).
- 부적절한 성과지표 또는 가중치 설정은 궁극적으로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따라서 사업 내용이 아닌 성과지표 가중치 설정 문제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사업의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의 가장 기반이 되는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등 각종 평가결과가 R&D 사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교육과학기술부 | 학술연구정책실 | 기초연구정책관 | 미래원천기술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13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 필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조선해양 분야의 신기술/신상품 개발로 연관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선도적 지위 유지를 위하여 부유식, 이동식 항만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사업근거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
- 사업예산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개발 사업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개발 | -    | -    | 25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과학기술원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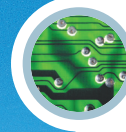
-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신설된 사업으로 모바일 하버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예산이 승인되었음.
- 동일한 명칭의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2009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후보과제로 선정되었으나,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되지 못하였음.

- 한국과학기술원은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제안하였던 모바일 하버는 해상 모바일 터미널 개념의 대형 부유체 항만이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오션 모바일 택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보고서에서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구체화와 경제성 평가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모바일 하버에 대하여 구체적 추진계획과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09. 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 4).
-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개발사업은 2009년 12월말까지 250억원을 집행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나, 한국과학기술원은 2009년 7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추진 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임.
- 추진계획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추진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성과 창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교육과학기술부 | 학술연구정책실 | 학술정책관 | 학연산지원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전용수(788-4628)

## VII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1 프로그램제작비용자사업의 수요예측 노력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PP 및 독립제작사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 · 공급 활성화 및 방송영상분야의 경쟁력 제고 도모
- 사업근거 : 「방송법」 제38조
- 사업예산

프로그램제작비용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프로그램제작비용자 | 2,500 | 2,000 | 2,0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PP 및 독립제작사 방송콘텐츠 제작비 융자
- 제작비 자체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콘텐츠제작사의 일시적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절차를 거쳐 제작비 융자금을 대출, 지원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연례적 사업 집행 부진 개선 방안 강구

- 동 사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용자사업으로 매년 집행률 저조 문제가 발생함. '06년 33.2%, '07년 79.9%, '08년 23.9%의 집행률을 보여 사업의 수요에 비해 많은 예산 배정 및 시장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이 우려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의 경우 정부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지연, 국내외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광고매출 급감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긴축 예산 편성, 프로그램 신규제작 투자 기피로 인하여 용자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예산의 실행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시장 수요에 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많은 예산을 책정하였거나,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에 따른 문제로 설명됨.

### □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자 수요와 예산의 연계 강화

- 사업집행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에 사업자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프로그램 제작기간(1년 → 2년)과 용자 지원대상을 확대(PP, 독립제작사 외에 IPTV콘텐츠사업자 포함) 시행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6월 말 기준 83.4%의 집행률을 달성함.
- 하지만, 연례적인 예산집행률 부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자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의 강화, 수요에 기반한 탄력적인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용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수요예측이나 용자사업 선정 및 실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용자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 융합정책관 | 방송통신진흥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윤성식(788-4677)

## 2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수수료 요율의 재조정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투표권 수익금의 관리 운영비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 사업예산

투표권(발매 수익) 기금전입금 2009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08      | 2009      | 증감      |
|-------------|-----------|-----------|---------|
| 1. 매출액      | 1,300,900 | 1,560,000 | 259,100 |
| 2. 환급액      | 727,320   | 864,500   | 137,180 |
| A. 전입금(1-2) | 573,580   | 695,500   | 121,920 |
| 3. 위탁관리비    | 251,880   | 274,868   | 22,988  |
| 4. 법정배분금    | 64,340    | 84,126    | 19,786  |
| 5. 지급보증원리금  | 25,214    | 22,455    | -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총 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하여 관리
- 발행사업자로 지정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게 하고 이를 승인하여 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체육진흥투표권 위탁관리비용 예측 정확성 제고

- 체육진흥투표권의 위탁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8.0~19.4%로 출국납부금 등의 위탁관리비율인 5.5%, 경륜사업 기금전입금의 총매출액 대비 위탁관리비율인 7.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발매금액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예측하여 2007년 예상보다 376억여 원이 많은 위탁운영비를 지급함(감사원, 2008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 감사).

### □ 온라인 판매수수료의 조정

- 온라인의 경우 발매 건당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설 임대료 등이 오프라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판매수수료를 5.5%로 하여 과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감사원, 2008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 감사).
- 온라인 판매원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판매수수료의 적용이 필요함.

### □ 위탁운영비율의 적정화를 통한 기금수입 증가방안 마련

- 2009년 말 위탁운영비 산정 등과 관련하여 위탁사업자와 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바, 체육진흥투표권의 위탁사업자에 대한 위탁운영비 지원비율을 현실화하여 기금으로의 전입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분석」, 2008).

| 부처      | 실·국 | 과     |
|---------|-----|-------|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국 | 체육정책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이형진(788-4636)

### 3 공익사업 적립금 사용의 재정통제 방안 검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년도 체육진흥투표권<sup>1)</sup> 수익금의 10%와, 경륜·경정 수익금의 2.5%를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사용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경륜·경정법」 제18조
- 사업예산

공익사업적립금<sup>2)</sup>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05년 이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합 계     |
|-------------|-----|----------|--------|--------|--------|---------|
| 체육진흥<br>투표권 | 적립액 | 16,218   | 23,196 | 35,218 | 41,652 | 116,284 |
|             | 집행액 | —        | 8,122  | 10,549 | 40,948 | 59,619  |
| 경륜·경정       | 적립액 | 20,867   | 237    | 1,458  | 1,250  | 23,812  |
|             | 집행액 | 20,870   | 1,417  | 243    | 151    | 22,681  |
| 계           | 적립액 | 37,085   | 23,433 | 36,676 | 42,902 | 140,096 |
|             | 집행액 | 20,870   | 9,539  | 10,792 | 41,099 | 82,300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 동 공익사업적립금은 사용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는 재원임.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적립금을 지원하거나,

1)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야구 등의 경기를 대상으로 참가자가 경기 결과를 분석·예측한 후 배팅하여 실제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게임, 일반적으로 “스포츠 토토”라 함.

2)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2001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 집행을하였고 경륜·경정의 경우 1996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2000년부터 집행을하였으며, 그해 적립액은 다음 해 3월에 배분됨.

일반회계나 공공기금 계획에 편성된 사업에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0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반회계나 공공기금계획에 편성된 사업에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 금액이 146억 8,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15개 사업에 887억 1,400만원이 활용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제7조 및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고 또는 공공기금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적립금 지원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적립금을 재정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도 예산총계주의 원칙<sup>3)</sup>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적립금도 예산안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재정담당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3) 제17조 (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4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의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지역문화기반시설 조기확충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 사업예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    | -    | 2,077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금 신청(지자체) → 사업내역 검토 및 사업비 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추진/상황관리(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정책반영(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협상가이드라인 작성 및 활용

- BTL 사업은 주무관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의 협상을 통해 체결되는 실시협약에서 사업의 각 단계별 구체적인 성과요구수준 및 정부지급금 등 주요내용이 확정됨. 순

환보직이 많은 정부조직 특성상 BTL 사업의 기획,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BTL 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상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업체와 협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 □ 협상시스템 체계화

-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환류하여 추후 협상 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에 필요한 선행경험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무관청의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9. 7).

| 부처      | 실·국   | 과       |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국 | 문화여가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 5 해외 현지인 대상 한국어 보급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현지인 대상 한국어 보급사업은 해외문화원 운영사업(한국어교실 운영),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사업을 통해 추진
- 사업목적
  - －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주요 문화권역별 해외문화원 구축·운영을 통한 한국문화 소개 확대 및 국가이미지 제고
  - －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사업: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한국어 및 한국어 보급으로 선진 각국의 패권적 언어 정책에 대응하고, 한국어 문화권역 및 한국 문화산업시장의 확대를 도모
- 사업근거
  - －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36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
  - －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사업: 「국어기본법」 제9조
- 사업예산

해외현지인 대상 한국어 보급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해외문화원 운영     | 10,510 | 10,048 | 10,788 |
|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 —      | 1,800  | 1,800  |

## □ 추진체계

### ○ 사업시행주체

- － 해외문화원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문화원
- －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 관련 단체(민간경상보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부처별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의 기능적 통합

- 현재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교실, 세종학당,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교육원, 외교통상부의 한글학교 등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어 보급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일할 계획임.
- 그러나 부처간·기관 간 업무 조정 없이 기관명만을 통일시키는 것은 단기적 처방인 것으로 보이므로, 분산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체계적인 교육과정·교재 개발

- 각각의 한국어 보급 기관별로 별도로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어 교재 및 교육과정의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74종,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43종,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 8종 등) 교재개발 비용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등이 문제가 있으므로, 표준화된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과      |
|-------------|-------|--------|
| 문화체육<br>관광부 | 문화예술국 | 국제문화과  |
|             | 국립국어원 | 한국어진흥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 6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성과관리 실시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 기금 용도

- 신문발전기금은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언론공익 사업 등을 수행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

##### ○ 사업근거

- 신문발전기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3조 내지 제35조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내지 제16조

##### ○ 사업예산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신문발전기금   | 38,401 | 48,194 | 37,300 |
| 지역신문발전기금 | 54,380 | 59,332 | 42,383 |

#### □ 추진체계

##### ○ 사업시행주체

- 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성과관리 실시

-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들이 추진된 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기존의 재정사업과는 내용상 차별화되어 성과의 설정 및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과관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모든 회계, 기금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금 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속히 성과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과       |
|-------------|-----------|---------|
| 문화체육<br>관광부 | 신문발전위원회   | 기획운영팀   |
|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지원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 7 전통사찰보존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노후·퇴락 주요 시설물(법당 등)의 보수 정비 지원
- 사업근거 : 「전통사찰보존법」 제19조
- 사업예산

전통사찰보존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전통사찰보존지원 | 8,992 | 9,292 | 8,992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지자체 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 사찰 선정(시·도) → 국고보조 교부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보조금 교부여부 결정(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 보고(시·도지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개선

- 2008년도 예산액 92억 9,200만원 중 절감예산 3억원을 제외한 89억 9,200만원

전액을 시·도에 교부하였으나, 당해연도 미집행액이 34%에 이르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특히, 전통사찰의 자부담 비율 20%를 확보하는 문제가 집행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해당 지자체는 물론 자부담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등 주관 사찰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사찰을 선정함으로써 연례적인 실집행률 부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예·결산 내역 및 미집행 사유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 예산현액  | 불용액               | 교부금액  | 당해연도<br>미집행액 | 미집행 사유(금액)              |             |            |                     |
|------|-------|-------------------|-------|--------------|-------------------------|-------------|------------|---------------------|
|      |       |                   |       |              | 문화재청 등<br>관계기관<br>협약 지연 | 자부담<br>확보문제 | 사업계획<br>변경 | 기 타                 |
| 2006 | 6,052 | 0                 | 6,052 | 1,743(29%)   | 46                      | 855         | 401        | 441                 |
| 2007 | 9,052 | 0                 | 9,052 | 2,465(27%)   | 290                     | 887         | 399        | 889                 |
| 2008 | 9,292 | 300 <sup>1)</sup> | 8,992 | 3,071(34%)   | 120                     | 933         | 745        | 1,273 <sup>2)</sup>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문화체육관광부 | 종무실 | 종무관 | 종무1담당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1) 사업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으로 '08년도 예산 절감분

2)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지연 등

## 8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연구용역 수행방식의 개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주요 문화권역별 해외문화원 구축, 운영을 통해 한국문화 전파 및 문화 산업, 관광, 체육 등 연성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주재국 문화수요를 고려한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등 한국 문화 소개 확대를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를 강화
- 사업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2항 36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
- 사업예산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해외문화원 운영 | 10,510 | 10,048 | 10,788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문화원(현재 12개소)
- 해외문화원 사업계획 제출 → 검토, 확정 → 문화원별 인건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배정 → 사업결과, 집행실적 보고 → 연도말 정산 및 문화원 운영, 사업평가 →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수립 및 문화원 운영에 반영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연구용역사업 수행방식의 개선

- 동 사업에서 계약한 연구용역(예산현액 2억 2,000만원)은 총 4건으로 모두 연도 말에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의 사고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 연구용역 내역 중 재외문화원 운영평가 용역(8,500만원)은 2006년(4,800만원), 2007년(7,900만원)에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하여 실시되었음. 그러나 평가기간이 2006. 7 ~ 12월, 2007. 8월 ~ 2008. 2월, 2008. 12월 ~ 2009. 6월로 나타났는 바, 평가기간이 상이하여 재외문화원에 대한 연도별 성과 비교가 어려워 보임.
- 향후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원 평가 연구용역 사업 수행 시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결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기간을 동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정책국 | 국제문화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 9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사업 업무의 일원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대한민국건축제, 공간문화대상 등 건축문화진흥활동 지원을 통한 국민의 인식제고 및 건축문화발전기반 형성
- 사업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사업예산

대한민국 건축문화진흥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대한민국건축문화진흥 | 300  | 300  | 3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민간단체(민간 경상보조)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공모 및 지원계획 수립 → 지자체, 민간단체, 개인 공모 신청 →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서류 및 현장실사 → 시상 및 작품전시(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운영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국토해양부의 건축문화관련 사업과의 업무 일원화

- 국토해양부는 「건축문화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을 증대시키고 건축문화 및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건축문화대상사업, 지자체로부터 건축문화도시축제 관련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도시 축제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건축문화진흥사업과 국토해양부 사업들은 건축물과 도시의 건축 환경 및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유사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사업목적, 사업방식,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양 부처간 사업 구분을 명확히 하고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유사한 사업을 일원화하여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정책국 | 예술정책관 | 디자인공간문화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 10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집행 촉진 방안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방지를 통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 사업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사업예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문화재보수정비 | 163,886 | 190,029 | 171,026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본보조)
- 정률보조(국가지정 문화재 70%, 등록문화재 및 기타 50%)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신청 → 정부예산통지 → 지방비 확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보조사업 지침통보 → 설계검토·승인 → 공사착공 및 준공 → 정산반납
- 1999년부터 총액계상예산사업으로 지정되어 시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실효성부진 개선 대책 마련

- 2008년도 예산액 1,900억 2,900만원 중 50.1%인 951억 8,2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치는 등 집행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음.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연 도  | 문화재청<br>예산액 | 시·도 지자체 |         |       |        |
|------|-------------|---------|---------|-------|--------|
|      |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
| 2004 | 180,580     | 66,342  | 113,593 | 645   | 36.7   |
| 2005 | 156,625     | 82,454  | 73,794  | 377   | 52.6   |
| 2006 | 171,752     | 71,621  | 99,765  | 365   | 41.7   |
| 2007 | 163,886     | 76,106  | 86,974  | 806   | 46.4   |
| 2008 | 190,029     | 95,182  | 93,398  | 1,449 | 5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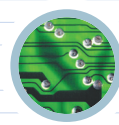
- 문화재청에서는 실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지방비 확보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문화재 매입 시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집행 부진에 대한 사유별로 정확하게 파악된 내역이 없는 실정임.
- 집행률 개선방안으로 2007년도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sup>1)</sup>에 의한 예산안 사전 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 통지 시기(10월 15일)가 지방비 예산 편성 시기(통상 9월말)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고, 2009년도에는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우선 집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사전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통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국비우선 집행과 같은 임시적인 방편보다는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등 사전준비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과       |
|------|--------|---------|
| 문화재청 | 기획조정관실 | 기획재정담당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1) 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①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VIII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1 복지예산 집행의 효과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2009년도 제1회 추경 기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를 합한 복지재정지출은 전년대비 17.0% 증가한 80조 5,253억원 규모
- 복지재정지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2%씩 증가하였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9.8%)보다 약 12%p 높게 증가
- 2009년도 복지재정지출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이며, 동 비중은 계속 증가

복지재정규모: 2005~2009년

(단위: 억원,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연평균<br>증가율 | 비 고                                             |
|--------|---------|---------|---------|---------|---------|------------|-------------------------------------------------|
| [분야별]  |         |         |         |         |         |            |                                                 |
| • 사회복지 | 328,626 | 505,153 | 560,957 | 641,657 | 744,469 | 23.8       |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부문                                  |
| • 보 건  | 50,261  | 55,108  | 52,891  | 59,148  | 69,008  | 8.5        | 보건의료 등 3개 부문                                    |
| [회계별]  |         |         |         |         |         |            |                                                 |
| • 예산   | 146,729 | 172,516 | 168,185 | 206,391 | 272,583 | 17.5       | 6개 부처(보건복지, 노동 등)의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
| • 기금   | 232,158 | 387,745 | 445,663 | 494,414 | 540,894 | 25.6       | 9개 부처의 17개 기금(9개 사업성기금, 6개 사회보험성 기금, 2개 계정성 기금) |

|                |         |         |         |         |         |      |  |
|----------------|---------|---------|---------|---------|---------|------|--|
| 복지재정 합계        | 378,887 | 560,261 | 613,848 | 700,805 | 813,477 | 21.9 |  |
|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 (18.2)  | (25.0)  | (25.7)  | (26.6)  | (26.9)  |      |  |
| 정부총지출(조원)      | 208.7   | 224.1   | 238.4   | 262.8   | 302.3   | 9.8  |  |

주: 1. 2009년은 제1회 추경예산안 기준임. 정부는 복지분야에 포함된 각 기금들의 운용계획변경으로 인해 부문별 재정규모를 취합하지 못함에 따라 상기표의 2009년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함. 다만, 2009년 복지재정 전체규모(80조 5,253억원)는 확정치가 도출된 관계로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제시함.

2. 취약계층 지원 등에는 취약계층 지원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년도.

## □ 추진체계

- 복지재정은 2개 분야와 1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5개 특별회계 및 17개 기금(6개 사회보험성기금과 9개 사업성기금, 2개 제정성 기금)이 관련
- 복지재정 운영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10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산하의 복권위원회 포함)가 관련되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요 업무를 담당<sup>1)</sup>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소득양극화 심화 대책 강구

- 정부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복지예산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빈곤율의 지속적 상승, 지니계수 악화 등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OECD국가들의 소득수준 및 연금성숙도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복지예산규모는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현 시점에서 복지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를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전체적인 복지재정 운영구

1) 5개 부처(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여성부, 식품의약품안전청)는 전체 재정이 해당되며, 4개 부처(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는 소관 공적연금 및 주택사업이 해당됨.

조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와 동시에 복지예산이 취약계층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재량지출 복지사업 예산증가 방안 제시 필요

-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12조원에 이르러,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의 62.5%에 이르는 등 법령에 의해 지출의무가 규정되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나 저출산 고령사회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함.
- 높은 의무지출 비중으로 인해 서민층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재량지출 복지사업예산은 미약하고, 이로 인해 복지지출 전체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구조로, 복지예산이 증가할 경우 지방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 | -   | - | -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김대철(788-4633)

## 2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를 통한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발생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부담을 사회적 연대 책임 하에 분산시켜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 사업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 사업재정

건강보험재정 규모

(단위: 억원)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수입(A)       | 166,377 | 185,514 | 215,979 | 248,817 | 260,850 |
| 지출(B)       | 191,537 | 224,623 | 255,544 | 275,412 | 309,354 |
| 당기 수지(A-B)  | -25,160 | -39,109 | -39,565 | -26,595 | -48,504 |
| 정부 지원       | 36,948  | 38,362  | 36,718  | 40,262  | 46,828  |
|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 | 11,788  | -747    | -2,847  | 13,667  | -1,676  |

주: 1. 정부 지원은 실 지원액 반영, 차상위 지원금(2008년 689억원, 2009년 1,479억원) 제외.

2. 2009년 수입 및 지출은 2009.1월 기준 추계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 추진체계

- 관리운영주체 : 보건복지가족부(건강보험사업 관장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의 보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 비용 심사)
- 재원조달 체계 :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의 정부지원금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니라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좌우되고 있음 : 2004년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후 당기수

지 1.6조원 흑자 → 2005년 보장성 확대(2005~2008년 3.2조원 추가소요), 2005년 1.2조원 흑자 → 2006년 보장성 확대(2006~2008년 1.7조원 추가소요), 2008년 1.4조원 흑자 → 2009. 6.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 마련(5년간 3.1조원 추가소요)

- 저소득층 건강보험 연체관리가 이들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경우 생계형 보험료 연체자의 장기불납채권을 결손처분해 주는 일회성 조치로 취해지고 있음: 2008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됨에 따라 3,881억원의 연체보험료를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579억원 대비 6.7배 규모임.
-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건강보험이 추가 부담하게 된 재정 규모는 2008년 1,169억원, 2009년 5,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법정 기준(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치는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 모색

- 국민연금·산재보험 등의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용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므로, 건강보험도 타 사회보험과 일관성 있는 재정제도 정비가 필요함.
-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 및 급여 충당을 통하여 민생의 우선과제인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기금화되어야 할 것임(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2009,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2008).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의료정책실 | 건강보험정책관 | 보험정책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김성은(788-4637)

### 3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
- 사업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부칙 제3조제2항
- 사업예산

기초노령연금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08예산    | 2008결산    | 2009예산    |
|----------|-----------|-----------|-----------|
| 기초노령연금사업 | 1,594,768 | 1,601,921 | 2,469,726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9. 3.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공단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차등보조율 산정기준 지표의 구간설정 개선 필요

-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적용하는 국고 차등보조율은 지역의 노인복지 수요 및 재정력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여 9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국고를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 지원하는 방식임.

### 국가부담 연금비용의 비율(차등보조율)

|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        |
|---------|----------------|--------|--------|
|         | 14% 미만         | 14~20% | 20% 이상 |
| [재정자주도] |                |        |        |
| 90% 이상  | 40%            | 50%    | 60%    |
| 80~90%  | 50%            | 60%    | 70%    |
| 80% 미만  | 70%            | 80%    | 90%    |

자료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발표

-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인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영역에 전체 231개 시·군·구 중 106개(45.9%)가 분류되는데, 특히 44개 광역시 자치구 중 42개가 이 영역에 포함됨.
- 그 중에서도 27개 광역시 자치구가 재정자주도 60%에도 못 미치며, 예산총계 대비 노령연금지출 비중(4.9%)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고보조율을 종래의 기준보조율(80%)<sup>1)</sup>보다 낮은 70%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재정자주도 80% 미만 영역을 70~80% 미만과 70% 미만으로 세분하고 노인인구비율 14% 미만 영역을 10% 미만과 10~14%로 세분함으로써 재정자주도는 매우 낮으면서 노인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국고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차등보조율을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함.

1) 의무적 자격급여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에 2007년까지 적용되었던 평균 보조율임.

## □ 기초노령연금 부당 지급 시정 필요<sup>2)</sup>

-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연금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총 26,226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22억91백만원이 환수조치 되었음.

2008년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유형            | 발굴건수   | 환수결정액 |
|---------------|--------|-------|
| 사망            | 3,376  | 337   |
| 소득 및 재산초과     | 21,655 | 1,493 |
| 집행유예자 및 재소자 등 | 1,195  | 461   |
| 합계            | 26,226 | 2,291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7.

| 부처      | 실·국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 | 연금정책관 | 기초노령연금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김상우(788-4685)

2) 2008년 국정감사 및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7.

## 4 보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영유아 대상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등
- 사업예산

보육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2007      | 2008      | 2009      |
|--------------|----------------|-----------|-----------|-----------|
| 보육시설<br>운영지원 | 보육돌봄서비스        | 247,158   | 299,383   | 339,883   |
|              | 민간영아기본보조금      | 135,506   | 229,763   | -         |
|              | 민간유아기본보조금      | -         | 15,000    | -         |
|              | 민간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 135,506   | 10,000    | -         |
| 영유아<br>보육료지원 | 차등보육료지원        | 409,004   | 603,132   | 1,013,586 |
|              |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 130,307   | 125,512   | 135,600   |
|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32,403    | 31,281    | 49,040    |
|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21,891    | 47,926    | 83,942    |
| 보육시설<br>기능보강 | 보육시설확충         | 33,227    | 15,534    | 21,147    |
|              | 보육시설환경개선       | 8,502     | 8,505     | 21,147    |
| 보육인프라<br>구축  | 보육사업관리         | 262       | 364       | 1,153     |
|              | 중앙보육정보센터운영     | 315       | 400       | 400       |
|              | 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     | 1,163     | 1,540     | 1,640     |
|              |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  | 665       | 665       | 665       |
|              |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 1,235     | 1,314     | 1,314     |
|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285       | 250       | 250       |
|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60        | 60        | 60        |
| 계            |                | 1,157,489 | 1,390,629 | 1,669,827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9. 3.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방식 : 자치단체경상이전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보육료 지원사업의 효율성 개선

- 현행 차등보육료지원과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제도는 맞벌이가구나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면, 가구주 혼자 월 200만원의 소득을 버는 경우와 남편이 월 120만원, 부인이 월 80만원 벌어야 하는 경우나 동일한 액수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게 됨.<sup>1)</sup>
-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sup>2)</sup>는 소득계층이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여부 등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유인이 없음.<sup>3)</sup>
- 또한 기본보육료는 아동정원이나 교사 수에 비례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현원에 비례하여 제공되고 교사인건비와의 직접적 연계가 부족하므로 보육시설장이 임의대로 사용될 소지가 있음.<sup>4)</sup>
- 따라서 현행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영유아를 가진 부모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임. 차등보육료의 확대와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동일 예산으로 출산율과 기혼여성 노동공급 양자 모두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sup>5)</sup>

1) 조운영, “보육보조금의 효과 분석: 영아기본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29권 제3호, 2007.

2) 2009년부터 영유아기본보조금을 폐지하고 차등보육료로 통합하여 전자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하여 명칭만 ‘기본보육료’로 바뀐 채 사실상 기존의 기본보조금과 동일하게 보육시설에 지급됨.

3) 조운영, “보육보조금의 효과 분석: 영아기본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29권 제3호, 2007.

4) 김현숙,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 2008.

5) 김현숙,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 2008.

## □ 보육사업의 법적 근거 개선<sup>6)</sup>

-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보육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규정하고 보육시설은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비용이란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보육)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만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보육을 시설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대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 이외에, 「영유아보육법」 상의 보육에 대한 정의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정책관 | 보육지원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김상우(788-4685)

6)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 2008.10.

## 5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47조
- 사업예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07    | 2008    | 2009   |
|-------------|---------|---------|--------|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95,378  | 67,359  | 97,390 |
| 노인그룹홈 신축지원  | 5,600   | 5,600   | -      |
| 소규모다기능시설    | 14,262  | 14,162  | -      |
|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 28,755  | 14,353  | -      |
| 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 | 15,217  | 1,001   | -      |
| 계           | 159,212 | 102,475 | 97,390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9. 3.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간접)보조사업자(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재가서비스 이용 촉진 및 지역간 시설 불균형 해소<sup>1)</sup>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많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관계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결과를 초래함.<sup>2)</sup>
- 또한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의 시설충족률은 이미 100%를 초과하였으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46%에 머물고 있어 특정지역의 과잉설치로 인한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음.
- 부족한 요양시설 공급 문제는 먼저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는 과잉설치 지역에 대한 세밀한 관리 및 평가와 함께 시설충족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 등의 방안도 아울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해소를 통한 사업추진 활성화<sup>3)</sup>

-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지 선정을 비롯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실적이 저조함.<sup>4)</sup>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건축기간이 소요된다면 동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sup>5)</sup>
- 노인요양보호시설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 요양보호시설을 신축할 경우 그 지역의 이미지 형성이나 발전에 도움이

1) 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년도 결산 분석」, 2008.7.

2) 2007년 말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884개소(정원 4만 4천명)이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인 재가 노인시설은 1,408개소(정원 7만 3천명)로서 시설충족률은 각각 82.7%, 86.3% 수준이었으나, 지자체 실집행률은 33.2%에 머무름.

3) 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년도 결산 분석」, 2008.7.

4)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일부 지자체의 집행부진 사유조사 및 2003년 감사원 조사결과(보조금 집행률이 70% 미만인 22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주민반대로 사업지연),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시설 신축을 반대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5)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기본설계, 입찰, 공사계약, 준공까지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동절기, 우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임.

되는 공공시설을 동시에 제공하거나, 또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예산 예산집행절차 개선으로 지자체 실집행률 제고<sup>6)</sup>

- 동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설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이나, 지자체가 지방비 예산을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됨.
- 보조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체예산을 동 사업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예산집행 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지자체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완료토록 한 후, 중앙정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 밖에 사업대상기관 선정 시 전년도 사업의 실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고를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정책국 | 요양보험운영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김상우(788-4685)

6) 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년도 결산 분석」, 2008.7.

## 6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조직의 전문성 · 책임성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공적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의 기여금과 여유자산 운용수익을 통하여 조달되며, 여유자산 운용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연금가입자에게 미래소득을 담보
- 사업근거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 사업재정

2008년 공적연금기금 여유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           |      | 금융부문      | 부동산   | 복지 · 공공부문 | 기타수익사업 | 합계        |
|-----------|------|-----------|-------|-----------|--------|-----------|
| 국민<br>연금  | 운용평잔 | 2,349,732 | -     | 1,867     | -      | 2,351,599 |
|           | 수익금  | -84       | -     | -15       | -      | -99       |
|           | 수익률  | -0.004    | -     | -0.8      | -      | -0.004    |
| 공무원<br>연금 | 운용평잔 | 44,664    | -     | 100       | 18,781 | 63,545    |
|           | 수익금  | -2,197    | -     | 4         | 1,615  | -578      |
|           | 수익률  | -4.9      | -     | 3.5       | 8.6    | -0.9      |
| 사학<br>연금  | 운용평잔 | 65,861    | 1,341 | 4,313     | 17,936 | 89,451    |
|           | 수익금  | -3,073    | 64    | 216       | 1,148  | -1,645    |
|           | 수익률  | -4.7      | 4.8   | 5.0       | 6.4    | -1.9      |
| 군인<br>연금  | 운용평잔 | 5,127     | -     | -         | -      | 5,127     |
|           | 수익금  | -73       | -     | -         | -      | -73       |
|           | 수익률  | -1.4      | -     | -         | -      | -1.4      |
| 합계        | 운용평잔 | 2,465,384 | 1,341 | 6,280     | 36,717 | 2,509,722 |
|           | 수익금  | -5,427    | 64    | 204       | 2,763  | -2,395    |
|           | 수익률  | -0.2      | 4.8   | 3.3       | 7.5    | -0.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요구에 대한 각 연금관리공단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계산, 2009.

## □ 추진체계

- 관리운영주체 : 국민연금(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교육과학기술부), 군인연금(국방부)
- 재원조달 체계 :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여유자산 운용수익, 국고 보전금 등으로 재원 조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 전문성 강화

- 국민연금 자산운용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후적인 위험관리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함.
-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미국 및 국내 주식시장은 2008년 연초부터 약세장을 시현하였으며 2008. 6월에는 대폭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나, 기금운용위원회는 2008. 9. 26일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 2008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향후 기금운용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기금운용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개월 이전에 기금운용실적을 토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이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주식시장의 1일 변동 폭이 상당히 큰 위기상황에서는 적절한 의사결정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 하에 한 것이 아니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국민연금기금 주식운용 손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자 이에 대해 최소한 대응한 것에 불과함.
- 현재와 같은 기금운용체계 하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이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연금기금이 제대로 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수익률 제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운용조직 전문성 강화

- 2008년 공무원연금은 금융부문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 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거두었으며,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금리가 하락한 점을 감안할 경우 채권운용에서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과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채권 운용수익률과 기준수익률 차이는 국민연금기금 1.1%p, 공무원연금기금 -6.6%p, 사학연금기금 -3.1%p임.
- 공무원연금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순환보직에 의해 자산운용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은 금융시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외부 계약직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계약직 채용비율을 높여야 할 것임.

#### □ 사학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위험관리체계 강화

- 2008년도 사학연금의 자산운용수익률은 기준수익률이 4.6%p 상회하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의 대폭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투자자산 가치가 전년대비 12.7%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자금운용 실적이 저조함.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경제 전반적 충격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등의 구조조정이나 연금제도 개혁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 급증 등 사학연금에 대한 고유한 충격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자산 가치변화 및 추정손실액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2009).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정책실 | 연금정책관    | 국민연금재정과 |
| 행정안전부   | 인사실     | 성과후생관    | 연금복지과   |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지원국   | 학교자율화추진관 | 교직발전기획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김성은(788-4637) · 김대철(788-4633)

## 7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비용에 대한 국고편성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 사업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사업재정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 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합 계   |
|-----------|-------|---------|-------|
| 수입        | 6,027 | 2,662   | 8,689 |
| 보험료       | 4,770 | —       | 4,770 |
| 정부지원금     | 1,207 | 1,661   | 3,868 |
| 장기요양국고지원금 | 1,207 | —       | 1,207 |
| 의료급여부담금   | —     | 2,661   | 2,661 |
| 기타        | 50    | 1       | 51    |
| 지출        | 3,541 | 2,008   | 5,549 |
| 보험급여비     | 2,497 | 1,817   | 4,314 |
| 관리운영비     | 1,044 | 191     | 1,235 |
| 당기수지      | 2,487 | 654     | 3,141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도 제9기 결산보고서」, 2009

#### □ 추진체계

- 관리운영주체 : 보건복지가족부(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관장자),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 재원조달 체계 :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비용에 대한 국고편성

- 2008년 노인장기요양비용(총 8,236억원) 중 지방 부담(2,574억원)이 국고 부담(1,207억원)의 2.1배에 달하며, 기초생보법적용대상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비용 부담이 2,496억원으로 총 지방 부담의 96.3%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2005년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시(분권교부세 신설) 포함된 ‘노인시설운영지원사업’의 수요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체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인 만큼 타 노인복지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함.
-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 비용에 대한 가중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시설운영지원사업’ 등 3개 생활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2009).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 노인정책관 | 요양보험제도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김성은(788-4637)

## 8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 복지사업 추진 지양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신용회복대여금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본인의 납부보험료를 담보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채무상환금 대여를 저금리로 해주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소외계층 새출발을 지원하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중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 사업근거 : 「국민연금법」
- 사업재정

2008년 신용회복대여금사업 현황

(단위: 억원, %)

| 예산액 | 전용    | 예산현액(A) | 실집행액(B) | 실집행률(B/A) |
|-----|-------|---------|---------|-----------|
| 0   | 3,885 | 3,885   | 186     | 4.8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설명», 2009. 6.

#### □ 추진체계

- 관리운영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공단
- 재원조달 체계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으로부터 전용, 저금리 대여에 따른 이차보전은 국고보전(50%), 산업은행이 부실채권 관리기금 배당금 일부를 기부한 금액(25%), 국민연금(25%)으로부터 충당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정부 복지사업 추진 지양

- 지역가입자의 연체율이 높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용회복대여금 사업은 저소득층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의 미래소득 보장이 최우선 목표인 연금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채무상환금 대여를 하는 것은 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임.
- 신용회복대여금 사업은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므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이자보전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동 대여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당초 계획한 3,885억원 중 4.8%인 186억원만 대여되었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가입자의 미래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기금을 정부 복지사업, 특히 실효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사업에 활용하는 신용회복대여금 지원과 같은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이와 같은 신규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2009).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정책실 | 연금정책관 | 국민연금정책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김성은(788-4637)

## 9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복지관련 자격급여 부정수급과 지방공무원의 횡령, 각종 돌봄서비스 등의 중복수혜 문제가 부각됨으로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대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복지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                               |               | 2005      | 2006       | 2007       | 2008       | 연평균<br>증가율 |
|-------------------------------|---------------|-----------|------------|------------|------------|------------|
|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                 |               | 8,491,686 | 10,133,889 | 11,659,413 | 16,303,308 | 24.7       |
|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사업예산              |               | 4,947,853 | 6,036,986  | 7,816,886  | 11,164,576 | 31.4       |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예산(A)            |               | 4,881,909 | 5,971,518  | 7,729,404  | 10,989,347 | 31.3       |
| 시군구 공무원                       | 복지담당<br>일반행정직 | 5,054     | 5,594      | 6,856      | 5,802      | 6.0        |
|                               | 복지전담          | 2,425     | 3,105      | 3,560      | 3,710      | 15.6       |
|                               | 소계(B)         | 7,479     | 8,699      | 10,416     | 9,512      | 9.1        |
| 읍면동 공무원                       | 복지담당<br>일반행정직 | 848       | 4,849      | 5,980      | 3,849      | 153.2      |
|                               | 복지전담          | 6,442     | 6,443      | 6,058      | 5,946      | -2.6       |
|                               | 소계(C)         | 7,290     | 11,292     | 12,038     | 9,795      | 14.3       |
| 복지공무원 1인당<br>사회복지분야<br>국고보조예산 | A/B           | 653       | 686        | 742        | 1,155      | 23.0       |
|                               | A/C           | 670       | 529        | 642        | 1,122      | 25.0       |

주: 국고보조사업예산은 국고 기준이고, 매칭지방비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가족부를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 추진체계

- 2005~2008년 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예산은 31.3% 증가하였으나,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각각 15.6%, -2.6%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복지예산은 2008년의 경우 각각 12억원, 11억원으로 시간이 갈수록 복지담당 지방공무원의 부담이 가중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회복지무요원 등 대체인력을 통한 복지전담인력 보충방안 마련

-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에 발표하였음.
- 그러나 본 종합대책에는 실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신규인력 충원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시군구 및 읍면동 일선 복지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례관리 등을 통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만약 신규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회복지요원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보건복지가족부의 감시·통제기능 강화 필요

- 인력 문제 이외에 최근 복지관련 자격급여 대상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들의 횡령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와 광역지자체의 감시·통제기능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 제도개선 노력 필요

- 예산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한, 전자바우처방식과 같이 공공부문의 영역인 복지 서비스에 민간부문의 개입을 통해 예산절감과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 및 민간자원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복지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수많은 복지서비스가 발생한 관계로, 수혜대상자 별로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통폐합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정책실 | 복지정책관 | 지역복지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김대철(788-4633)

## 10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부담완화 필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정부는 2004년 149개의 국고보조사업(67개 복지분야사업 포함)을 지방이양하면서 그 재원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
-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의 평균증가율(9.6%)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 증가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지출수요를 지자체가 충당하기 어렵고,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 내포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예산추이

(단위: 십억원, %)

|            | 이양 전      |           |           | 이양 후      |           |           | 연평균<br>증가율 |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총예산(A)     | 91,115    | 97,525    | 98,892    | 107,062   | 115,472   | 111,986   | 6.1        |
| 사회복지예산(B)  | 8,648     | 9,426     | 10,667    | 12,885    | 15,322    | 17,282    | 15.5       |
| 비율(B/A)    | 9.5       | 9.7       | 10.8      | 12.0      | 13.3      | 15.4      | -          |
| 국고보조사업(C)  | 7,038     | 7,446     | 8,751     | 9,505     | 11,588    | 13,549    | 13.5       |
| 비율(C/B)    | 81.4      | 79.0      | 82.0      | 73.8      | 75.6      | 78.4      | -          |
| 국고         | 4,949     | 5,155     | 6,103     | 6,498     | 7,869     | 9,250     | 12.5       |
| 지방비        | 2,089     | 2,291     | 2,649     | 3,007     | 3,719     | 4,299     | 15.6       |
| 국고:지방비     | 70.3:29.7 | 69.2:30.8 | 69.7:30.3 | 68.4:31.6 | 67.9:32.1 | 68.3:31.7 | 69.1:30.9  |
| 지방이양사업(D)  | 925       | 1,043     | 1,295     | 1,682     | 1,920     | 2,248     | 20.2       |
| 비율(D/B)    | 10.7      | 11.1      | 12.1      | 13.1      | 12.5      | 13.0      | -          |
| 국고/분권교부세   | 422       | 491       | 611       | 553       | 696       | 773       | 14.3       |
| 지방비        | 503       | 552       | 685       | 1,129     | 1,225     | 1,475     | 26.8       |
| 분권교부세: 지방비 | 45.6:54.4 | 47.1:52.9 | 47.2:52.8 | 32.9:67.1 | 36.2:63.8 | 34.4:65.6 | 41.8:58.2  |

자료: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2008. 4)를 토대로 재구성

## □ 추진체계

- 지방이양사업의 주요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한시 운영한 후,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예정이므로 2009년 내에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
- 제시된 대안들은 현행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일정기간 분권교부세제도를 존속시키거나, 복지분야 67개 지방이양사업 모두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사회복지교부금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새로운 자주재원 도입으로 인한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 필요

-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임. 이에 따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킨다면 분권교부세도 당초 계획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비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증가하는 지자체의 복지재정부담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완화방안 마련

- 만약 이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상관없이 분권교부세의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면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2004년도 분권교부세 신설과 더불어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교부금 신설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정책실 | 복지정책관 | 지역복지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김대철(788-4633)

## 11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사업의 단속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내용 :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단속 추진 (2008년 연3회 실시)
- 사업근거 : 「약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 시·도(시·군·구)
- 사업예산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8 | 2009 | 증감  |
|------------------|------|------|-----|
| ○ 의약품 등 품질·유통 관리 | 341  | 322  | △19 |
| - 의약품 GMP* 선진화   | 256  | 233  | △23 |
| - 기획합동단속 실시      | 85   | 89   | 4   |

\*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 1.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의약품 부적정 판매 등의 사례 단속 강화

- 2008년 3차례에 걸친 의약품 기획합동단속<sup>1)</sup> 결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발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

1) 1차 기획합동감시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오·남용우려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여부,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병·의원에서 오·남용우려 의약품 원내처방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음. 2차 기획합동감시에서는 한약재도매업소·약조상 등에서의 불법 한약재 유통행위, 향정 식육억제제 및 메칠페니테이트 제제 취급업소 점검, 오·남용우려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음. 3차 기획합동감시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한약재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음.

지하였음. 불법 의약품의 유통 관리 및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의약품 관리체계 수립 및 단속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문제발생 예상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정·불량약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합동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의약품 기획합동감시 점검실적 및 결과

| 구분 | 주체      | 인력  | 기간(2008년)   | 점검업소  | 적발업소 | 적발률(%) |
|----|---------|-----|-------------|-------|------|--------|
| 1차 | 식약청/지자체 | 83  | 6.18 ~ 6.22 | 448   | 114  | 25.4   |
| 2차 | 본청/지방청  | 26  | 9.17 ~ 9.19 | 112   | 4    | 3.6    |
| 3차 | 지방청/지자체 | 117 | 10 ~ 12월    | 556   | 81   | 14.6   |
| 계  |         | 226 |             | 1,116 | 199  | 17.8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 부처       | 실·국    | 팀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약품안전국 | 의약품관리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 12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내용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검사업무에 대한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사능력 향상 도모(정기감독, 특별감독)
-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4조, 제31조 등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 시·군·구
- 사업예산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정비 및 지도·점검은 별도 사업 미편성(2009년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점검 관련 예산은 수행 여비 등 6,100만원 편성)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

- 2008년 말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68개 검사기관 중 39.7%인 2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2개 기관은 지정취소되었으며, 18개 기관은 검사업무정지, 7개 기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2009).

#### □ 성과지표의 개선

-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동 사업은 관리과제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성과지표인 ‘민간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결과’는 2008년까지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평가결과를 나타냈으

나, 2009년부터는 새로 도입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분야 검사기관의 검사 능력 평가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만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의약품 등 기타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동 성과지표의 2009년도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81%로 설정하였음.<sup>1)</sup>
- 하지만 시험검사기관의 품질 강화를 이끌어내고 각 기관별 성과 추이를 점검·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특성 및 평가역량이 각각 상이한 만큼 전체 기관의 평가결과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기관별 성과지표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식품위생검사기관 정비지도점검 사업 성과관리 계획 현황

| 관리과제명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      |      |
|---------------------------|----------------------------------------|--------------|------|------|------|
|                           |                                        | '06          | '07  | '08  | '09  |
| ○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 | 민간시험검사기관(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검사능력평가 결과 | 67.8         | 77.0 | 91.8 | 81.0 |

\* 측정산식은 (‘양호’ 이상 평가검사기관/검사능력관리 평가기관)×100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5.

| 부처       | 실·국     | 과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위해예방정책국 | 검사제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1) 2006, 2007, 2008년도 실적의 평균치+2.1%

## 13 식품안전 관련 기준 및 규격의 조속한 제·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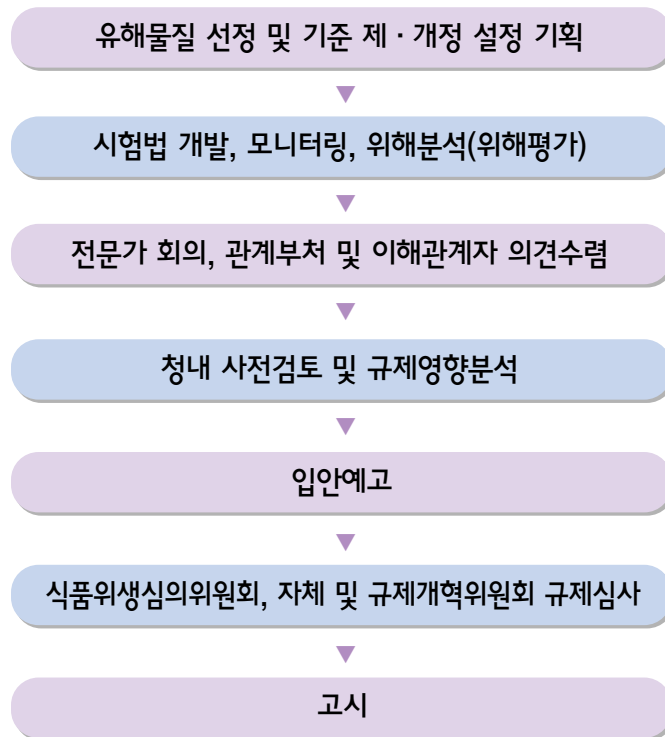
### 가. 제도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공전을 작성·보급
-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 제14조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청

#### □ 추진절차

〈기준 제·개정 절차〉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식품 공전의 제·개정 필요

- 최근 수입식품 증가, 새로운 원료나 첨가물 포함 식품 증가 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관리 차원에서 식품기준·규격의 개정 및 보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공전을 작성·보급할 의무가 있음.

식품 기준·규격 정비 현황

(단위 : 건수, %)

|      | 검토상황  |       |     | 조치사항    |      |         |          |
|------|-------|-------|-----|---------|------|---------|----------|
|      | 대상 수  | 검토완료  | 진행률 | 대상 수(A) | 조치 중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 식품분야 | 2,531 | 2,531 | 100 | 717     | 339  | 174     | 25       |

주 : 검토대상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기준이 자기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며, 조치대상은 기준설정이나 개정 등의 고시가 필요한 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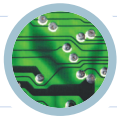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그러나 식품공전 제·개정 작업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 즉, 검토대상이 되는 식품품목에 대한 검토 작업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검토결과 기준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717건 중 실제로 고시가 완료되어 조치가 이루어진 대상은 174건에 그치고 있음(조치율 25%).<sup>1)</sup>
- 향후 식품안전 관리 기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사업, 시험법 마련, 기준·규격 재설정과 고시개정 작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2009).

| 부처       | 실·국   | 부     | 과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안전국 | 식품기준부 | 식품기준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조치대상 717건 중 513건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이며 현재 입안예고된 상황임.



## IX 환경노동위원회

### 1 쓰레기 소각시설사업의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지역별 소각시설 확충으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매립폐기물 감량화로 매립지의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 사업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2조
- 사업예산

쓰레기 소각시설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세부 사업명         | 2007 까지 | 2008 결산 | 2009 예산 |
|----------------|---------|---------|---------|
| 충주쓰레기소각시설      | 14      | 14      | 26      |
| 경기이천쓰레기소각시설    | 365     | 93      | -       |
| 경남마산쓰레기소각시설    | 94      | 30      | 29      |
| 경북구미쓰레기소각시설    | 6       | 40      | 20      |
| 전북익산쓰레기소각시설    | 45      | 88      | 35      |
| 충남아산쓰레기소각시설    | 25      | 30      | 27      |
| 충북청주쓰레기소각시설    | 110     | 80      | 67      |
| 경기포천쓰레기소각시설    | 36      | 12      | 21      |
| 울산성암쓰레기소각시설    | 7       | 13      | 60      |
| 기타 쓰레기처리시설(소각) | 6,837   | 147     | 154     |
| 계              | 7,538   | 547     | 438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수혜자 : 지역주민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광역시설 : 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50%
- 단독시설 : 시·군 30%, 도서지역 5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 효율 제고 필요

- 환경부 보도자료<sup>1)</sup>에 의하면 '08년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여열을 난방열 및 전력생산 등으로 재활용하여 연간 2,678억원의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함.
- 그러나 동 자료를 보면, 10% 정도로 여열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소각장도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 이용으로 인한 수익 중에서 내역이 불확실한 '기타 이용'이 1,3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산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의 판단에 따라 열(에너지)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 폐기물 고형연료화(RDF)의 경제성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우 RDF<sup>2)</sup>를 활발히 추진하였으나, 막상 생산된 고형연료의 수요처가 부족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하거나 아예 불법 매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현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하에

1) 환경부,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을 에너지로 재활용', 2009.5

2) RDF(Refuse Derived Fuel)는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라는 뜻으로 최근 리사이클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 회수시스템임.

폐기물자원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 확대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엄밀한 수요추정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 폐기물자원화로 인한 새로운 오염 유발 우려

- 폐기물 전처리 과정(MBT)<sup>3)</sup>을 거쳐서 고형연료가 일단 생산되면 폐기물이 아닌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나 모니터링이 어려움.
- 이로 인해 RDF의 제조 및 소비단계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중금속 물질 등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새로운 비점오염원을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환경부 | 자원순환국 | 생활폐기물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김상우(788-4685)

3)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는 폐기물의 최종 처분 전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설임. 분리된 유기성분은 퇴비화, 가연성분은 RDF발전 등으로 에너지를 회수함.

## 2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부처간 연계성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개발과 경제활동 등으로 단절된 생태계의 순환성과 연속성을 복원하며, 물길을 따라 내륙 발원지로부터 연안에 이르는 종적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횡적 네트워크를 구축
- 사업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9조의2, 제69조  
4대강 수계법(한강법 제13조, 낙동강법 제26조, 금강법 제24조, 영산강법 제2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 사업예산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07   | 2008   | 2009   |
|----------|--------|--------|--------|
| 생태하천복원사업 | 71,200 | 81,111 | 95,027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광역시 50%, 시·군 70%, Matching Fund)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부처간 연계성 강화 필요

- 하천관리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에 분산되어 부처의 역할에 따라 상이한 내용의 하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sup>1)</sup>
-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이 별도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생태계 복원, 파괴의 악순환 및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환경노동위원회 '07년 결산심사).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협의 없이 유사한 지방하천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사한 지방하천관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집행, 사업대상 선정 등의 이원화로 종합적·효율적인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함.<sup>2)</sup>
-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과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지침'은 자연형 호안조성, 식생대 조성, 여울·소 및 어도설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등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sup>3)</sup>

### □ 사업 부실로 인한 하천 생태 훼손 우려

- 지자체의 친수공간 조성욕구의 증가로 인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하천의 생태적 복원보다는 하천의 조경화와 공원화를 주목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하천의 생태가 오히려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함.<sup>4)</sup>
- 양재천의 경우처럼 자연 하천에 자연형 공법을 허술히 적용하여 홍수로 유실되거나, 하천의 만곡부분의 설계 부실로 호안토사가 매몰되고, 갯벌들을 버드나무로 잘못 식재한 후 하천 통수능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 환삼덩굴의 확산에 의해 갯벌들이 고사한 예들이 있음.<sup>5)</sup>

1)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분석(Ⅲ), 2007.10.

2) 감사원, 전략감사「지방하천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 2007.5.

3) 양 부처가 하천사업 추진방향, 사업내용 등을 담은 통합지침 마련을 추진중임.

4)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분석(Ⅲ), 2007.10.

5) 우효섭외 3인, 훼손된 하천의 복원: 자연복원의 시금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정보지 2000년 7월호(「김명진, 생태하천 복원 방안, 환경영향평가 제16권 제1호(2007)」에서 재인용)

- 현재 복원은 하천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하천, 수변구역, 유역 생태계를 잇는 생태네트워크에 대한 복원이 미흡하며, 유역단위의 토지이용계획,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오염총량관리, 전략환경평가 등과 연계성이 부족함.<sup>6)</sup>
-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이후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하천이 많아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미흡함.<sup>7)</sup>

| 부처  | 실·국    | 과      |
|-----|--------|--------|
| 환경부 | 물환경정책국 | 수생태보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김상우(788-4685)

6)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09.3) 제정을 통해 보완종이라고 함.

7) 국회,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 3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포스트-교토체제 하에서 구속적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청정개발체제(CDM),<sup>1)</sup>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인프라 구축.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과 자연생태계 교란 등 기후변화의 인간 및 환경영향에 대한 적절한 완화 및 적응대책 마련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 및 세부이행계획('08.12)
- 사업예산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07  | 2008  | 2009   |
|---------------|-------|-------|--------|
|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 4,946 | 7,423 | 30,075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환경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 · 민간보조

1)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개도국과 같은 비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구매,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기존의 사업 및 정책의 단순한 조합 탈피 필요

-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책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정책의 나열’ 수준인 점이 지적됨(환경노동위원회 ’07.2.21).
- 기후변화협약 3차 종합대책은 각 부처의 기존의 사업 및 정책이 편의적으로 망라된 단순한 사업들의 집단으로 판단됨. 기후변화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과제도 다수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에 포함됨.<sup>2)</sup>
- 환경부의 사업들 중에도 과제 내용이 모호한 사례가 보임.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성과목표1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의 단위과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은 과제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성과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구축 광역지자체 수」와 연관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 □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관련 정책 부족 개선

- 기후변화의 예측·적응·평가를 위한 추가예산증액 필요성이 지적됨(환경노동위원회 ’07.10).
- 국내 기후변화의 속도와 크기가 세계평균을 상회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국내 기후변화의 예측 및 적응관련 과제에는 전체 예산의 0.1%만 사용됨.<sup>3)</sup>

### □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 필요

- 2010년 우리나라 기후변화기술은 기술선도국의 64.9% 수준이고 기술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8년임.<sup>4)</sup>

2)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 2007.10

3)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 2007.10

4) 이상엽, 「2005년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과학기술부, 2006.

-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환경기술개발 분야에의 투자확대가 필요함(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 □ 온실가스 통계작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화·전문화 필요

- 배출계수는 통계작성 체계에 따라 시급한 분야부터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분야별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 적응방안 도출 등을 위한 관련부처 및 학제간 연구체계 구축이 필요함.<sup>5)</sup>
- 실질적인 기후변화의 사실을 다루는 IPCC<sup>6)</sup> 보고서의 집필진 중 국내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함.<sup>7)</sup>
- 특성화대학원에서 배출된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sup>8)</sup>

| 부처  | 실·국      | 과       |
|-----|----------|---------|
| 환경부 | 기후대기정책관실 | 기후대기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김상우(788-4685)

5) 기후변화협약대책실무위원회(산업자원부), 2006년

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임.

7)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 2007.10

8) 기후변화협약대책실무위원회(산업자원부), 2006년

## 4 주민지원사업(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실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재산권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참여 유도
- 사업근거 : 4대강 수계법(한강법 제11조 및 제22조, 낙동강법 제35조, 금강법 제21조, 영산강법 제32조)
- 사업예산

4대강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수계별     | 2007년까지 | 2008예산  | 2009예산  |
|---------|---------|---------|---------|
| 한강      | 538,171 | 72,866  | 72,866  |
| 낙동강     | 145,191 | 26,832  | 26,650  |
| 금강      | 74,063  | 17,780  | 17,780  |
| 영산강·섬진강 | 60,562  | 13,525  | 13,525  |
| 계       | 817,987 | 131,003 | 130,821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
- 지원형태 : 출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광역적·중장기적 사업 추진 필요

- 주민지원사업이 단기·소액 위주여서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바, 보다 광역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방식도 일반지원보다는 특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sup>2)</sup>
- 현 주민지원사업이 마을별 단기적 숙원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지역별 이기주의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공공자산인 자연보존과 관리의 상대적 소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전체의 공리증진과 수계보전의 조화를 추구하고 지역환경에 적합한 중장기적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함.<sup>3)</sup>

- 사업대상자기준 조정,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의 도입 등을 통해 장기적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sup>4)</sup>

#### □ 사업비 배분 가중치 조정 필요

- 법적규제 및 행정규제를 고려하여 사업비 배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sup>5)</sup>
-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을 위한 토지면적 가중치가 규제의 정도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사업비 배분을 위한 가중치를 규제의 정도에 상응하게 바뀌어야 함.<sup>6)</sup>

#### □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주민지원사업 만족도(%)」는 본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없이, 단순히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70%) 또는 비대상자(30%)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본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임.
- 특히, 정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자발적인 상수도 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대상지역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을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본 과제의 성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임.

| 부처  | 실·국      | 과     |
|-----|----------|-------|
| 환경부 | 상하수도정책관실 | 수도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김상우(788-4685)

1) 주민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되는데, 특별지원비는 총 주민지원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한강수계위원회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함.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주민들의 피해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됨. 일반지원비는 다시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됨.

2) 2007년 국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 필요성(정주철)”, 주민지원사업 중장기계획 교육 워크숍, 2007.11

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민지원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04.3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민지원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04.3

6) 경기개발연구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12

## 5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의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일상생활 및 업무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모아서 처리하고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강우시 지역에 내린 우수를 신속히 하천으로 배출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3조, 제32조, 제35조, 제63조
- 사업예산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07      | 2008      | 2009      |
|----------------|-----------|-----------|-----------|
| 댐상류하수도시설       | 132,930   | 198,300   | 206,517   |
| 연안지역하수처리장      | 17,257    | 27,409    | -         |
| 분뇨처리시설         | 21,455    | 17,864    | 16,564    |
| 오수처리시설         | 1,722     | 1,722     | 1,636     |
| 하수관거정비         | 436,500   | 400,329   | 499,033   |
| 대구현풍하수처리장      | 4,063     | 17,877    | 10,185    |
| 부천굴포천고도처리      | 414       | 7,591     | -         |
| 안산고도처리시설       | 3,128     | 5,173     | 4,343     |
| 오산제2하수처리장      | 66        | 4,213     | -         |
| 수원서호하수처리장      | -         | 2,409     | 15,184    |
| 기타하수처리장설치      | 521,449   | 458,449   | 532,835   |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112,946   | 90,357    | 95,632    |
| 하수도차관원리금상환     | 2,831     | 2,532     | -         |
| 하수도차관이자상환      | 495       | 195       | -         |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 79,518    | 89,687    | 102,460   |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제주) | 2,474     | 2,474     | 2,609     |
| 계              | 1,337,248 | 1,326,581 | 1,486,998 |

주: 환경부가 예결위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자료」의 세부사업별 예산을 집계한 것으로 ‘하수도 통계’상의 ‘중앙정부지원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지방비 Matching Fund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하수도사업 구조<sup>1)</sup>

- 자료포락분석(DEA)<sup>2)</sup>을 통해 광역시를 제외한 하수도공기업의 규모 효율성지수를 도출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개 광역시의 평균 하수처리인구가 기타지역의 그것에 비해 거의 40배나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대상을 광역시까지 포함한 전체 하수도사업자로 확대하였을 경우 규모의 비효율성이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규모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의 하수도사업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 하수도사업의 규모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 등 법규의 개정과 물관리체계의 개편을 통해 하수도사업의 수평적·수직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sup>3)</sup>

1) 국회예산정책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평가, 2009.4

2) Farrell(1957)의 변경효율성 측정개념에 입각하여 각 의사결정단위의 상대적 효율성은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들이 경험적으로 형성하는 효율 변경과의 관계에서 측정될 수 있다고 보고, 효율성 측정지표들을 이러한 변경 또는 표면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론임. 간단히 설명하면, 가장 효율적인 투입요소의 조합(등량곡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환경부는 현 하수도법체계의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 등의 이유로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현재 광역하수도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하수도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함.

## □ 비효율적인 하수도시설 투자 및 운영<sup>4)</sup>

- DEA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준거집단)과 비교하여 각 하수도공기업이 효율적인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입요소를 줄여야 하는지를 도출한 결과,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투입요소의 40% 정도가 과다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하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인원 중에 유휴 인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비용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의 총 영업비용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46.2%를 차지함.
- 감가상각비 등 서비스 공급량과 관계없는 경직적인 비용이 늘어날 경우 하수도서비스를 한 단위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하수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하수도요금과 공급단가의 격차를 확대시켜<sup>5)</sup> 하수도공기업의 적자를 누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수요 추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의 확대를 통해 하수도산업의 경쟁기반을 확대하며, 셋째, 「하수도법」 제6조에 근거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조정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부처  | 실·국      | 과     |
|-----|----------|-------|
| 환경부 | 상하수도정책관실 | 생활하수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김상우(788-4685)

4) 국회예산정책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평가, 2009.4

5) 공공요금 인상 자제로 인하여 하수도요금의 인상률이 공급단가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임.

## 6

## 실업급여비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모색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현장으로 조속한 복귀 유도
-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내지 제55조, 동법 제64조 내지 제68조
- 결산 및 예산 현황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사업 결산 및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 2007 결산 | 2008 결산 | 2009 예산(추경기준) |
|----------|---------|---------|---------------|
| • 구직급여   | 21,226  | 24,731  | 37,927        |
| • 취업촉진수당 | 3,105   | 3,917   | 3,976         |
| • 연장급여   | 901     | 458     | 6,745         |
| 합 계      | 25,232  | 29,106  | 48,648        |

자료: 노동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구직급여 : 피보험자(6개월 이상 가입)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일정기간(90~240일) 지급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 연장급여 : 재취업이 곤란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와 실업급여증 등의 중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지급을 결정하는 ‘특별연장급여’로 구성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급여비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성 해소 모색

- 2009. 7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각각 42.2만명, 3,900억원으로, 4월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각각 41.1%, 48.0%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신규 신청자 수가 5월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들 신규 신청자의 수급자격 인정 비중이 99.7%~99.8%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만명, %, 억원)

|                          | 2009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신규 신청자 수<br>(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12.8<br>(36.2)  | 10.8<br>(77.0)  | 10.9<br>(49.1)  | 9.6<br>(34.8)   | 7.9<br>(30.6)   | 8.3<br>(36.7)   | 9.2<br>(22.7)   |
| 수급자 수<br>(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35.4<br>(30.4)  | 40.0<br>(44.6)  | 44.6<br>(53.5)  | 45.5<br>(52.6)  | 43.5<br>(51.6)  | 43.2<br>(51.2)  | 42.2<br>(41.1)  |
| 지급액<br>(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2,761<br>(26.1) | 3,103<br>(41.4) | 3,732<br>(64.3) | 4,058<br>(63.3) | 3,714<br>(51.6) | 3,868<br>(63.6) | 3,900<br>(48.0) |

자료: 노동부

- 2009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sup>1)</sup>의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2008년의 3,661억원<sup>2)</sup>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누적적립금 수준을 노동부가 목표로 하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1.5배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sup>3)</sup>

1)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급여사업(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으로 구성됨.

2) 2008년도 결산결과 수입 2조 8,629억원, 지출 3조 2,290억원으로 당기수지 적자는 3,661억원이며, 누적적립금은 5조 667억원임.

3)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2009년도 당기수지 적자(2009. 6월말 현재 추정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는 2조 3,764억원(수입 2조 9,185억원, 지출 5조 2,949억원), 누적적립금은 2조 6,903억원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2009년 하반기 들어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2009년 추정 신규사업인 「특별연장급여」(6,606억원) 지급을 위한 중대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예상되는 당기수지 적자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재정누수 방지 대책 마련

- 실업급여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하고 적극적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함으로써,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재취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급여비 지출증가를 최소화할 필요 있음.
- 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에는 부정수급자 수도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수급 적발시스템을 정비·보완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환수업무 강화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대책도 보다 강화할 필요 있음.<sup>4)</sup>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노동부 | 고용정책실 | 고용서비스정책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이진우(788-4638)

4) 2008년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액은 1만 9,033명, 86억원에 달하고, 2005~2008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액 증가율은 각각 25.3%, 48.6%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7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의 성과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내역 :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사업」(2009년 99억 4,700만원)의 일부 사업(세사업)으로 추진
- 사업목적 : 방송의 광역성, 파급력 등을 활용하여 지방거주자,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다양한 직업-고용-일자리 정보제공
-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2조
- 결산 및 예산 현황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사업 결산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2008 결산 |        |       |       |     | 2009  |
|---------------------|---------|--------|-------|-------|-----|-------|
|                     | 당초계획    | 계획변경   | 계획현액  | 지출액   | 불용액 | 당초계획  |
| •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 6,274   | -1,626 | 4,646 | 4,605 | 41  | 6,274 |
| - 방송프로그램제작및송출       | 5,716   | -1,820 | 3,896 | 3,859 | 37  | 5,956 |
| - 직업방송 운영비          | 267     | 194    | 461   | 461   | -   | 268   |
| - 인터넷 시스템개선         | 290     | -      | 290   | 286   | 4   | 50    |

자료: 노동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프로그램 송출사업 : ‘한국경제 TV’(WOW TV)와 송출계약을 맺고, 1일 3시간씩(월~금요일) 주요 방송시간대(오후 6~9시)에 4개 제작사의 프로그램 송출
- 기 송출 프로그램의 VOD 서비스 : 직업방송 홈페이지([www.worktv.or.kr](http://www.worktv.or.kr)) 운영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성과 제고

- 「AGB 닐슨 미디어리서치」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송출계약을 맺은 한국경제 TV에서 직업방송이 송출되는 주요 방송시간대 시청률이 한국경제 TV 연평균 시청률<sup>1)</sup>과 비슷한 수준인 0.197%에 불과함.<sup>2)</sup>
- 2008년 결산결과 운영비를 포함한 총 43억원이 투입<sup>3)</sup>된 동 사업의 목적이 방송의 광역성을 이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은 낮은 시청률로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국회에 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2009).

### □ 사업비 중복 지출 억제 노력

- 방송 송출계약사인 한국경제 TV는 기존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VOD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VOD 콘텐츠를 별도의 사업비<sup>4)</sup>를 지출하여 직업방송 홈페이지(www.worktv.or.kr)에서도 관리함.
- 이에 더하여 직업방송 홈페이지에 등록된 콘텐츠의 시청 실적도 매우 미미함.<sup>5)</sup>

### □ 사업추진 여부 또는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필요

- 인력공단은 직업방송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동 방송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VOD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방송의 광역성 측면에서 사업성과 저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비 중복 지출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여부 또는 현재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노동부 | 고용정책실 | 직업능력정책관 | 직업능력정책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이진우(788-4638)

1) 한국경제 TV의 2008년 평균시청률은 0.167%로 전체 케이블방송사 중 시청률이 28위에 불과함.

2) 동 사업이 시작된 2002년 EBS, 2005년 Job TV에 송출계약을 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시청률 저조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음.

3) 직업방송 송출사업은 2002년 사업시행 이후 2008년까지 총 286억원 투입됨.

4) 인력공단은 2007년에 직업방송 홍보와 VOD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660만원을 홈페이지 구축에 지출하였고, 2008년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2.9억원 지출함.

5) 직업방송 홈페이지의 누적 방문자 회수를 보면, 2009. 6. 15일 현재 총 377개 VOD 콘텐츠 중에서 30회 이상을 기록한 20개 콘텐츠를 제외한 357개 콘텐츠의 누적 시청회수는 평균 10회 미만에 불과함.

## 8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해외취업을 등 성과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해외취업 희망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구인업체를 발굴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학·직무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노동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통해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
- 사업근거 : 「직업안정법」 제18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12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 사업예산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글로벌취업지원사업 | 10,415 | 11,129 | 20,274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부출연금)
- 사업추진절차
  - 해외취업연수 : 연수기관 모집 → 선정위원회 개최/승인 → 해외취업희망자 모집공고 → 연수대상자 선발, 교육(연수기관)/연수비지원 및 집행관리 → 연수수료자 대상 해외취업 면접지원 → 채용 확정자 대상 고용계약체결·비자발급·출국지원
  - 해외취업알선 : 연수기관 선정 → 연수희망자 모집공고 →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 실시 → 연수수료자에 대한 해외취업 알선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해외취업을 등 성과제고 방안 마련

- 동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는 구직자, 구인자, 취업자 등 사업참여 인원임. 최근 5년간의 구인·구직 알선 인원 현황 등을 살펴보면 알선취업률은 평균 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수취업률도 2007년도에 50%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구인·구직 등 취업알선  
(\*09.5. 30 현재)

(단위: 명)

| 연 도  | 구직등록    | 구인인원   | 알 선    | 취 업   |       |       |     |
|------|---------|--------|--------|-------|-------|-------|-----|
|      |         |        |        | 계     | 알선취업  | 연수취업  | 인턴  |
| 계    | 120,949 | 13,164 | 30,528 | 6,620 | 1,352 | 4,806 | 462 |
| 2004 | 34,005  | 2,663  | 5,095  | 571   | 162   | 409   | -   |
| 2005 | 17,862  | 2,763  | 5,283  | 1,621 | 249   | 1,021 | 351 |
| 2006 | 24,429  | 1,529  | 5,967  | 1,446 | 328   | 1,060 | 58  |
| 2007 | 19,892  | 3,057  | 6,029  | 1,548 | 300   | 1,195 | 53  |
| 2008 | 24,761  | 3,152  | 8,154  | 1,434 | 313   | 1,121 | -   |

자료: 노동부

해외취업연수의 해외취업률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실 적   |       |        |       |     |        |        |
|-------|-------|-------|--------|-------|-----|--------|--------|
|       | 입학    | 중도 탈락 | 중도 탈락률 | 수료    | 연수중 | 취업(출국) | 취업률(%) |
| 2004년 | 1,564 | 101   | 6.5    | 1,463 |     | 938    | 64.1   |
| 2005년 | 1,662 | 91    | 5.5    | 1,571 |     | 1,024  | 65.2   |
| 2006년 | 1,992 | 197   | 9.9    | 1,795 |     | 1,196  | 66.6   |
| 2007년 | 2,549 | 370   | 14.5   | 2,179 | 0   | 1,130  | 51.9   |
| 2008년 | 4,163 | 710   | 17.1   | 2,619 | 834 | 426    | 16.3   |

자료: 노동부

- 해외취업연수사업의 중도탈락률은 2005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중도탈락률이 17.1%에 이르고 있음. 중도탈락자에 대한 연수비 지원금 환

수제도를 '07년도부터 폐지함에 따라 중도탈락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된 점, 해외 취업 구직자의 국내취업으로의 선회<sup>1)</sup>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 해외취업 구직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이 국내취업으로 선회하게 되는 것은 해외취업지원이라는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해외취업연수자의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수취업의 경우 취업 분야의 많은 부분을 일본 IT 업계에 의존(2008년도 31.6%) 하고 있고, 알선에 의한 취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인업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단순히 등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연도별 구인인원도 2~3천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 향후 신규 해외 구인처 개척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과       |
|-----|----------|---------|
| 노동부 | 고용서비스기획관 | 청년고용대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1) 현재 해외취업 연수과정은 해외취업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국내취업은 중도탈락으로 산정하고 있음.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실현
-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일자리창출의 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및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사업예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사회적일자리창출 | 121,541 | 139,772 | 188,463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법인(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 사회적일자리 : 공모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또는 법인),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채용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837천원('09년)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8.5%를 1년간 지원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해 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인건비, 시설비 대부,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등 지원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자립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기업 수의 확대 시 정부재정부담 가중 등의 우려가 있음.
- 중앙정부,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의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과      |
|-----|--------|--------|
| 노동부 | 고용정책관실 | 사회적기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 1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증가대책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고령자,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도모
-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사업예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146,641 | 130,765 | 115,056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고용지원센터
-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취약계층
- 지원조건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장기구직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5만원~60만원씩 1년간 지원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부정수급 증가 대책 마련

- 사업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08년도의 경우 1,169건의 부정수급에 부정수급액이 41억 4,100만원에 이르고 있음.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현황(2007~2008년)

(단위: 건, 백만원)

|             | 2007 |       | 2008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고용안정사업]    |      |       |       |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691  | 4,144 | 1,169 | 4,141 |
| 고용유지지원금     | 23   | 151   | 34    | 216   |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 23   | 56    | 34    | 86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 12   | 40    | 23    | 58    |
| 교대제전환       |      |       | 2     | 42    |
| 직장보육지원      | —    | —     | 1     | 17    |
| 육아휴직장려금     | 5    | 2     | 20    | 11    |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 5    | 22    | 3     | 0     |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 —    | —     | 2     | 0     |
| 고령자고용촉진     | 5    | 0     | 10    | 1     |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 2    | 3     | 6     | 0     |
| 출산후계속고용     | 1    | 0     | 2     | 0     |
| 재고용장려금      | 2    | 2     | 8     | 1     |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 | —    | —     | 1     | 0     |
| 소 계         | 769  | 4,420 | 1,315 | 4,574 |

- 부정수급의 주된 유형인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부정수급 유형의 87%)’를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조사기법 개발, 부정수급 자동경보지표의 보완, 부정수급액 환수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2008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부처  | 실·국      | 과        |
|-----|----------|----------|
| 노동부 | 고용서비스기획관 | 고용서비스지원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 1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합리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부담금 내용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가 의무고용률(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50만원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되, 1%미만 미고용인원에 대해서는 25만원 추가 부과
- 부담금 납부 특례
  - － 고용된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납부해야 할 부담금 총액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250,000원을 감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감액 및 유예
  - － 상시근로자 200명~299명 고용사업주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2 감액
  - － 상시근로자 100명~199명 고용사업주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2 감액
- 사업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사업예산

법정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법정부담금 | 153,245 | 176,790 | 168,384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기초액 산정 기준 합리화

-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에 의할 때, 의 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 으며 부담기초액은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 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의 평균액 을 기초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sup>1)</sup>
- 그러나 법에서 정한 특별비용<sup>2)</sup> 등의 평균을 기초로 부담 기초액을 산정하고 있지 못하며, 최근 5년간 '04, '05, '08년도에는 특별비용의 산정 작업조차 수행하지 않 았음. 이에 따라 부담기초액은 특별비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도 갖지 못한 채, '05년 도부터 50만원으로 고정된 채 운용되고 있음.
-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의 형평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동 부 담금액 산정의 합리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부담기초액의 산정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함.

###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주체별로 내역을 구분하여 보면, 공공기관 으로 분류된 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비율은 전체의 1~2%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sup>3)</sup>

1)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연도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이어야 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의해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장비 설치 비용, 고용관리 비용 외에 장애인을 고용하 기 위해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3) '06년도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절대치뿐만 아니라 비율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07년도부터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류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비율이 확대되 고 있는 것처럼 보임. 예를 들어 '06년도 자료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서울대학교 병원'이 '07년도 분류시부터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됨.

- 특히, 2년 연속하여 연도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으로서 장애인 고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국제방송교류재단<sup>4)</sup>, 코레일투어서비스(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sup>5)</sup>” 등은 타 기관에 비하여 특별히 장애인 고용에 애로를 보이는 분야라고 보기 힘들고, 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은 기관의 수입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 기금 출연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담기초액을 가산하여 부과<sup>6)</sup>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과      |
|-----|---------|--------|
| 노동부 | 고용평등정책관 | 장애인고용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남궁인철(788-4683)

4) '08년도 수입 예산 504억 5,000만원 중 방송발전기금 재원은 265억 6,600만원에 달함.

5) '09년도 수입 예산 272억 1,600만원 중 156억 7,700만원이 정부출연금임.

6) 현행 부담금 제도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사업주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그 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 차등이 없는 상황임.

# X 여성위원회



##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의 합리화 모색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사업(이하 '새일센터 사업')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가계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
- 사업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 사업예산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8 | 2009   |
|---------------------------------|------|--------|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 —    | 13,918 |
| — 주부인턴제 운영                      | —    | 4,656  |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 —    | 2,016  |
| — 취업설계사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    | 2,046  |
| — 직업교육 훈련비                      | —    | 5,000  |
|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간담회 개최 등 기타 운영비 | —    | 200    |

자료 : 여성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2009. 1.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여성부, 노동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 여성부(총괄) 및 노동부는 일반회계 및 기금을 통해 각각 40억원, 103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새일센터 지정수요 파악·추천, 센터 이용자 DB관리 및 센터 운영비 지원 업무를 수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 추진체계의 합리화

- 새일센터 사업 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여성부가 일반회계에서 20억원,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2억원을 투입하여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두 부처가 각각 인건비(여성부, 일반회계), 운영비(노동부, 기금)를 부담하는 것은 예산 운용 상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8).

### □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주부인턴제 운영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주부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개월에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함. 주부에게 경력형성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고용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부인턴에 대한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 정률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감각 및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국회 여성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8).

| 부처  | 실·국   | 과         |
|-----|-------|-----------|
| 여성부 | 여성정책국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 2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사업의 내실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내용 : 아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
-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예산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8년 결산 | 2009년 예산 |
|------------------------------|----------|----------|
| •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           | 3,170    | 7,048    |
| –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 63       | 64       |
| –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              | 107      | 104      |
| – 원스톱지원센터 중앙운영위원회            | 26       | 23       |
|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지원             | 1,750    | 6,827    |
| – 가정·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시설평가연구 등 | 482      |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 719      | –        |
| – 이주여성 여성폭력 대상별 남성교육         | 24       | –        |

자료 : 여성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여성부, 민간수탁기관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보조(국고보조율 100%)
- 여성부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사업운영 점검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등 민간수탁기관은 사업수행 및 운영실적 정산 보고 업무를 수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신속한 서비스 제공 강화

- 아동성폭력전담센터(전국 4개소, 서울, 영남, 호남, 경기 지역)<sup>1)</sup>의 2008년도 프로그램 대기자 수 및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한 결과, 상담지원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6~13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지원 서비스의 경우 9~17일인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여성위원회, 2009년도 예산 검토보고, 2008,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국정감사 쟁점사업」, 2008).
- 2008년 12월 경기도에 1개소가 신설되었고, 2009년 예산에 센터 추가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2009년도에 전북 등 6개소가 신설될 예정으로, 아동성폭력 지원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센터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전문성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필요 인원 충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성과지표의 세분화

- 동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및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서비스 만족도 점수의 평균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09년도 성과목표치는 82점임.
- 위와 같이 여러 시설의 만족도 점수의 평균값으로 관련시설들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시설에 따라서는 오히려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은 수준의 목표치가 설정되어 성과향상의 유인이 저하될 수 있으며,<sup>2)</sup> 시설별 성과 및 연도별 성과향상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각 시설의 전년도 실적에 비추어 성과지표 목표치를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부가 전문의료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자 만족도는 2008년에 87.6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원스톱지원센터 지표 등이 포함되면서 성과지표 목표치가 82점으로 설정되었음.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사업관련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 '09년도 목표치 산출근거                                                                       |
|---------|-------------|-----|--------------------------------------------------------------------------------------|
|         | '08         | '09 |                                                                                      |
| 이용자 만족도 | —           | 82  | '08년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만족도(87.6점)와 '07년 원스톱 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72.8%)를 반영해 평균 목표치 82점 설정 |

주 : 만족도조사 점수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및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등 4개 시설의 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균값으로 산출할 예정임.

자료 : 여성부,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 4.

| 부처  | 실·국   | 과     |
|-----|-------|-------|
| 여성부 | 권익증진국 | 인권보호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박애린(788-4681)

제 4장



# 행정사업 분야

- XI 법제사법위원회 • 263
- XII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69
- XIII 국방위원회 • 278
- XIV 행정안전위원회 • 288





# XI

## 법제사법위원회



### 1 법률구조사업의 내실화 도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 이유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통한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 사업근거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제4조, 제24조
- 사업예산

법률구조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법률구조 | 25,377 | 27,166 | 26,418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대부분의 예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지원됨)
- 수혜자 : 월 평균소득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높은 변호사 결원율에 대한 대책 마련

- 2009년 7월 현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정원 75명에 현원 50명으로 결원율이 33.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 이렇게 결원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정원대로 채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소속변호사들도 평균근속기간이 2009년 7월 현재 약 34개월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06년~'08년간) 이직 후 판·검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76.9%에 달하는 등 법률구조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기 보다는 이직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 채용 시 장기계약 추진, 처우개선 노력 등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공익법무관 파견시 법정 업무 배치를 통한 업무공백 대처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공익법무관 파견시 법률구조 업무와 국가소송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법무관 중 일부가 정책기획단 등 법률구조 업무와 다소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된 사례가 있음.
- 공단소속 변호사의 정원 대비 현원 부족의 업무공백을 공익법무관으로 대체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법무관을 동 법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09).

| 부처  | 실·국 | 과     |
|-----|-----|-------|
| 법무부 | 인권국 | 인권구조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정유진(788-4752)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부길환(788-4644)

## 2 등기특별회계사업의 예산 체계 변경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관련 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 도모
- 사업근거 : 「등기특별회계법」
- 사업예산

등기특별회계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등기특별회계 | 272,699 | 256,338 | 223,836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주요 사업 : 등기업무전산화, 등기소의 신설 및 증·개축 사업 등
- 사업 기간 : 1994년 ~ 2010년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등기특별회계상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일반회계 이관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sup>1)</sup>가 등기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바, 그 계상 근거에 대

1) 인건비성 경비는 등기업무 담당인력의 건강보험료, 연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연금·퇴직수당 부담금 등을 말함.

해 대법원에서는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제2호<sup>2)</sup>에서 규정한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는 등기부 등·초본발행, 등기업무전산화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인건비 부분과 인건비성 경비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시켜야 할 것임<sup>3)</sup>(법제사법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8).

#### □ 등기특별회계상 등기소 신·증축사업의 추진체계 변경

- 등기특별회계상 등기소 신·증축사업은 국가기관(대법원)의 고유사무(사법 사무)이며,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등기업무 수익자만을 위한 시설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크게 볼 때 법원시설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 부처  | 실·국   | 과      |
|-----|-------|--------|
| 대법원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실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정유진(788-4752)

2)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별회계에는 인건비와 건강보험 부담금·연금부담금 등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는 소관 부처 일반회계, 건강보험 부담금은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연금부담금 등은 행정안전부 일반회계에 편성·계상되어 있음.

### 3 국선변호료지원사업의 활성화 대책 강구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을 의무화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
- 사업근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등
- 사업예산

국선변호료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사법제도 개혁 지원 | 35,000 | 37,138 | 33,753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수혜자 : 모든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 구속영장 실질심문 피의자,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를 참작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년법상 미성년자,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청구자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국선변호 보수의 합리화

- 국선변호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수수준이 국선변호제도의 형식화·부실화의 주

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2009년 1월 2일 국선변호인의 본안 1건당 기본보수를 25만원에서 30만원<sup>1)</sup>으로 인상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사선변호인과 비교하여 보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

-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선임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양질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료 단가의 인상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보완

- 국선변호제도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2004. 9. 이후 현재까지 국선변호사건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실시, 운영하고 있음. 2009년 7월 27일 현재 122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인 접견의 충실 및 기록 및 증거관계 검토의 충실 등으로 종전 일반 국선변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음.
- 그러나 현재 어느 사건을 일반 국선변호로 할 것인지 국선전담변호인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바, 더욱 충실한 국선변호가 필요한 법정형이 높은 사건 등은 국선전담변호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대법원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실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정유진(788-4752)

1) 한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경우, 심판청구서 제출시 56만원을 받게 됨.



## XII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1

### 재외동포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 강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재외동포가 한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동포들의 모국투자 및 경제활동이 국가경제 역량신장에 기여토록 육성, 지원
- 사업근거 : 「재외동포재단법」 제6조 ⑥ 및 제7조
- 사업예산

##### 재외동포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 2007   | 2008   | 2009   |
|--------|--------|--------|--------|
| 일반회계   | 4,719  | 15,900 | 17,083 |
| 국제교류기금 | 27,155 | 20,000 | 19,000 |
| 합계     | 31,874 | 35,900 | 36,083 |

##### □ 중점사업내용

-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지원 확대
-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육성
- 한상활성화를 통한 한민족 경제인 인적자산화
- 내외동포교류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 On-line을 통한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강화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방안 마련

- 사업비 중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국제교류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의 예산을 절약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치일 수 있음.
- 그러나 국제교류협력기금 조성의 주목적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진흥 및 국제교류사업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목적 상 맞지 않고, 사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법률 상 별개의 조직임.
- 그러므로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예산을 국제교류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함.

### □ 타 부처 중복사업과의 통합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재외동포재단에서 행하는 교육자료 ·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및 교원 현지연수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행하는 한글교과서사업, 현지방문교사사업 등과 유사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다양한 서비스경로 운영 시 차별화 미흡

- 지식경제부 산하 해외한인무역협회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재외동포재단의 ‘세계한상대회’의 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차별화를 통한 효과제고가 필요함.
- 각 부처 별도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차별화를 통하여 별도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부처 간 협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 및 DB의 연계 미흡

- 각 부처, 각 사업별로 네트워크 또는 DB가 구축되어 있고 온라인사이트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계가 미흡함.
  -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민족 과학기술자(kosen21.org)’, ‘한민족 IT 네트워크(koreait.org)’,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or.kr)’ 등임.
-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 및 DB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네트워크 및 DB 간 연계가 필요함.

| 부처    | 실·국     | 과     |
|-------|---------|-------|
|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동포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김민재(788-4642)

## 2 여권선진화사업의 합리적 개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위·변조 방지와 품질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여권을 발급하며, 여권발급 능력을 확대하고 여권 발급시스템을 개선, 민원인 편의 제고
- 사업근거 : 「여권법」 제7조 ③, 제15조 ⑤, 제23조
- 사업예산

여권선진화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           | 2008   | 2009   |
|----------|-----------|--------|--------|
| 여권업무 선진화 |           | 76,457 | 71,288 |
| 단위사업     | 여권발급      | 58,201 | 11,500 |
|          | 여권사진전사시스템 | 2,550  | 0      |
|          | 전자여권개발    | 15,706 | 59,788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외교통상부(전자여권제조는 조폐공사 위탁)
- 여권발급 :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공백여권,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등) 현실화를 통한 여권발급 서비스의 원활화 및 질적 향상 도모
- 전자여권개발 : 여권 발급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위한 중앙집중형 발급체계, 전자여권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응용시스템, 접수기관 확대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여권 통합보안체계,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와 ICAO PKD(Public Key Directory) 연동시스템 등을 구축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개인정보유출우려에 대한 대책마련

- 전자여권의 전자칩에 내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생년월일, 여권만료일, 여권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이들은 여권 표지에 이미 인쇄되어 있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출입국 업무나 호텔 체크인 시 일상적으로 다뤄지는 정보들이므로 보안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 전자여권에 내장된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들의 조합은 중국 등 외국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 기한만료 여권 알림서비스의 제도적 정비

- 운전면허갱신, 자동차정기검사 등의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기한만료시한을 전달하고 있지만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시 이를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관용여권의 경우 기한만료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지만, 전 정부기관 해당리스트를 일괄 정리하여 행정망에 게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근무처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개인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영사국 | 여권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3 해외청년봉사단사업의 실효성 증대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우리나라의 청장년 인력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빈곤완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상대국과의 상호이해 및 우호친선관계 증진을 도모
- 사업근거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 사업예산

해외청년봉사단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 2007   | 2008   | 2009   |
|-----|--------|--------|--------|
| 예산액 | 51,291 | 41,000 | 50,942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제협력단
- 사업추진방식 : 정부출연

| 구분             | 상세구분     | 지원자격                                                                           | 파견기간                   |
|----------------|----------|--------------------------------------------------------------------------------|------------------------|
| 일반<br>봉사<br>단원 | 일반봉사단원   | 만 20세 이상 만 62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으로<br>지원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을 보유한 자<br>(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2년<br>(현지적응훈련기간<br>포함) |
|                | 시니어 봉사단원 | 만 5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원직종 경력<br>10년 이상인자                                         |                        |
| 국제<br>협력<br>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 현역병 또는 보충역 입영대상자 중 지원분야 업무<br>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을 보유한 자                          | 24개월 (총 복무기간<br>30개월)  |
|                | 국제협력 의사  | 전문의자격증 소지자 혹은 당해년 취득예정자로서<br>병역법 제3조에 의해 국제협력의사로 편입이 가능<br>한 자                 | 29개월(총 복무기간<br>36개월)   |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모색

- 외교통상부의의 해외봉사단과 행정안전부의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사업에 개도국의 국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활용 및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것이 요구됨.<sup>1)</sup>

### □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 해외봉사단 사업이 청년실업대책의 성격이 부각되어 참여자들이 봉사활동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 초래하고 있음.
- 파견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자각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교육 시행 필요함.

### □ 귀국 봉사단원의 사후관리 철저

- 봉사단원이 현지 체재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 귀국 후에도 유사한 분야의 봉사 활동이나 국제협력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부처    | 실·국   | 과     |
|-------|-------|-------|
| 외교통상부 | 개발협력국 | 개발협력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1)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2009년 이후 여러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World Friends, Korea’ 사업으로 통합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4 남북협력기금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왕래, 사회문화교류협력, 경제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문제 해결, 교류협력기반 조성 등 추진
- 사업근거 :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 사업예산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08계획    | 2009계획    | 증 감             |
|--------|-----------|-----------|-----------------|
| 합 계    | 1,388,741 | 1,508,561 | 119,820 (8.6)   |
| 남북협력계정 | 1,219,835 | 1,392,846 | 173,011 (14.2)  |
| 경수로계정  | 168,906   | 115,715   | △53,191 (△31.5)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외교통상부
- 남북협력계정 :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사업’, 이산가족상봉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포함하는 ‘인도적 지원사업’, 경제협력기반조성과 개성공단조성 등을 포함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이 세부사업으로 포함
- 경수로계정 : 사업종료로 현재 편성되는 예산은 공자기금<sup>1)</sup>의 원금 및 이자상환과 관련

1) 정부가 공공투자나 재정투융자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예산집행부진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단위: 백만원, %)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9    | 합계        |
|----------|---------|---------|-----------|---------|-----------|-----------|
| 당초계획액(A) | 722,354 | 813,547 | 1,274,219 | 915,403 | 1,104,458 | 4,829,981 |
| 집행액(B)   | 476,273 | 674,410 | 470,996   | 715,734 | 146,400   | 2,483,813 |
| 집행률(B/A) | 65.9    | 82.9    | 37.0      | 78.2    | 13.3      | 51.4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V」, 2008.10.

-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추이에 따라 집행률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지난 5년간 집행률이 51.4%에 불과하고, 불용액의 평균이 4,690억원에 이르러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하므로 일반회계전입금 삭감 등으로 기금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요구됨.

### □ 기금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구 운영

- 사업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기금의 집행내역을 추적하거나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상설화된 기구운영 등을 통해서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남북협력기금사업들이 퍼주기식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됨.

| 부처  | 실·국   | 과       |
|-----|-------|---------|
| 통일부 | 교류협력국 | 교류협력기획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1 예비군사업의 내실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확장을 위하여 증편에 참여하고 간첩침투나 무장소요의 발생 혹은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현역 군경과 합세하여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의 양성
- 사업근거 : 「향토예비군 설치법」
- 사업예산

#### 예비군사업 예산

(단위: 억원, %)

|       |     | 2007  |        | 2008  |        | 2009  |        |
|-------|-----|-------|--------|-------|--------|-------|--------|
| 예비군사업 | 계   | 3,227 | (100)  | 3,449 | (100)  | 3,539 | (100)  |
|       | 인건비 | 2,675 | (82.9) | 2,791 | (80.9) | 2,790 | (78.8) |
|       | 사업비 | 552   | (17.1) | 658   | (19.1) | 749   | (21.2)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인건비 : 예비군 중대장 3,804명 및 관련직원 360명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관련 예산

- 사업비 :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부지매입, 훈련장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예비군 전력유지에 필요한 급식지원, 전투장구지원, 동원훈련 및 일반훈련 실시 관련 예산, 기타 예비군 운영예산 등을 포함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예비군 장비확보의 내실화

- 2008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시 예비군 130만명의 동원·편성에 필요한 필수 전투장비의 확보율이 방탄헬멧은 9.9%, 개인천막은 2.8%, 방독면은 31.8%이며, 소총은 전체수량의 57.8%가 구형 칼빈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시 항방작전에 필수전투장비인 항방물자도 2009년 현재 확보율이 43.8%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2년까지 50%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방개혁 2020의 성공을 위하여 예비군 전력 강화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삼고, 예비군 훈련의 양적·질적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요장비의 확충이 요구됨.

### □ 예비군 훈련 보상비의 현실화

-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보상비를 동원훈련은 3,000~4,000원, 일반훈련의 경우 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이라는 말이 시간과 소득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여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정도에 불과함.
- 훈련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화된 예비군 훈련보상비 책정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방부 | 인사복지실 | 동원기획관 | 동원기획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2 전직지원사업의 효과성 도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 사업목적

- 장기복무 전역예정간부의 경력전환을 지원하는 각종 직업보도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응능력과 취업·창업 능력 향상 도모
- 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역예정 영관급 이하 장교를 선발하여 각군 학교기관의 전임교수(전문교육관)로 활용

##### ○ 사업근거 : 「군 인사법」, 「군 인사법시행령」, 「국방부훈령」 제789호

##### ○ 사업예산

#### 전직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08  | 2009  | 증 감         |
|-----------|-------|-------|-------------|
| 계         | 9,172 | 9,274 | 102 (1.1)   |
| 전직지원 교육   | 4,960 | 5,477 | 517 (10.4)  |
| 군 전임교수 운영 | 4,212 | 3,798 | △414 (△9.8)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전직지원교육 : 장기복무 전역예정간부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직지원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응 능력 향상 및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기술 습득기회 제공
- 군 전임교수 : 군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역예정 영관급 장교를 선발하여 각급 학교기관 및 국방대 정신교육단의 전술학 및 정신교육 교수요원으로 활용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중복사업의 통합을 통한 내실화

-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각각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 부처 간 업무영역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취업교육, 취업박람회,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있음.
- 국방부의 국방취업지원센터와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보훈교육연구원은 전역 이전과 전역 이후라는 시기상의 구분만 있을 뿐, 동일한 수혜대상자(제대군인)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능 및 내용 면에서 중복되고 있음.
- 두 부처의 제대군인 지원사업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상호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됨.

### □ 사설학원비 및 교재비 지원조건 기준강화

- 사설학원비 지급의 경우, 전직지원신청자가 학원비를 선납한 후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각 군 본부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오·남용이 우려됨.<sup>1)</sup>
- 취업활동 및 교재비 지원의 경우는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1인당 6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지원비의 소요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방부 | 인사복지실 | 보건복지관 | 전직지원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1) 국가보훈처의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경우, 학원비를 선입금 후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학원수강사실을 확인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3 병생활관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신세대 장병의 성장환경과 군 주거환경의 격차를 해소하여 쾌적한 병영 환경 조성 및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년이상 경과한 병영생활관 개선
- 사업예산

##### 병생활관신축사업 예산

(단위: 억원)

| 사업 및 주요 내용                                                                                                                                                                                                                                                 | 2008  | 2009             | 증감                |     |         |     |                  |                   |  |  |  |
|------------------------------------------------------------------------------------------------------------------------------------------------------------------------------------------------------------------------------------------------------------|-------|------------------|-------------------|-----|---------|-----|------------------|-------------------|--|--|--|
| ○ 병영생활관 개선                                                                                                                                                                                                                                                 | 4,154 | 5,554            | 1,400             |     |         |     |                  |                   |  |  |  |
| • 육군 병영생활관 : 63 → 96개 대대                                                                                                                                                                                                                                   | 2,572 | 3,310            | 738               |     |         |     |                  |                   |  |  |  |
| <table border="1"> <tr> <th>총 소요</th><th>기개선</th><th>'08</th><th>'09</th></tr> <tr> <td>666개 대대</td><td>379</td><td>63<sup>1)</sup></td><td>96<sup>2)</sup></td></tr> </table> <p>1) 재정사업(31개 대대)+BTL(32개 대대) 추진<br/>2) 재정사업(58개 대대)+BTL(38개 대대) 추진 예정</p> | 총 소요  | 기개선              | '08               | '09 | 666개 대대 | 379 | 63 <sup>1)</sup> | 96 <sup>2)</sup>  |  |  |  |
| 총 소요                                                                                                                                                                                                                                                       | 기개선   | '08              | '09               |     |         |     |                  |                   |  |  |  |
| 666개 대대                                                                                                                                                                                                                                                    | 379   | 63 <sup>1)</sup> | 96 <sup>2)</sup>  |     |         |     |                  |                   |  |  |  |
| • 해 · 공군 병영생활관 : 82 → 103동                                                                                                                                                                                                                                 | 922   | 1,537            | 315               |     |         |     |                  |                   |  |  |  |
| <table border="1"> <tr> <th>총 소요</th><th>기개선</th><th>'08</th><th>'09</th></tr> <tr> <td>1,021동</td><td>378</td><td>82<sup>1)</sup></td><td>133<sup>2)</sup></td></tr> </table> <p>1) 재정사업(49동)+BTL(33동) 추진<br/>2) 재정사업(108동)+BTL(25동) 추진 예정</p>            | 총 소요  | 기개선              | '08               | '09 | 1,021동  | 378 | 82 <sup>1)</sup> | 133 <sup>2)</sup> |  |  |  |
| 총 소요                                                                                                                                                                                                                                                       | 기개선   | '08              | '09               |     |         |     |                  |                   |  |  |  |
| 1,021동                                                                                                                                                                                                                                                     | 378   | 82 <sup>1)</sup> | 133 <sup>2)</sup> |     |         |     |                  |                   |  |  |  |
| • GOP/해 · 강안 소초 병영생활관 : 90 → 142동                                                                                                                                                                                                                          | 660   | 707              | 47                |     |         |     |                  |                   |  |  |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민간위탁
- 사업내용 : 노후한 육 · 해 · 공군의 병영생활관 및 격오지의 초소 및 막사를 기존의 소대별 침상형(1인당 0.7평)에서 분대별 침대형(1인당 2.3평)으로 개조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BTL사업의 추진실적 제고

- 재정사업으로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추진시 통상 2년만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반해서, BTL 방식으로 사업 추진시 생활관 환경 개선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병영생활관 뿐만 아니라 군관사, 독신 숙소 등과 연계하여 BTL방식으로 사업을 고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개선이 시급한 각 부대의 병영생활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관사 및 병영생활관 동시 발주로 2006년도 고시된 사업이 실시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착공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BTL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유형별로 파악하여 병영생활관 개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됨.

### □ 사업의 세부적인 검토 및 조정

- 2007년도 감사원의 「군 후생복지 개선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체대상 부대에 대한 병영생활관 신축예산 등이 계상되어 추진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국방개혁 2020」의 중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군 구조개편 대상 부대 및 시기 등을 엄밀하게 점검하여 해체 부대의 병영생활관이 신축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방부 | 전력자원관리관실 | 군사시설기획관 | 시설기획환경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4 방위비분담금 사업의 합목적적 운영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한국의 경제력 신장 및 국제적 지위향상을 이유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한국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여 '89년부터 분담
- 사업근거 :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관한 특별협정
- 사업예산

방위비분담금 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합계       | 725,500 | 741,500 | 760,000 |
| 인 건 비    | 331,239 | 338,600 | 323,700 |
| 군사건설건설사업 | 259,839 | 265,500 | 244,587 |
| 연합방위사업   | 39,851  | 40,730  | 26,113  |
| 군수지원사업   | 94,571  | 96,670  | 165,6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
- 인건비 : 한국인 고용원들에 대한 임금 및 보건복지비
- 군사시설건설사업 : 군사용 건축물 건설·개선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
- 연합방위사업 : 한·미 연합방위전력의 증강을 위하여 한·미간에 공동추진이 요망되는 사업으로 현금으로 지급
- 군수지원사업 : 군수물자의 철도수송 및 장비정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주로 현물로 지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군사시설건설사업 예산이용의 투명성 확보

- 현금으로 지원되는 군사시설건설사업의 비율이 높아서(2008년까지 90%)세부집행 내역을 한국측에서 확인하기 곤란하며, 이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기지의전비용 등에 충당<sup>1)</sup>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한이 없음.
- 일본의 경우 군사건설 등의 예산은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군사 건설 예산도 소요에 기초한 현물 지원 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2)</sup>

### □ 연합방위사업의 상징적 의미 고려

-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한 사업비는 한·미간의 군사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방위비분담금의 성격을 잘 대변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방위비분담금에서 연합방위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1.2%에서 2009년 3.4%로 축소됨.
- 연합방위비사업의 비율이 축소된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성격과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여볼 때 예산편성의 타당성의 측면에서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국방부 | 국방정책실 | 정책기획관 | 미국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1) 실제로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는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사단 기지 통합합 이전 비용을 미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비용에서 충당하려고 한다”고 발언함.

2)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시설건설사업의 현물의 비율을 기존 10%에서 2009년도에는 30%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현물의 비율을 확대할 계획에 있음.

## 5 차기 대포병레이더사업 추진의 합리성 확보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지상군의 실시간 대화력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적의 포병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대포병탐지레이더(WLR)를 국외구매로 도입
- 총 사업비 : 1,190억원
- 사업기간 : 2007~2011
- 사업예산

차기 대포병레이더사업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차기 대포병레이더사업 | 98   | 347  | 222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방위사업청, 스웨덴 Saab사
- 사업내용 : 2011년까지 스웨덴 Saab사가 개발한 대포병레이더 ARTHUR 6대 도입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기종결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

-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국방업무발전규정에 의하여 사업단계별로 주파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했으나, 주파수 대역 검토를 실기하여 기종결정이 지연되었음.

- 무기도입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 운영유지비 산정방식의 재검토

- 장비전체의 가격이 주 장비가격과 운영유지비로 구성되는데, 운영유지비 평가에 대한 규정과 노하우의 미비로 인하여 기종결정요소 중 획득비, 확정운영유지비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과 다르게 산정하였고, 원시기초자료 등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기준으로 확정운영유지비를 산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향후 주장비 가격 및 운영유지비 일괄 평가 방식의 세부적인 지침을 개선하는 등 운영유지비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부처     | 실·국    | 과       |
|--------|--------|---------|
| 방위 사업청 | 사업관리본부 | 화력탄약사업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1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의 적합성 재검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녹색뉴딜사업」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구축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근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예산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예산

(단위: 억원)

| 사업명        | 2009 | 2010이후 |
|------------|------|--------|
|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 375  | 12,081 |

자료: 행정안전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보조율 5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sup>1)</sup>

### □ 사업의 적합성 재검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목적은 레저보다는 교통분담률 제고 및 녹색교통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동사업은 전국 일주가 가능하도록 총연장 3,114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교통분담률 제고 및 녹색교통의 실현보다는 여가생활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주된 사업내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교통분담률 제고 및 녹색교통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정책적 역량이 우선 집중될 수 있도록 동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 자전거 관련 제도의 우선 정비 노력

-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업추진 시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원래의 사업목적 구현에 장애가 생길 수 있음.
- 자전거 관련 대표법률이라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모두 자전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자전거 보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이용자 보호, 자전거 횡단도 설치 등과 같은 자전거 관련 제도가 우선적으로 완비될 수 있어야 함.

| 부처    | 실·국     | 과     |
|-------|---------|-------|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정책국 | 지역발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1) 쟁점 및 정책방향은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2009를 요약·정리한 것임.

## 2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효과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 영세상권을 활성화하여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동사업의 목적
- 사업근거 : 국정과제
- 사업예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사업명          | 사업기간      | 2009   |
|--------------|-----------|--------|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 2009.6~11 | 17,070 |

주: 국비 1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별 보조율 상이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농번기 일손부족에 대비한 사업추진

- 근로자들이 농번기에 상대적으로 작업강도가 높은 농사일을 기피하고 희망근로 사업에 지원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촌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된 바 있음.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수확기에 대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농촌일손 돕기 기동단을 운영함으로써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일손 돕기 기동단의 운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촌일손 돕기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경우,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 따라서 농사일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유형에 포함시키고 작업강도에 따른 보수체계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사업 주타겟층의 사업 참여 확대방안 모색

- 동사업은 당초 실직, 휴·폐업 자영업자 등 청장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서 기획되었음. 하지만 현재 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적구성 현황을 놓고 볼 때 동사업이 당초 기획의도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동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참여자 중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4%, 20대~40대는 27.7%로 고령인구의 참여비율이 청·장년층의 참여비율보다 높아 동사업이 청·장년층의 실업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 가정주부(22.2%)와 학생, 노숙자 등을 포함한 기타 그룹(27.6%)이 전체 사업 참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실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의 참여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0.8%로 나타나 동사업이 실업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 희망근로 상품권 활성화 방안 강구

- 근로자가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보다 소비선호가 제약될 수 있음. 실제 많은 지역에서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현금대신 자신들의 소비선호를 제약하는 상품권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상품권 활용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임. 현재 상품권이 실질적인 상품구매에 쓰이지 않고 속칭 ‘깡’에 의한 현금교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권 지급의 본래적 취지와는 어긋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상품권 발행 및 관리, 상품권 유통 가맹점 확보 및 관리에 따르는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상품권 활용의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계속 지급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처    | 실·국     | 과     |
|-------|---------|-------|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정책국 | 지역경제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 3 국가정보보호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가. 정책개요

##### □ 정책현황

- 정책목적: 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가의 정보통신기반과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보호
- 정책근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사업예산<sup>1)</sup>

국가 정보보호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07      | 2008      | 2009      |
|------------------|-----------|-----------|-----------|
| 정보보호 예산 총액(A)    | 101,827   | 160,755   | 174,245   |
| 정보화 예산 총액(B)     | 3,410,400 | 3,396,000 | 3,155,100 |
| 정보보호 예산 비율A/B(%) | 2.99%     | 4.73%     | 5.52%     |

주: 2008년 이전까지는 정보보호 예산에 대한 구분이 없어 추정치를 기술

자료: 행정안전부

##### □ 추진체계

- 공공부문은 국가정보원, 민간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문은 국방부가 총괄

1) 정보보호 예산은 콘텐츠 보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서비스 등으로 구성됨(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2009, p.37).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적정수준의 정보보호예산의 편성 및 운용

-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예산은 정보화예산 대비 5.52% 수준임(2008년은 4.73%). 미국은 2009년 현재 정보화 예산대비 9.7%, 일본은 2008년 현재 2.2% 수준임. 그러므로 정보보호 예산비율만으로 정보보호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음. 이는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율이 64.9%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한 지난 DDoS공격에 의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피해발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보안솔루션의 구축이 필수적인 바, 정보보호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임.

### □ 인적보안과 기술적보안 수준 강화

-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구)KISA)이 실시한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실태조사’에서 제도보안, 관리보안, 인적보안 기술적보안실태를 점검한 바 있음. 그 결과 인적보안실태와 기술적보안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사이버침해 대응훈련, PC, DB, 온라인거래 분야의 보안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이들 취약분야에 대한 보안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 □ 부처별 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축률 제고

- 부처별로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 현재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38.4%인 12개 행정기관만이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처는 전담인력만을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부처별 정보보호 전담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인적조정 및 조직편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 국가정보보호 추진체계의 정비

- 현재 우리나라 정보보호체계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2008.10 개정)을 근간으로 편제되어 있음. 하지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정보 보호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동규정과 여타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들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이외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정보보호체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히 공공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두 법령 모두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호체계와 관련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임.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정보통신기반위원회,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은 국가사이버전략회의에서 정보보호 전반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따라서 정보보호 관련 기구의 역할 및 기능이 명확하고 계통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련법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행정안전부 | 정보화전략실 | 정보기반정책관 | 정보보호정책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 4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도로명 주소 체계 도입으로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공통의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선진일류국가 기반 마련
- 사업근거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업예산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07까지 | 2008   | 2009   |
|---------------|--------|--------|--------|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 20,040 | 10,622 | 26,100 |

자료: 행정안전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지자체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보조율 5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철저한 검증 및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

- 동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었으나 근거법령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시행됨. 이 때문에 근거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164개 시·군·구 지역의 분절된 도로명, 부적절한 도로명 등의 정비에 75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함 (기 추진된 사업 중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 44%에서 최고 100%에 이름). 따라서 근거법 시행 이후 추진되는 신규사업들의 경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지정될 수 있어야 함.

#### □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예산집행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는 광역도로명 고시 → 지방도로명 고시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됨. 2009.6.30 광역도로명이 고시되었고 현재 지방도로명 지정 및 고시가 진행 중에 있음. 때문에 지방도로명 지정 및 고시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경우, 실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과 도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공적장부 전환관련 시스템 개편작업 등 전체 사업이 순연될 개연성이 큼.
- 결과적으로 사업의 추진일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아 연내 사업완료가 순연됨으로써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초래하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도로명 지정 및 고시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임.

| 부처    | 실·국     | 과      |
|-------|---------|--------|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세분석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 5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후진국형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대표적 녹색교통인 보행을 활성화 시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 국정과제로 추진
- 사업예산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예산

(단위: 억원)

| 사업명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이후 |
|-------------|------|-------|-------|-------|---------|
|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 500  | 2,000 | 2,000 | 2,000 | 2,000   |

자료: 행정안전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보조율 5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 동사업은 2008년 1차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소요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2차 조사를 실시함.<sup>1)</sup> 하지만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움.
- 첫째, 사업유형별 수요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교통사고 저감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내용별 수요는 보도 신·증설(54.2%) → 부체도로 건설(21.7%) → 지중화 및 보도·가로 정비(15.3%) →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8.8%) 순으로 조사됨.
  - 반면 실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보면 횡단중 사고(59.4%) → 차도보행중 사고(15.1%) → 길 가장자리 통행중 사고(8%) → 보도통행중 사고(3.8%)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수요조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보행자 사망사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횡단중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건설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저감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둘째, 도로별 수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교통사고 저감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별 수요는 지방 도로 → 군 도로 → 농어촌 도로 순으로 나타남. 반면 실제 교통사고 발생 빈도는 시 도로 → 특별광역시 도로 → 지방 도로 순으로 나타남.

1) 행정안전부, 2009 지자체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 2009.7.

- 따라서 수요조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가장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 도로에 대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교통사고 저감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

#### □ 시범사업 성과검증 후 사업확산 추진

- 동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그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전면적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고 있음.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는 사업 완료 전과 사업 완료 이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동사업의 확산여부는 시범사업 완료 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경과 이후 측정된 사업효과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09년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완료한 직후, 바로 이듬해인 2010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에 있음. 하지만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은 효과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의 경과 없이 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추진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시범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의 전면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즉, 시범사업 완료 이듬해인 2010년의 예산편성 시, 현재 계획된 2,000억원 규모의 예산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충분한 성과평가 기간을 거친 후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실 | 재난안전관리관 | 안전개선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 6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 선정기준 타당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지점에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섬, 차로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 사업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사업예산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사업명          | 2004~2008 | 2009 | 2010    |
|--------------|-----------|------|---------|
| 교통사고잦은 곳개선사업 | 651.5     | 180  | 1,276.5 |

자료: 행정안전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보조율 5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의 중복구간 포함 배제 노력

- 동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모두 중앙분리대 설치를 공통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두 사업의 사업구간이 동일할 경우, 예산의 중복투자 개

연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됨. 따라서 사업 시작 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사업구간과 동일한 사업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사업추진 조직 간 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함.

#### □ 사업대상 선정 기준의 타당성 제고

- 현재 사업대상 지역 선정기준은 특별·광역시시는 1년간 동일 장소에서 7건, 일반시는 5건, 기타지역은 3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음. 현재의 선정 기준은 1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로 되어있는데 이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평균건수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교통환경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빈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평균건수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sup>1)</sup>
- 또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금의 선정기준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량, 도로구조, 도로의 노면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단일 지표만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임.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실 | 재난안전관리관 | 안전개선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1) 호주의 경우, 1년, 3년, 4년, 5년간 평균사고건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점사고기준, 도로구간 사고기준, 도로안전진단 결과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역시 대상지역 선정 시 최근 2~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참고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 7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낙후된 도서지역에 주민 편의시설 및 소득 증대 시설 확충을 통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 사업근거 : 「도서개발촉진법」(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 사업규모 : 8개 시도, 37개 시·군·구, 372개 도서(실제투자도서는 351개) 1,109건
- 사업기간 : 2008년~2017년 (10년간)
- 사업예산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 2008   | 2009    | 증감액   | 증감률 |
|--------|---------|-------|-----|
| 95,375 | 100,724 | 5,349 | 5.6 |

※ 증액사유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계획분 반영

####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

- 사업추진방식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집행절차 : 개발계획수립(시·도 지사) → 종합계획(안) 마련 → 계획(안) 협의(관계부처) → 개발계획 확정(행정안전부 장관) → 사업추진(관계부처, 시·도)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및 사후관리체계의 구축

- 1년에 국비 및 지방비가 1천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가 부재하며, 사업 시행이후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사업이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 매년 비교평가를 하고 있지만 평가의 내용이 사업별 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실태,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적정성 등 사업수행의 궁극적인 결과가 아닌 과정 혹은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로 보기 곤란하므로 적절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 보조율 적용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고려

-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도의 재정력의 격차가 크고(2009년 재정력지수<sup>1)</sup> 최고 경기 0.992, 최저 전남 0.193), 군 전체가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완도, 신안, 진도 등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의 평균 30%를 부담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과     |
|-------|---------|-------|
| 행정안전부 | 지방발전정책국 | 지역발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1)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8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지방도로의 구조(급격한 경사로, 굴곡부 및 병목지점 등)를 개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등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 편의 제고
- 사업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사업예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 2008   | 2009   | 증감액   | 증감률  |
|--------|--------|-------|------|
| 82,750 | 91,000 | 8,250 | 10.0 |

※ 증액사유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규모 확대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수립지침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 사업수요 및 사업시행계획을 심사 확정하여 사업비 내시 및 사업추진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의 궁극적인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 행정안전부가 동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들은 대표성이 미흡하거나 해당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보기 어려움.
- 예를 들자면 2008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전년대비 지방도로상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실적(%)’은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 이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구간에서의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사업대상이 아닌 지방도로까지 포함한 모든 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 감소실적을 측정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연도별 성과지표

| 연도   | 성과지표                             |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
|------|----------------------------------|-------------------------------------------------------------------------------------------------------------|
| 2007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간에서의 성과가 아닌 국가전체에 대한 성과 파악</li> <li>○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li> </ul>   |
|      | 전년대비 사망자 감소율                     |                                                                                                             |
| 2008 | 전년대비 지방도로상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간에서의 성과가 아닌 지방도 전체에 대한 성과 파악</li> <li>○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li> </ul> |
|      | 전년대비 지방도로상 자동차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실적(%) |                                                                                                             |
| 2009 |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계획대비 공정률              | – 결과지표로 볼 수 없음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2007, 2008.  
 행정안전부, 「성과계획서」, 2009.

## □ 사업대상구간의 선정기준 강화

- 동사업은 2008년 이전까지 사업대상구간선정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사업대상 구간을 선정해온 것으로 보임.
- 또 사업구간선정과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2008년 이후 사업구간선정을 위해 계량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구간이 선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효과성과 경제성 등이 검증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현재 동사업의 경우, 사후평가 및 환류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대상구간에서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 결과들이 사업의 집행과정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정책국 | 지역개발과 |

• 작성: 사업평가국 평가관 고성철(788-4750)

## 9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운영 내실화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교통사고 발생이 안전사고 의식이 낮은 어린이가 활동하는 유아원, 초등학교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사업추진
- 사업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사업규모 : 8,429개소 15,1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03년~2012년 (10년간)
- 사업예산 : 균특예산 50%, 지방비 5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 2008   | 2009   | 증감액    | 증감률  |
|--------|--------|--------|------|
| 90,846 | 83,500 | △7,346 | △8.1 |

※ 감액사유 : 사업물량 조정

#### □ 사업내용

- 지정범위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 등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 (2005.5.3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대상범위 확대)
- 지정절차 : 건의(학교, 유치원) ⇒ 신청(교육청) ⇒ 지정(경찰서)
- 진입로 칼라포장,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횡단보도, 신호등, 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등 각종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어린이보호구역 선정의 타당성 제고

- 2007년의 경우 전체 어린이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1.7%, 사망자는 4.85%, 부상자는 1.6%로 미약한 수준임에 불과하지만 2003년 이후 매년 400~900억에 이르는 국비가 투입되고 있음.
- 따라서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사업의 효과성 제고노력

- 2007~2008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사업 구간에서의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49.9% 및 52.7%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고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부처    | 실·국   | 담당관     | 과     |
|-------|-------|---------|-------|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실 | 재난안전관리관 | 안전개선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10 개도국정보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한국 전자정부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으로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한국 전자정부 경험전수 요청 증대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전자정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
- 사업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 ①
- 개도국 정보화환경개선사업 예산

개도국정보환경개선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인터넷해외봉사단파견  | 1,850 | 2,777 | 3,030 |
| 정보접근센터구축    | 1,800 | 2,700 | 2,200 |
|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 | 2,870 | 1,600 | 1,124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인터넷해외봉사단 파견 : IT 봉사활동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친한파 양성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IT 수출 기여
- 정보접근센터구축 : 정보화후발국에 한국형 IT인프라를 적용한 정보접근센터를 구축·지원함으로써 국제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고, 국산 IT장비 및 제품홍보와 국내 IT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 :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정보통신 정책 및 기술 분야 인력 초

청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및 관련업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 친화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IT분야 협력증진 및 국제 정보격차해소에 기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통합방안 마련

- 인터넷해외청년봉사단사업은 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사업과 유사하고, 정보접근  
센터구축사업은 외교통상부 공적개발원조의 정보통신사업과 다르지 않으며, 해외  
IT전문가초청연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IT정책개발과 전자정부관리자 교육과 차별  
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합·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파견기간 설정

- 인터넷해외청년봉사단사업의 경우 1개월을 파견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개  
도국에서 OS, MS-Office, 컴퓨터 언어 등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많  
은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견건수를 조정하더라도 파견기간을 3개월 정도로 적  
절하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행정안전부 | 정보화 전략실 | 정보화기획관 | 정보화총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고성철(788-4750)

## 11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의 효과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기존의 견학식, 일방적 강의식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직접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어려서부터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질서 확립
-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제23조 제1항
- 사업예산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교통안전교육지도 | 11,500 | 11,500 | 4,500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주요내용 : 어린이에게 빈발하는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예방법 등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험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체험교육장 건립사업의 효과성 제고

- 대전시 교통체험교육센터는 총공사비 343억원으로 2005년 착공, 2007년도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006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국고보조가 감소되면서 사업추진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이후 장기간 완성이 지연되는 것은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시 예상되었던 사업효과의 달성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동 사업에 대한 경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대전시 교통체험교육센터가 2009년 현재 완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관리비와 당초 기획하였던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이 38억5,000만원 추가되는 바,<sup>1)</sup> 동 금액은 총 공사비의 11.2%를 상회하는 금액이며, 그 외에도 완공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활용도(편익)의 감소효과를 감안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경찰청은 교통안전체험시설 건립 보조사업자 선정시 사업추진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 부처  | 실·국    | 과       |
|-----|--------|---------|
| 경찰청 | 교통관리관실 | 교통기획담당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정유진(788-4752)

1)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p.453~454

## 12 전의경대체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정부의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에 의거 전·의경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대체경찰관 충원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사업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지원 필요성 : 감축되는 전·의경(46,916명)의 30%선 대체충원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를 위한 장비확충, 신규창설 경찰관 부대 청사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 등 지원 필요
- 사업예산

전의경대체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전의경대체지원 | —    | 39,391 | 50,067 |

#### □ 추진체계

- 추진경위 :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의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정부 합동 발표('07. 2. 5)
- 사업시행주체 : 경찰청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전의경대체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 2013년까지 대체복무 병력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7,116명의 정규직 직업공무원 증원 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sup>1)</sup> 이 숫자는 경찰청의 전·의경 감축계획이 2011년까지만 확정되어 있고 2012년 이후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경우이며, 향후 경찰청에서 대간첩작전 및 치안업무보조 등<sup>2)</sup>에 복무하는 전·의경 인력이 감축되고 이를 직업공무원으로 대체할 경우에 상당한 규모의 공무원 증원이 예상됨.
- 군복무 기간의 단축 및 청년층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감소하는 병력자원의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전환복무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정부 규모가 확대되고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신규로 채용되는 직업공무원으로 인하여 확대되는 정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 부처  | 실·국 | 과   |
|-----|-----|-----|
| 경찰청 | 경비국 | 경비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정유진(788-4752)

1)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p.418~419

2)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①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

## 13 운전면허시설취득사업의 합리적 추진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기능시험장 코스 개선 및 부대시설 정비, 26개 시험장 시설 개·보수 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사업근거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2조
- 사업예산

운전면허시설취득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
| • 운전면허시설취득 | 2,597 | 1,700 | 916  |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수혜자 : 내부고객 또는 외부고객(시험장 방문자)
- 주요 내용 : 대부분 평균 15년 이상된 시험장으로 주기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바, 원활한 시험 진행과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도색, 포장 및 검지선 교체 등을 실시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운전면허시설취득사업의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운전면허시설취득 예산은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의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2006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본부의 울산 이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6년도에 예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의 경우 본부 이전 계획과 함께 민영화 계획 추진으로 시설개·보수 예산의 집행이 중지되기도 하였음.
- 운전면허시험장의 대부분이 사실상 15년 이상된 시설로 시설 개·보수사업의 중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안전과 시험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신축이 예정되어 있는 관리단 본부를 제외한 시험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기능시험 일부항목 제외, 도로주행연습 폐지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전문학원을 이용하던 응시생 가운데 운전면허시험장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원활한 시험 진행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치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08).

| 부처  | 실·국       | 과     |
|-----|-----------|-------|
| 경찰청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영기획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정유진(788-4752)

## 14 소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수·이수와 함께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
- 사업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3조
- 사업예산

소하천정비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07까지  | 2008   | 2009    | 2010이후    |
|---------|---------|--------|---------|-----------|
| 소하천정비사업 | 699,769 | 67,169 | 157,169 | 4,767,167 |

자료: 소방방재청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보조율 5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효율성 분석과 위험분석을 고려한 사업대상 선정

- 「소하천 시설기준」에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함.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B/C 비율이 1미만인 경우,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대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하천을 직접 정비하는 구조적 방식과 함께 비구조적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sup>1)</sup>

#### □ 정비종합계획의 타당성 주기적 재검토

- 현재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은 중기계획에 한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소하천의 특성상 하천의 형태나 연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하천법」이 하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소방방재청 | 방재관리국 | 재해경감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1) 소방방재청은 법령이 아닌 「소하천 시설기준」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15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내지 14조
- 사업예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07까지  | 2008    | 2009    | 2010이후    |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868,753 | 158,253 | 308,253 | 1,187,616 |

자료: 소방방재청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보조율 60%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규정의 개정<sup>1)</sup>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고시

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풍수해 예방 및 복구실태」, 2008을 인용·정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 소방방재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지만 재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가격 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꺼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등에서 파악한 1,850개의 각종 위험취약시설 및 지구 중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은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19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상습침수 및 붕괴우려 등 매년 피해가 속출하는 지역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제도의 실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sup>2)</sup>

| 부처    | 실·국   | 과     |
|-------|-------|-------|
| 소방방재청 | 방재관리국 | 재해경감과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16 지자체 소방인력 충원 인센티브 강구

### 가. 정책개요

#### □ 정책현황

- 정책목적 : 지방자치단체 소방직 3교대 전면시행에 필요한 인력(충원인력)의 총액 인건비를 산정하고 이를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소방직 3교대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sup>1)</sup>
- 정책근거 : 소방직 3교대 전면시행을 위한 총액인건비 반영협의
- 추진계획 : 2012년까지 3교대 전면시행을 위해 부족인원 8,681명을 단계적으로 투입

소방직 3교대 충원계획

(단위: 명)

| 연도(충원율)<br>부족인원 | 2009(40%) | 2010(60%) | 2011(80%) | 2012(100%) |
|-----------------|-----------|-----------|-----------|------------|
| 8,681           | 2,356     | 2,108     | 2,108     | 2,109      |

자료 : 소방방재청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교부
- 각 지방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인건비를 측정할 때, 소방인력 충원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교부

1) 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지방비로 지출함.

전체 소방공무원의 2008년도 인건비 규모는 약 1조 4,258억원이고 이 중 소방방재청 본부 인건비는 203억원임.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소방인력 2교대 근무 개선 필요

- 소방인력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2만 4,905명 중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1만 7,361명,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7,544명으로 3교대 근무인력이 30%에 불과하여 소방인력 2교대 근무개선이 필요함.

2008년 말 기준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현황

(단위 : 명, %)

|      | 전체교대근무인원 | 3교대근무인원 | 3교대근무 실시율 |
|------|----------|---------|-----------|
| 격무부서 | 10,913   | 5,674   | 52        |
| 현업부서 | 13,992   | 1,870   | 13        |
| 계    | 24,905   | 7,544   | 30        |

\* 격무부서 : 상황실, 월별 화재 30건, 구조 60건, 구급 150건 이상 출동부서  
자료 :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의 주(週)근무시간은 84시간으로, 일본이나 미국 등의 소방공무원 주근무시간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에 비해서 과도한 편임.

소방공무원과 타 직종의 근무시간 · 방식 비교

| 구 분   | 소 방           | 경 찰         | 교 정           | 도시철도         | 통신교환       |
|-------|---------------|-------------|---------------|--------------|------------|
| 주근무시간 | 84            | 50~56       | 64~68         | 60           | 56         |
| 근무방식  | 24시간<br>2조2교대 | 12시간<br>3교대 | 11시간<br>3조3교대 | 8시간<br>4조3교대 | 8시간<br>3교대 |

자료 : 소방방재청

### 외국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 근무방식

| 구 분   | 일 본        | 미 국           | 프랑스   | 영 국   | 독 일   |
|-------|------------|---------------|-------|-------|-------|
| 주근무시간 | 40         | 40~56         | 40~56 | 48~56 | 56    |
| 근무방식  | 4개조<br>3교대 | 3~4개조<br>교대근무 | 변형3교대 | 변형3교대 | 변형3교대 |

자료 : 소방방재청

- 24시간 2교대 근무체제는 신체리듬 상 피로누적, 식사 및 수면장애, 스트레스 증가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기초원인이 될 수 있음.<sup>2)</sup>

#### □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인건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소방인력 충원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나, 총액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특성상 교부세에 반영된 인원만큼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8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된 소방인력 충원규모는 2,228명이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충원한 인력은 1,222명으로 당초 산정인원의 55%에 불과함.
- 전남은 150명을 충원하겠다고 신청하여 47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고, 울산 또한 42명을 충원하겠다고 신청하여 13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한 명도 충원하지 않음.

### 200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소방인력 대비 실제 충원인원

(단위 : 명,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 산정인력 | 380 | 74 | 79 | 260 | 70  | 107 | 42 | 273 | 92 | 53  | 160 | 150 | 150 | 154 | 154 |
| 충원인력 | 48  | 38 | 78 | 235 | 80  | 78  | 0  | 87  | 76 | 53  | 146 | 30  | 0   | 164 | 109 |
| 충원율  | 13  | 51 | 99 | 91  | 114 | 73  | 0  | 32  | 83 | 100 | 91  | 20  | 0   | 107 | 59  |
| 3교대율 | 30  | 54 | 46 | 61  | 53  | 78  | 28 | 13  | 28 | 37  | 32  | 12  | 0   | 5   | 34  |

자료 : 소방방재청

2) 2008년도 소방공무원 순직자는 9명, 공상자는 337명임.

-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산정시 계획된 인력만큼 실제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전년도의 계획인력 대비 충원실적을 인건비 산정에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총액 지원을 통한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보장이라는 교부세의 기본적인 특징을 감안할 때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합동평가의 평가항목에 소방인력 확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법」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교부세의 50%를 차지하는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특별교부세의 집행잔액을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잔액을 배분하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항목 중 ‘소방력 강화 노력도’라는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는 소방장비의 확보실적은 포함되어 있으나, 소방인력의 확충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소방인력의 계획대비 충원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2008).

| 부처    | 실·국   | 과     |
|-------|-------|-------|
| 소방방재청 | 소방정책국 | 소방행정과 |

• 작성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오세일(788-4640)

## 17 지자체 지역특화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분석 실시

### 가. 지역특화특구 제도 개요

#### □ 제도현황

- 제도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구지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
- 제도근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추진현황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 지정년도      | 계   | 향토자원<br>진흥 | 유통·<br>물류 | 관광·<br>레포츠 | 산업·<br>연구 | 의료·<br>복지 | 교육 |
|-----------|-----|------------|-----------|------------|-----------|-----------|----|
| 2004~2005 | 40  | 13         | 6         | 9          | 4         | 2         | 6  |
| 2006      | 31  | 16         | 3         | 5          | 3         | 1         | 3  |
| 2007      | 25  | 11         | -         | 5          | 5         | -         | 4  |
| 2008      | 13  | 3          | -         | 7          | -         | -         | 3  |
| 계         | 109 | 43         | 9         | 26         | 12        | 3         | 16 |

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2008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 규제특례, 정부예산사업과 연계 시 국고보조
- 지원조건 : 정부예산사업별로 상이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특화사업 추진

- 지역특구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상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함.
- 지역특화특구 사업 중 순수하게 국비의 지원 없이 지방비와 민자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전체 지역특화특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1%, 6%로 그 비율이 낮음. 이는 상당수의 지역특화특구 사업이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08년 현재 지역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6개 지방자치단체 중 중앙정부예산 사업인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특구지역으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23개인 것으로 조사됨.<sup>1)</sup>
- 하지만 지역특화특수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됨.<sup>2)</sup>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특구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부처           | 실·국 | 관 | 과 |
|--------------|-----|---|---|
|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 -   | - | -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1) 경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특구제도의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2008.

2)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실태」, 2008.

## 18 서울시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분양의 합목적성 제고

### 가. 사업개요

#### □ 동남권유통단지 건설배경

- 사업목적 : 2003년 6월 서울시와 청계천상인대표들 간에 이주전문상가를 건설하여 청계상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프)가 건설
- 사업근거 : 서울시 정책

#### □ 동남권유통단지 현황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일원
- 개발비용 : 1조 3,168억 1,800만원(VAT 미포함)
  - 가블럭 : 7,712억 원
  - 나블럭 : 1,503억 원
  - 다블럭 : 3,953억 원
- 상가현황

#### 상가현황

(단위: 개)

| 구 분    |     | 합 계   | 가블럭<br>LIFE | 나블럭<br>WORKS | 다블럭<br>TOOL |
|--------|-----|-------|-------------|--------------|-------------|
| 계      | 합 계 | 8,360 | 5,358       | 734          | 2,268       |
| 특별공급   | 계   | 5,267 | 3,510       | 629          | 1,128       |
| 지원시설   | 계   | 1,146 | 652         | 75           | 419         |
| 소규모 상가 | 계   | 350   | 350         | -            | -           |
| 창고시설   | 계   | 1,597 | 846         | 30           | 721         |

자료: 서울시 SH공사

## 나. 쟁점 및 정책방향

### □ 단지건설 취지에 부합하는 분양추진 노력

- 현재 유통단지 분양률은 35%미만으로 저조. 분양률이 낮은 이유의 하나로 SH공사 측이 당초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 것을 들 수 있음. 분양촉진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는 2009년 8월 일반분양 모집을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유통단지가 청계천 상인 이주전용으로 건설된 점을 감안하면 청계천 상인과의 충분한 협의·조정 없이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금처럼 SH공사측이 청계천 상인들과의 추가 협의 없이 일반분양을 추진할 경우, 일반분양을 추진하는 것이 청계천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SH공사측이 일반분양을 서두르고 있다는 협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일반분양에 따른 투기조장 우려 등에 대한 방안 강구

- 일반분양이 추진될 경우, 투기목적의 수요자가 분양에 공모할 수 있음. 현재 SH공사 측은 일반분양의 경우, 분양점포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함. 이 경우, 장사 등을 위해 상가분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에 참가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SH공사측은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실·국   | 과     |
|----------|-------|-------|
| 서울시 SH공사 | 사업2본부 | 공급관리팀 |

• 작성 :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여차민(788-4751)





## 연구 및 참여진

### ■ 총괄 · 기획

김호성(예산분석실장)

박종규(경제분석실장)

박용주(사업평가국장)

박인화(예산분석심의관)

### ■ 협의 · 조정

송병철(경제예산분석팀장)

조영철(산업예산분석팀장)

강상규(사회예산분석팀장 직무대리)

천우정(행정예산분석팀장)

윤용중(경제정책분석팀장)

이남수(재정정책분석팀장)

이영환(세제분석팀장)

이환성(경제사업평가팀장)

최미희(산업사업평가팀장)

김일권(사회사업평가팀장)

박상진(행정사업평가팀장)

정유진(사업평가관)

### ■ 집 필

| 담당 분야                                      | 직위 및 성명   |
|--------------------------------------------|-----------|
| 〈기획재정위원회〉                                  |           |
| 1. 국가채무 급증 및 재정압박에 대한 대책                   | 경제분석관 나아정 |
| 2. 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 및 지분증권에 대한 관리 · 감독의 강화     | 사업평가관 이현정 |
| 3. 성과중심 예산 · 결산 심사를 위한 성과계획 · 성과보고의 신뢰성 제고 | 사업평가관 이현정 |
| 4. 2008년도 유가환급금 집행에 대한 사후점검                | 경제분석관 정지은 |
| 5. 근로장려세제의 효율성 제고                          | 경제분석관 전승훈 |
| 6. 부담금 급증에 따른 관련 대책 수립 필요                  | 사업평가관 박홍엽 |
| 7. 주택가격의 상승 대책 마련                          | 사업평가관 박홍엽 |
| 8. 원자재비축사업의 적정재고 확보 노력                     | 사업평가관 이현정 |
| 9. KIC(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로 인한 손실 및 대응방안 마련   | 사업평가관 박홍엽 |
| 10. 법인세 체납액 증가 문제 개선                       | 사업평가관 박홍엽 |
| 11.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실적 제고                  | 예산분석관 황선호 |
| 12. 인구사회통계의 대응성 · 정확성 ·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관 이현정 |

| 담당 분야                               | 직위 및 성명    |
|-------------------------------------|------------|
| 〈정무위원회〉                             |            |
| 1. 금융기관 지원효과를 가지는 예산사업의 위험부담 적정화 도모 | 예산분석관 유인규  |
| 2.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공적자금 회수 미흡 대책 마련      | 사업평가관보 남은정 |
| 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액 증가 관련 법제도 개선 모색  | 사업평가관보 남은정 |
| 4. 신용보증 관련 기업사업의 구상채권 회수실적 제고       | 예산분석관 유인규  |
| 5.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권한에 관한 논의 필요          | 사업평가관보 남은정 |
| 6. 보훈병원 의료장비 현대화의 효과적 수행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7.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의 합리성 도모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합목적적인 운영 도모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9. 한국소비자원 추진사업의 내실화                 | 사업평가관보 남은정 |
| 〈국토해양위원회〉                           |            |
| 1. 광역철도사업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2. 국도건설사업 예산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 강구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3. 철도 BTL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대책 마련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4.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따른 하류지역 수해 대책 마련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5. 4대강 사업 재원조달 계획 사전 수립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6.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집행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7. 톨키 낙찰자 선정시 가격 경쟁 유도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8. 최저가 심사기준 임의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대책 강구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9. 민자유치활성화지원 사업의 사전 대처 방안 모색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10.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11. 상수도 관련 사업의 이용률 제고               | 예산분석관보 한정수 |
| 12. 합리적인 하이패스 요금 미납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13. 국민주택기금 수혜계층 선정방식 개선 강구          | 사업평가관 안태훈  |

| 담당 분야                              | 직위 및 성명   |
|------------------------------------|-----------|
| 〈지식경제위원회〉                          |           |
| 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추진체계 합리화         | 예산분석관 전용수 |
| 2.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이용효율 제고             | 사업평가관 허가형 |
| 3.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성과개선 필요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4.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          | 사업평가관 허가형 |
| 5. 발전용 무연탄 공급축소 검토필요               | 사업평가관 허가형 |
| 6. 산업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융합기술 투자방향 명확화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7.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 사업평가관 허가형 |
| 8. 전원개발용자사업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 사업평가관 허가형 |
| 9.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의 추진체계 일원화 도모         | 사업평가관 허가형 |
| 10.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의 정부지원 타당성 재검토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11. 중소기업수출지원업무 일원화에 대한 보완방안 검토     | 사업평가관 허가형 |
| 12. T-50 훈련기 수출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1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과제규모 적절성 모색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
| 1.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관 제민  |
| 2.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강화 | 사업평가관 제민  |
| 3.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 사업평가관 제민  |
| 4.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업평가관 제민  |
| 5. 바다숲조성사업의 유사사업과의 기능 조정           | 사업평가관 제민  |
| 6. 친환경농업육성 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 사업평가관 제민  |
| 7. 농업생명자원연구사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관 제민  |
| 8. 농업공학연구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사업평가관 제민  |
| 9. 원예작물로열티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제고       | 사업평가관 제민  |
| 10.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평가관 제민  |
| 11. 숲가꾸기사업의 실효성 제고                 | 사업평가관 제민  |
| 12.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사업과 관련 사업 간의 연계 강화  | 사업평가관 제민  |

| 담당 분야                                        | 직위 및 성명    |
|----------------------------------------------|------------|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
| 1.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의 내실화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2. 초중등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의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3.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사업 집행의 적정성 제고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집행 점검의 강화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5.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6. 학습보조인턴교사제의 내실화 방안 마련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7. 학업성취도평가지원사업의 신뢰성 제고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8.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실패를 통한 기술능력 제고 방안 모색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9. 핵융합에너지사업의 치밀한 자원마련 계획수립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10. 연구소재지원사업의 특정분야 편중 해소대책 마련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11. 비용분석 없이 이루어진 뇌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사업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12. 나노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의 예산 피드백 장치 마련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13.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예산분석관 전용수  |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
| 1. 프로그램제작비용자사업의 수요예측 노력 제고                   | 사업평가관 윤성식  |
| 2.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수수료 요율의 재조정                     | 예산분석관 이형진  |
| 3. 공익사업 적립금 사용의 재정통제 방안 검토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4.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5. 해외 현지인 대상 한국어 보급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6.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성과관리 실시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7. 전통사찰보존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8.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연구용역 수행방식의 개선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9.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사업 업무의 일원화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10.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집행 촉진 방안 마련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담당 분야                            | 직위 및 성명                |
|----------------------------------|------------------------|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
| 1. 복지예산 집행의 효과성 제고               | 예산분석관 김대철              |
| 2.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를 통한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 예산분석관 김성은              |
| 3.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업평가관 김상우              |
| 4. 보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관 김상우              |
| 5.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사업평가관 김상우              |
| 6.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조직의 전문성 · 책임성 강화   | 예산분석관 김성은<br>예산분석관 김대철 |
| 7.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비용에 대한 국고편성    | 예산분석관 김성은              |
| 8.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 복지사업 추진 지양  | 예산분석관 김성은              |
| 9.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              | 예산분석관 김대철              |
| 10.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부담완화 필요       | 예산분석관 김대철              |
| 11.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사업의 단속 강화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12.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13. 식품안전 관련 기준 및 규격의 조속한 제 · 개정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환경노동위원회〉                        |                        |
| 1. 쓰레기 소각시설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관 김상우              |
| 2.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부처간 연계성 강화          | 사업평가관 김상우              |
| 3.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         | 사업평가관 김상우              |
| 4. 주민지원사업(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실효성 제고    | 사업평가관 김상우              |
| 5.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관 김상우              |
| 6. 실업급여비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모색  | 예산분석관 이진우              |
| 7.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의 성과 제고    | 예산분석관 이진우              |
| 8.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해외취업률 등 성과 제고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9. 사회적기업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1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증가대책 마련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1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합리화     | 사업평가관 남궁인철             |

| 담당 분야                        | 직위 및 성명                |
|------------------------------|------------------------|
| 〈여성위원회〉                      |                        |
|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의 합리화 모색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2.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사업의 내실화    | 사업평가관 박애린              |
| 〈법제사법위원회〉                    |                        |
| 1. 법률구조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평가관 정유진<br>예산분석관 부길환 |
| 2. 등기특별회계사업의 예산 체계 변경        | 사업평가관 정유진              |
| 3. 국선변호료지원사업의 활성화 대책 강구      | 사업평가관 정유진              |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
| 1. 재외동포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 강화       | 사업평가관 고성철<br>예산분석관 김민재 |
| 2. 여권선진화사업의 합리적 개선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3. 해외청년봉사단사업의 실효성 증대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4. 남북협력기금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국방위원회〉                      |                        |
| 1. 예비군사업의 내실화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2. 전직지원사업의 효과성 도모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3. 병생활관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4. 방위비분담금 사업의 합목적적 운영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5. 차기 대포병레이더사업 추진의 합리성 확보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행정안전위원회〉                    |                        |
| 1.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의 적합성 재검토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2.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3. 국가정보보호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4.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           |
|----------------------------------|-----------|
| 5.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6.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 선정기준 타당성 제고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7.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8.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9.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운영 내실화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10. 개도국정보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관 고성철 |
| 11.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업평가관 정유진 |
| 12. 전의경대체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 사업평가관 정유진 |
| 13. 운전면허시설취득사업의 합리적 추진           | 사업평가관 정유진 |
| 14. 소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15.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16. 지자체 소방인력 충원 인센티브 강구          | 예산분석관 오세일 |
| 17. 지자체 지역특화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분석 실시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18. 서울시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분양의 합목적성 제고 | 사업평가관 여차민 |

## ■ 편 집

김세인(행정사업평가팀)



##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

|     |                                                 |
|-----|-------------------------------------------------|
| 발간일 | 2009년 9월 17일                                    |
| 편 집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
| 발행인 | 신해룡                                             |
|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br>TEL 02·788·4749 |
| 인쇄처 | 커뮤니케이션 인 맥 (TEL 02·2269·0932)                   |

---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TEL 02·788·474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20-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

